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74-10



ISSN 1975-3128

# 2018

국가인권위원회

# 연간보고서



# 2018

국가인권위원회

##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는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인 디지털음성도서 데이터 (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도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nld.nl.go.kr)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정책정보/발간자료/연간보고서' 메뉴에서 데이터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

인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로고타입 자체를 간결하게 만들고 조형적 완성도를 높여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관으로서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조'와 '생명' 그리고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의 심벌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만의 정체성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로고타입과 함께 사용한 심벌은 현대성과 한국성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용', '공명정대'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 조형인 원과 '평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을 활용하여 심벌이미지를 형상화하였습니다.



## 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향하는 혁신을 통해,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2018년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해보다도 더욱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 우리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도 폐지방안 검토, 혐오차별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한국 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유관부처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각종 인권현안에 위원회가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하나의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회 인권과, 군인권조사과,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였고, 심화되는 혐오차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권현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처음 제기하였고, 선감학원 인권침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주 입국 난민 신청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양상에서 난민 인권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적극적 역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2018년은 최초의 비(非)법조인 여성 인권활동가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실질적 관계 개선을 이루어낸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12월 위원회는 ‘인권옹호자 회의’를 통해, 위원회와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권옹호자 연대’를 구성하는 동등한 협력 주체라는 관점을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와 위원회 간 인권 협치 방안 논의 등 인권옹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8년은 연대와 협력의 질적 전환을 이루어낸 첫 번째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8년 연간보고서는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독립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의 기록이자, 격동의 한 해를 겪으면서 때로는 묵묵히,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해온 위원회의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은 기록입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는 길목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혁신을 통해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 일러두기

- 1 본문에서 시민사회영역의 단체를 '인권·시민사회단체'로 표기하였다.
- 2 본문에서 '월' 앞에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2018년'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 3 본문 표에서 사용된 부호 '-'의 뜻은 해당 숫자 없음(0)을 의미한다.
- 4 본문에서 수록된 통계표의 누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 까지 합을 의미하며, 특별한 경우 누계 산정기간을 명기하였다.
- 5 본문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수치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약어표

---

<b>위원회</b>	국가인권위원회
<b>인권 NAP</b>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b>기업과 인권 NAP</b>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b>교통약자법</b>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b>정신건강복지법</b>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b>장애인차별금지법</b>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b>인종차별철폐협약</b>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b>자유권규약</b>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APF</b>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b>ASEM</b>	Asia-Europe Meeting(아시아-유럽 정상회의)
<b>CCTV</b>	Closed-Circuit Television(폐쇄회로 텔레비전)
<b>GANHRI</b>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舊 ICC)
<b>ICC</b>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b>ILO</b>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b>OHCHR</b>	Offi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b>UPR</b>	Universal Periodic Review(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2008년부터 4.5년 주기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이 검토하는 제도

---

# 목 차

## 01

### 총 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8년 대내외 환경 .....	16
제3장 2018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7
제4장 평가와 과제 .....	33

## 02

### 위원회 주요 활동

####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41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42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42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43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60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76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	78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	86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86
2. 인권증진 사업 .....	97
제4절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111
제5절 평가 .....	115



##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	117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21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21
2. 직권·방문조사 .....	125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26
가. 검찰·경찰·법원 .....	126
나. 군 .....	134
다. 구급시설 .....	138
라. 다수인보호시설 .....	143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146
바. 각급 학교 .....	151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54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54
2. 직권·방문조사 .....	160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61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161
나. 용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	163
다. 성희롱 .....	164
라. 장애에 따른 차별 .....	165
마. 나이에 따른 차별 .....	167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169
사. 종교에 따른 차별 .....	172
아. 병력에 따른 차별 .....	174
자.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	176
차.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176
카. 학력에 따른 차별 .....	178
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79
1. 인권상담 .....	180
2. 진정 접수 .....	187
3. 면진진정 .....	188
4. 민원 .....	189

# 목 차

<b>제5절 기초조사 및 조정</b> .....	<b>191</b>
1. 기초조사 .....	191
2. 조정 .....	192
<b>제6절 평가</b> .....	<b>193</b>

##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b>제1절 개요</b> .....	<b>199</b>
<b>제2절 주요 추진 실적</b> .....	<b>202</b>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02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205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12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25
5. 인권도서관 운영 .....	230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234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36
<b>제3절 평가</b> .....	<b>244</b>

##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b>제1절 개요</b> .....	<b>248</b>
<b>제2절 주요 추진 실적</b> .....	<b>250</b>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50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58
3. 국제회의 개최 .....	263
4. 직원 국외 연수 .....	264
<b>제3절 평가</b> .....	<b>265</b>

##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	267
제2절 주요 활동 .....	268
1.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	268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	269
3. 진정사건 처리 .....	270
4. 인권교육 .....	271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	272
제3절 평가 .....	283



## 부 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289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304
3. 2018년 결산 .....	314
4. 2018년 상담·진정 통계 .....	315
5. 2018년 업무 총괄도 .....	317
6. 2018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	318
7. 2018년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334
8. 위원회 간행물 .....	335
9. 보도자료 .....	338
10. 사진으로 보는 2018년 .....	347
11. 위원회 소관 법규 .....	361
12. 위원회 활동일지 .....	365
13.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	372

# 목 차



## 표 목차

[표 1-1-1] 2018년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	10
[표 1-1-2] 2018년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	10
[표 1-1-3] 소위원회별 담당 분야 .....	11
[표 1-1-4] 2018년 소위원회별 운영 현황 .....	11
[표 1-1-5] 2018년 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12
[표 1-1-6] 위원회 정원 .....	13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	42
[표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등 접수·처리 현황 .....	120
[표 2-2-2]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21
[표 2-2-3]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23
[표 2-2-4] 2018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24
[표 2-2-5] 최근 5년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55
[표 2-2-6]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56
[표 2-2-7] 최근 5년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58
[표 2-2-8] 2018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59
[표 2-2-9]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	179
[표 2-2-10] 최근 5년간 유형별 상담 현황 .....	181
[표 2-2-11]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	182
[표 2-2-12]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 상담 현황 .....	183
[표 2-2-13] 2018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	185
[표 2-2-14] 2018년 119 인권현장 대응팀 운영 현황 .....	185
[표 2-2-15]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87
[표 2-2-16] 최근 5년간 면접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	188
[표 2-2-17] 최근 5년간 접수 경로별 민원 처리 현황 .....	189
[표 2-2-18] 최근 5년간 민원 처리 현황 .....	190
[표 2-2-19] 진정사건 기초조사 배정 및 종결 현황 .....	191
[표 2-2-20]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92

[표 2-3-1]	2018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209
[표 2-3-2]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13
[표 2-3-3]	2018년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실시 현황	214
[표 2-3-4]	2018년 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215
[표 2-3-5]	2018년 경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215
[표 2-3-6]	2018년 정신건강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216
[표 2-3-7]	2018년 장애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217
[표 2-3-8]	2018년 장애분야 인권강사과정 운영 현황	217
[표 2-3-9]	2018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218
[표 2-3-10]	2018년 노인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219
[표 2-3-11]	2018년 영유아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220
[표 2-3-12]	2018년 학교 관계자 인권교육 실시 현황	221
[표 2-3-13]	2018년 강사역량과정 운영 현황	221
[표 2-3-14]	최근 5년간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222
[표 2-3-15]	최근 5년간 인권특강 실시 현황	223
[표 2-3-16]	2018년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 실시 현황	223
[표 2-3-17]	최근 5년간 사이버 인권교육 현황	224
[표 2-3-18]	2018년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229
[표 2-3-19]	인권도서관 이용 현황	230
[표 2-3-20]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	231
[표 2-3-21]	인권도서관 지역분관 장서 현황	231
[표 2-3-22]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간행물 원문 이용 현황	231
[표 2-3-23]	2018년 인권도서관 개최 행사 현황	232
[표 2-3-24]	2018년 인권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	233
[표 2-3-25]	2018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일정	233
[표 2-3-26]	2018년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현황	235
[표 2-3-27]	2018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240
[표 2-3-28]	2018년 제7회 인권보도상 당선작	242
[표 2-3-29]	2018년 결정례 동영상 내용	243
[표 2-4-1]	2018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	251
[표 2-4-2]	2018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 현황	251
[표 2-4-3]	2018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252
[표 2-4-4]	2018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254

# 목 차

[표 2-5-1] 인권사무소 위치 및 관할 구역 .....	267
[표 2-5-2]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	268
[표 2-5-3]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	269
[표 2-5-4]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270
[표 2-5-5] 2018년 인권사무소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	271



## 그래프 목차

[그래프 2-2-1]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처리 현황 .....	120
[그래프 2-2-2]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22
[그래프 2-2-3] 전년 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애, 기타 제외) .....	156
[그래프 2-2-4]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증감 추이 .....	180
[그래프 2-3-1]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인원 현황 .....	213

# 01

##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8년 대내외 환경 | 16

제3장 2018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7

제4장 평가와 과제 | 3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8**



## 01

## 총론

##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1. 설립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국제적 논의 과정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유엔은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을 만들었다. 이 원칙은 1991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고,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 등을 규정하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기준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따라 인권의 옹호와 증진을 위해 나라별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반영한 효과적인 인권보호 장치를 고민하게 되었다.

## 국내 논의 과정

우리나라의 인권기구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의 오랜 열망, 수년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권·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92/54)와 파리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공론화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논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약하였고, 1999년 4월 7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3년간에 걸친 끈질긴 투쟁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6개월 후인 2001년 11월 25일 독립적 국가기구로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2. 성격

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인권 전담 국가기구

위원회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인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 독립기구

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받는다. 이런 독립적 지위는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른 것이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조직과 예산편성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가 심의·조정하거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요소이므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 준사법기구

위원회는 준사법기구이다. 위원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절차는 기존의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와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준사법적기구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 준국제기구

위원회는 준국제기구이다. 위원회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형태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이라는 점과 파리원칙이 정한 권한과 책임, 구성과 활동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준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이 있다.

### 3. 주요 기능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주요 4대 기능을 수행한다.

#### 인권정책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두 번째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한다. 주요 차별 사유로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19가지이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기구이자, 성차별 조사·구제 기관이다.

## 인권교육과 홍보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교육과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공무원, 시설 종사자, 언론인, 일반 시민 등 대상별로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웹툰, 웹드라마, 결정레 동영상, 인권 잡지 등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인권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홍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위원회가 수행하는 고유한 기능의 한 부분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의 일반적인 홍보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 국내외 교류·협력

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향상을 위해 국내외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 연대’ 개념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인권 현장의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현장성은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국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해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위원회의 활동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 인권기구 직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제 교류에 힘쓰고 있다.

## 4. 조직

### 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권위원회는 총 11명으로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11명의 인권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2016. 2. 3.)을 통해 인권위원의 자격과 선출·지명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인권위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한 면책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를 수용한 결과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국가재정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2018년에는 4명의 인권위원이 교체되었다. 대통령 지명으로 제8대 최영애 위원장이 임명되었다(9. 4.). 또한 국회 선출로 정문자 상임위원(6. 22.)과 김민호 위원(8. 27.)이 임명되었으며,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성택 위원(8. 27.)이 임명되었다.

## 의사 운영

위원회는 주요 업무의 수행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로서 침해구제제1위원회(검·경·군·국정원·입법부·사법부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구금·보호시설(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제외), 기타 인권침해 분야), 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 분야),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장애차별, 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분야), 아동권리위원회(만 19세 미만 아동(장애 제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조사 등의 주요 업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합의제 형식으로 처리해나가고 있다.

위원회의 의사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다만, 진정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 심의를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전원위원회

위원회 운영 및 주요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위원회 회의는 매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표 1-1-1] 2018년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sup>1)</sup>**

(단위: 회, 건)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계	보고안건	의결안건
20	64	23	41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이 주재하며,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는 심의·의결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표 1-1-2] 2018년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sup>2)</sup>**

(단위: 회, 건)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43	134	42	15	77

■ 소위원회

위원회는 진정사건 심의 등 기능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5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재는 위원장이 지정한 1명의 상임위원과 2명의 인권위원으로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 전원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은 부록 참고

2) 상임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은 부록 참고



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각 소위원회는 상임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의결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표 1-1-3] 소위원회별 담당 분야**

소위원회	담당 분야
침해구제제1위원회	검찰, 경찰, 국정원, 국회, 법원 관련 침해사건 및 직권조사 군 관련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경찰 및 군 관련 방문조사
침해구제제2위원회	구금·보호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제외),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침해사건 및 직권조사,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차별시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19개 차별 사유 중 장애를 제외한 사유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사건, 직권·방문조사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장애인·정신건강증진시설 침해 사건, 직권·방문조사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 관련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장애사건 제외), 아동보호시설·소년원 등 진정사건, 직권·방문조사

**[표 1-1-4] 2018년 소위원회별 운영 현황**

(단위: 회, 건)

구 분	개최횟수	안건 수		
		계	의결사항	보고사항
합 계	62	4,024	3,263	761
침해구제제1위원회	14	918	803	115
침해구제제2위원회	13	1,251	1,095	156
차별시정위원회	11	403	318	8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13	1,219	876	343
아동권리위원회	11	233	171	62

## ■ 조정위원회

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인권침해, 차별, 성차별, 장애차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정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각 조정위원회는 인권위원인 조정위원장 1명과 조정위원(외부) 2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은 진정 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 등 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의 동의 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구제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조정의 성립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sup>3)</sup>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표 1-1-5] 2018년 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회, 건)

합 계		차별조정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인권침해조정위원회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개최횟수	안건수
9	10	3	3	6	7	-	-	-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사무처

2018년 12월 현재 위원회 조직은 정무직 4명과 사무총장, 1관 3국 16과 2팀 5소속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정원은 총 220명으로 본부 178명(정무직 4명 포함)과 소속 기관 42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조직 개편으로 1국 2과 1팀이 신설되었다. 내용을 보면 조사국을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으로 분국하고, 사회인권과, 군인권조사과, 성차별시정 팀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9년 초 임시 조직인 혐오차별대응기획단(1월)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2월)이 신설되었다.

**[표 1-1-6] 위원회 정원**

2018.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사	경감
계	220	4	5	3	18	15	55	50	40	8	20	1	1
본부	178	4	5	3	13	15	46	46	26	3	15	1	1
소속	42	0	0	0	5	0	9	4	14	5	5	0	0

## ■ 위원회 조직도



### ◆ 소속기관



## 5. 2018년 예산

### 1) 경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계	31,412	29,289	7.2%
인 건 비	15,674	14,147	10.8%
기 본 경 비	8,077	8,102	△0.3%
주 요 사 업 비	7,661	7,040	8.8%

### 2)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8년 예산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1,183
	① 인권의식 향상	392
	②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315
	③ 지역인권문화 확산	476
인권교육 활성화		1,236
	④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23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2,046
	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32
	⑥ 취약분야 인권개선	1,266
	⑦ 장애인 인권증진	548
인권제도 선진화		737
	⑧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584
	⑨ 북한인권 개선	153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465
	⑩ 국제교류협력	1,156
	⑪ 인권단체 공동협력	309
정보화		994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994

## ● 제2장 2018년 대내외 환경

2017년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면서 위원회는 노동 시장 양극화와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학벌의 차이와 차별로 인해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등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2018년부터 시작될 이 행동계획이 지향하는 사명을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 사회를 실현한다'로 설정한 바 있다.

실제로 2018년은 청년 세대의 생존 위기, 위협의 외주화로 통칭되는 간접고용 노동자 생존권 위기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퍼져 나가고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왜곡·과장된 의견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신임 위원장 취임 후 양극화 해소 및 사회 안전망 확보 과제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 해소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 2018년은 17년 역사에서 큰 변곡점이 되는 시기였다. 2017년 10월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2018년 1월 말 활동을 정리하면서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등을 권고하였고,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혁신위원회 권고를 진지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옹호 활동가 경력이 많은 여성 위원장 취임은 큰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후보 추천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고, 최초의 비법조인 출신 위원장이다. 특히 '인권옹호자 활동을 한 여성'이라는 점은 위원회가 2018년부터 '인권옹호자 연대' 개념을 제안하고 인권·시민사회와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 ● 제3장 2018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1. 기본 방향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인권 의제에 대한 적시성과 실효성 강화,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지속적인 국내외 협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 2. 사업별 추진 성과

#### 가. 위원회 4대 전략 목표

##### 1)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학교의 안정적 교육 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 촉구 위원장 성명 발표, 생식독성물질 관리대상 확대, 화학물질 유해·위험 고지방안 마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권고, 쌍용자동차 복직 합의 환영 위원장 성명 발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인권증진과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을 보호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17년 11월부터 진행된 ○○○ 고공농성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 면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노사 간 중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11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12월 16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외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12월 26일에는 위원장이 고인의 빈소를 방문하여 유족을 위로하고 정부 조사 및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유족과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하였다. 이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현장(9·10호기) 및 운행 중인 1~8호기를 둘러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 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직접 점검하였다.

###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학교 밖 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해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진학지도와 관련한 권고를 통해 해당 시설의 아동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에 있어 정책적·제도적·현실적 문제와 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강화**

과거 탄광 등에서 근로한 진폐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를 통해 진폐증 판정에 컴퓨터단층촬영(CT) 도입, 폐렴 및 인플루엔자 지원 사업 추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지원 항목 및 기간이 확대될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였다.

여성의 고용안정성 증진 방안을 위하여 <임신·출산·육아휴직 차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화촬영 중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여성 배우의 소송으로 드러난 영화계의 인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계(영화)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급격히 늘고 온라인상 여성혐오가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방송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재생산을 방지하고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권고를 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성평등 조직문화를 피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을 운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장애인 등 탈시설 및 접근성 제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에 관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권고를 하였다.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적 서비스 제공 권고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 관광활동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확대 및 단계적 적용 시기 개정을 골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견표명하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노인협오 현상을 진단하고 세대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의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의견표명,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 제96회 ‘어린이날’ 위원장 성명, ‘세계 아동의 날’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더불어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참사에 대한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진정사건 참고인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피진정인에게 인권침해 행위 중지 권고와 진정인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 시설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각각 검찰 수사 의뢰, 관할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 3) 지속 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유치원 교사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과 인권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하였다. 국회 및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및 인권연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초·중·고교 교과서를 인권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공직사회의 인권교육 제도화와 관련한 과제 발굴을 추진하였다.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언론인 인권교육기본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언론인 인권교육을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인권교육담당자와 인권보호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권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캐나다 에퀴타스(EQUITA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권정책 발전과정을 운영하여 네팔,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등에서 외국 연수생들이 참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장애인차별예방〉, 〈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언론과 인권〉, 〈인권경영의 실제〉 등 사이버 인권교육 보조교재를 발간하고,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및 〈인권교육 지표틀〉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노동인권 교육 교재를 발간하는 등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2018년은 지방인권기구와 협력의 기틀을 다진 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권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인권위원 및 담당공무원이 변화하는 등 지방 인권행정 업무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광역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인권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인권기구와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그동안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담당자들과의 의견 교환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8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담당공무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인권옹호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인권옹호자회의에서는 위원회-지역 인권기구-인권·시민사회단체 간의 인권 옹호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기구 간의 인권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인권을 중심에 둔 전국적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가치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인권조례 제·개정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였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과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학계가 참여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인권기구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다.

## 시민사회 협력 강화

위원회의 위상 및 업무 활성화,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2018년에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차기 연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더불어 여성, 장애, 이주, 아동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향후 분야별, 사업별로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 회의에 참가하여 위원회 활동 사항을 발표하고, 유엔을 비롯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에서 주요 인권 의제를 선도하였다. 또한 제3차 아셈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셈 회원국에 노인인권 의제를 확산시켰으며,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 캐나다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역점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청연수(7개국 7명 참여)를 실시하여 인권 이슈를 공유하고 국가인권기구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

국제인권조약 중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였으며, 노동인권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를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유엔 적정 주거특별보고관 방한 등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4)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북한인권 문제 다원적 대응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인권 현안에 대응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용 인권교육 교재 마련, 인권교육 강화, 하나센터에 인권교육 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탈북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NCP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인권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경영의 제도화를 위해 공공기관장 대상 인권경영포럼을 2차례 개최하였으며,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및 인권경영실행을 권고하여 각 공공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인권경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항목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사회 저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인권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방문 등 우리 사회의 위해와 안전 취약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실태를 파악하였다.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통해 긴급 재난 상황 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 치료 의무적 안내,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등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살처분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적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였다.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개정에 따라 기존 조사총괄과 내 군인권팀을 군인권조사과로 확대 개편하였다. 직제상 인원은 7명에 국방부 파견인원 1명 총 8명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군인권조사과 신설에 맞춰 기존 군 인권 관련 침해사건 조사 이외에 차별사건도 차별조사과에서 이관받아 일원화하였고, 조사 범위도 ‘국방의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넓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지요원, 공중보건의 관련 사건을 모두 담당하도록 체계화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연구용역 진행, 대체

복무제도 마련 및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 영창제도와 관련해 국회 등에 폐지 의견을 표명하고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군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를 통해 환자 권리보장 실태를 점검하였다.

## 나.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최근 특정 집단이나 그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이 온·오프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혐오표현과 그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는 차별구조, 표현을 넘어선 혐오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년) 특별사업으로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선정하여 초·중·고교, 대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언론 분야에서의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바탕이 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 예멘 국적자들의 난민신청에 대한 일부 근거 없는 소문과 혐오표현 확산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여와 함께 위원회 청사 외벽에 무지개 배너를 게시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 문제가 사회 이슈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구성하였다.

## 다. 기획사업 : 위원회 역량 강화

###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장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인권·시민 사회단체 간담회,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 협의, 분야별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인권기본법」 제정을 공론화하고 제정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 권고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 체계 개선

피의자 조사 시 수갑 사용 제한 및 메모 허용, 유치장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검찰·경찰과 공동으로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사건의 기초조사 기능을 공식화하여 본 조사에 집중도를 높이고, 각하 종결절차 간이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개정), 결정문 작성과정 관리 강화 등 조사 절차에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43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43개 기관)에 대해 위원회 권고 이행 및 자체 인권 개선 노력을 평가하였다.

## 라. 주요 인권 현안 대응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가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미투(Me too)운동’

등을 통해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였다.

특별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로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인계한 30건,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40여 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24개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예술계 대학 재학생 등 4,380명(총 6만4,911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토론회, 신고사건 등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마련·보급,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및 현장점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난민 인권보호 강화

내전을 피해 자국을 떠난 예멘인 500여 명이 2018년 4~5월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함에 따라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 난민 발생 지역의 국가 상황과 다른 문화 및 종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등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왜곡·과장된 일부 의견이 기사화되어 사실로 간주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여, 6월 13일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과 「난민법」에 부합하는 난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위원장 성명을 세 차례 발표하였고, 여러 차례 현지를 방문하여 난민신청자들을 면담하고 난민심사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8월 30일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언론의 역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민인식 개선을 위한 리플릿,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

위원회는 국방부 및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진상 규명을 위해, 6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위원회 사무총장과 여성가족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단장 제외)의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내용 총 17건 외에도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하여 조사 결과를 10월 31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 3. 13 제정, 2018. 9. 14.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진상 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이관하였다.

###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

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에서 1월 16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자 1월 25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인권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여성·장애인·아동·노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표명을 하였다. 또한 1월 31일에는 폐지안 상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1차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지안이 2월 2일 가결되고, 이후 충청남도 지사가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위원회는 상황 대응 및 「충남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다른 지역 인권조례 폐지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3월 13일, 유엔 성 소수자 특별보고관에 조속한 국가 방문을 요청하는 위원장 서한을 발송하는 등 국제 공조를 도모하였고, 3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에서 4월 3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 4월 5일,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버린 충남도의회에 대해 2차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 ● 제4장 평가와 과제

2018년은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새로운 인권 의제 개발에 노력한 한 해였다.

또한 2017년에 구성되어 활동했던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회의록 작성 방법 개선 등 위원회 투명성 강화, 위원장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고, 인권옹호자 권리 이해를 돕는 교재를 발간하였다. 이는 위원회의 책임성, 독립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18년 9월에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혐오와 차별 해소, 양극화 문제와 사회 안전망 위기 적극 대처,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인권옹호 파트너십 강화,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개선 등 4대 책무를 제시하였고,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8년 우리 사회 최대의 이슈였던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분출된 검찰 및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 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기존의 조직만으로 이를 대응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국방부 및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향후 발생하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촉발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에 난민 편견 및 혐오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단식 현장 방문, 미군 사드배치 반대집회 인권지킴이 활동, 도심 대규모 집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 폐지 공론화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 설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였다. 또한 사형제 폐지 국제토론회 개최,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도입 방안을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

한편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축 살처분 종사자의 트라우마 치료 등 건강권 문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취약계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등 우리 사회의 인권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인권 의제를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2018년에 정부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위원회 권고 이행 및 자체 인권개선 노력을 평가하였다. 이는 정부기관이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을 제고하고, 자발적으로 인권개선 과제를 발굴·실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새로운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추진하였고,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인권연수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향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2004년에 이어 15년 만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및 포럼을 유치하여 국제인권사회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및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유엔 사회권규약 제4차 최종견해 대응방안 모색, APF와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 국제회의 지원,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등 준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6월 26일 서울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개소하여 아시아와 유럽 간 노인인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관련 국가의 사업비 분담 등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은 향후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최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빈곤 청년, 빈곤 노인 등 경제적 취약집단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과 노인 등 빈곤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개선 등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17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는데, 진정사건의 처리 건수 감소는 2017년 진정사건 접수 폭증으로 인한 장기 미결 사건 처리, 각종 현안 대응 TF<sup>4)</sup> 운영에 따른 조사인력 파견,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등 대규모 직권조사 수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관행의 개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미 있는 권고가 이어졌다. 출국이 금지·정지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여, 검찰이 출국 금지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

4) 성희롱·성추행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팀(2018. 3. 15.~7. 24.),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 조사단(2018. 6. 22.~10. 31.)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상급학교 진학 시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진학지도를 할 것을 권고하여 아동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 거주 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에 대해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

또한 흑서기에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긴급구제를 권고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필요한 조치 이행과 제도개선의 입장을 밝혔다. 지역 언론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더는 적대적 근무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하여 공무직의 선수 자격 제한을 없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서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 하였고, 공단이사장이 근무 시간에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의 사적인 용무를 하도록 하고, 폭언한 행위에 대해 중징계 권고를 하는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에 힘을 기울였다.

2018년 7월 위원회는 1국 2과 1팀을 신설하였다. 기존 조사국을 침해조사국과 차별시정국으로 분국하여 인권침해의 구제와 차별 시정의 기능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사회인권과·군인권 조사과·성차별시정팀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회인권과를 통해 양극화 문제의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노인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기존 조사총괄과 내 군인권팀을 군인권조사과로 개편하여 군인권 업무를 군인권조사과가 전담하고, 조사 범위도 ‘국방의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넓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지요원, 공중보건의 관련 사건을 모두 담당하도록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성차별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권리 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평등과를 신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년 기한의 임시조직인 성차별시정팀이 신설되었다. 장기적으로 위원회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제 기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성평등과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구성하였고, 2019년에 혐오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혐오차별 문제의 공론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8**

# 02

##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41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 117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 199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 248

제5장 인권사무소 | 26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8**

## 02

## 위원회 주요 활동

###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2018년 위원회는 기본권 강화 및 인권보장 제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감시와 구제 활동 강화, 인권존중문화 및 인권의식 향상,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시민사회와 인권증진 협력, 북한인권 개선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773	361	385	27
2018년	62	26	33	3
2017년	64	30	33	1
2016년	72	44	26	2
2015년	36	12	23	1
2014년	46	27	18	1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2018년 위원회의 정책권고는 26건으로 전년 대비 4건 감소하였고, 의견표명은 33건으로 전년과 같았으며, 의견제출은 3건으로 전년 대비 2건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 2건이 감소하였다.

한편, 개별 진정사건을 통해 관련 정책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의견제출한 건은 16건이다. 아울러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건은 2건이며,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한 건은 2건이다.

주요 권고 및 의견표명으로는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 방안 마련, 「인권 기본법」 제정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제주도 내 예맨 국적 난민신청자 대책 마련 촉구,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방문 및 보호 장치 마련 촉구 성명을 통해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 2. 정책권고 주요 내용<sup>5)</sup>

###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 연락사무소(NCP)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역할 강화를 위해 NCP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00년 12월 NCP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NCP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NCP 핵심 기능인 책임성, 투명성, 가시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NCP의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노동계 참여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 독립성 확보, 이의 제기 사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확인 조치 등 최종성명 실효성 확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설치, 전자정보 접근 및 자료 유지·체계화를 위한 기록관리 규정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 나.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3월 22일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결정하였다.

5) 정책권고 목록은 부록 참고

여성 이주노동자는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 채용 초기 경제적 부담, 신고나 구제 절차에 대한 낮은 인지도, 체류 자격으로 인한 불안함, 농업의 경우 사업장의 지리적 조건 등으로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4월 12일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범정부적 정비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업법」상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결격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자보건법」(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면허)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이·미용사, 위생사) 등 17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정신장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자격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결격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결격 조항은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무능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만이 위험성과 무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고, 다른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하며, 업무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장애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판단 기준·절차도 개별 심사규정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결격 사유로 지정된 이후에도 소명이나 청문 절차 등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라.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에 따른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

위원회는 4월 19일 법무부장관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고,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 따라 17세 미만인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미납 시 보호자와 해당 이주아동의 출국을 불허하였다.

위원회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미납은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태료 미납자는 이주아동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마.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5월 3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범죄 수사 등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경우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사건, 사고, 재해 등을 신속하게 감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곳은 190개소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시설·제도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범죄수사, 행정단속 등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찰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바. 구급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권고

최근 구급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의료 처우 제한 등 수용자 건강권 침해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개별 진정사건 조사에도 한계가 있어, 위원회는 6월 21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엔수용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국내 교정 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개선을 권고하였다.

구급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 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를 위한 적절한 근로조건 개선, 외부진료 관련 의무관 권한 강화 및 계호인력 확보, 야간·공휴일 등 의료 공백 최소화 및 응급 당직 의사제도 도입, 신입 수용자 검진 내실화 및 정기검진 시 사회 건강 서비스 동일 수준 검진 항목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 서비스 증진을 위해 성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여성 수용자 세부 정보 관리·분류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부인과 의료 처우 강화 등 적극적 조치, 외부진료 이용 시 저소득층 수용자 자비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초빙 방문진료 확대, 원격 화상 진료 내실화, 중증질환 수용자 치료중점교도소 기능 및 역할 강화, 공공의료기관 등 위탁병원 협의추진 등 방안을 마련하고, 수용거실 과밀로 인한 건강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운동시간 확대, 다양한 목적성 프로그램 운용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 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을 활성화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 교통수단형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광역 단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교통약자법」 시행으로 도입되었다. 매년 꾸준히 증차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161개 시·군에서 법정기준 대수인 2,327대를 초과해 2,932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배차 대기시간 지연, 이용지역 제한, 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으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과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자, 이용지역범위, 이용시간, 요금 등이 상이해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아.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7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폐병형 판정 시 컴퓨터단층촬영(CT)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폐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진폐병형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Chest X-Ray)에 나타난 음영을 토대로 판독·결정하고 있으나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초기 진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같은 판독자라도 판독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독일, 일본 등은 이미 CT를 진폐병형 판독에 활용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석면피해구제법」의 석면폐증 진단에 CT를 활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진폐증에 대해서도 「석면피해구제법」의 석면폐증 진단 기준 등을 토대로 CT를 활용한 진폐병형 판정 기준과 필름 등을 개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CT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함께 진폐병형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폐렴은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질병임에도 진폐합병증으로 규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진폐유족연금 등을 적용받지 못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도 예방접종 등 폐렴 예방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고 진료 기간과 방법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위원회는 진폐근로자의 폐렴 예방을 위해 진폐근로자 대상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적절한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진료 방법과 기간 등 제한 요건을 완화할 것을 함께 권고하였다.

## 자.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7월 12일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생식건강 유해인자는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물론 야간근무, 입식근로 등 작업환경까지 포함한다. 특히 생식독성물질은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동 출산 등 사람의 생식 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2018년 기준 총 44종이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20% 내외 수준으로, 생식건강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하거나 난임, 불임, 유산, 사산 등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은 낮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제공받기 어렵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장 내 안전보건 자료 열람 및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신부 등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를 폭넓게 포함하고, 야간근로 인가 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하거나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적극 해석·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차.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7월 19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2015년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강 피해는 장애인, 영유아 및 노인 등 대응 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뉴얼 적용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유아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전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의 지역별 차이가 크고,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및 면적이 430㎡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인사회활동사업(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노인은 야외활동이 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미세먼지 보호 대책 포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카.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을 위한 권고

위원회는 8월 9일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통과 또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국가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에게는 이 법의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4년 및 2012년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 중 사망한 사례가 있으나,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만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위원회는 국제협력요원은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으로 인해 복무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요원과 다를 뿐 구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고, 복무 관할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이 국가(외교부, KOICA)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행정관서요원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국가유공자 심사는 외형상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공무 수행 중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타.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위원회는 8월 9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하고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기업도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8월 우리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이 없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 및 체계적·전략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평가 배점이 낮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공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인권경영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왔다.

위원회는 인권경영 전 단계를 포괄하여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체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구성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 및 확대를 권고하였다.

#### 파. 유치원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위원회는 8월 21일 교육부장관에게, 유아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 인권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유치원 교사 보수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을 권고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 연령대인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보육과 교육 목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었으나, 업무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반면,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인권교육 이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는 과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인데, 실상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교사만 인권교육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위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 모두에 인권교육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국·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사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서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하. 사형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위원회는 9월 10일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였다.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사형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서 사형제의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 향상과 인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사형의 집행금지 의무, 사형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현재 85개국이 가입·비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32개국이 가입하였다.

위원회는 사형제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 사형 판결의 오판 가능성 및 오판의 경우 그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사형의 범죄억지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현재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거.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 인적 서비스 미제공은 이동권 침해

위원회는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하여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다수 건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내보조 등 인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통사업자가 안내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너. 퇴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9월 27일 인사혁신처장에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성과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한 데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정년이 도래하는 날에 따라 8월 31일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정년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8월 31일에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다음 해 2월 말일을 지급 기준일로 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인사혁신처 지침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조직 성과 제고 유도와 보상이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상 지급 대상을 현직으로 한정된 것 자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직자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 8월 퇴직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8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미리 평가자료를 취합하였다가 지급기준일에 함께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서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형사사건 재심절차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5일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사건 재심절차 개선을 위해 법원 재심 개시결정에 따른 재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때까지 검사의 불복권 행사를 신중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결정 시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형사사건 재심청구 후 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까지 가장 오래 걸린 경우 7년 12일이었다(법원행정처 자료, 2018. 10. 29.기준). 재심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9년 32일, 재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3년 182일이 걸렸다. 24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일명 ‘유서대필 사건’은 재심개시결정 후 최종 재심개시결정 확정까지 3년 3개월이 소요되었다.

형사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시정하는 절차다. 그런데 현행 재심제도는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재항고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심개시 확정까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독일은 196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했고, 일본은 검사의 재항고(특별항고)권을 헌법 위반과 판례 위반 사유로만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재항고 사유를 규칙 위반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심개시결정 즉시항고권 폐지나 재항고 사유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법원이 재심재판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별도 처리 기한 규정을 두는 등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재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 청구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없음이 소명되는 경우 형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러. 가축 살처분 매물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위원회는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2017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증상을 보였고, 특히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게 신청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회피반응을 보여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지원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살처분 작업에 일용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의 참여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위원회는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ILO 핵심협약 총 8개 중 차별 금지와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아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 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노동조합 활동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ILO 회원국은 「노동의 권리 및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의에 따라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ILO 핵심협약 8개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ILO 미가입 핵심협약 중에서 제87호 협약은 155개국(미가입 32개국), 제98호 협약은 165개국(미가입 22개국)이 가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동 협약 가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지속되어왔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동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였고,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 검토(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에서도 ILO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한 약속을 이행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통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버. 방송의 양성평등 정책권고

위원회는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방송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미디어다양성 조사 항목에 시사토크 장르를 포함하는 등 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역할분석 등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며, 미디어다양성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요약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게 배포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성별 고정 역할에 근거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송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권고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에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의 직종·역할 구분에 대한 관념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방송 영역별로 여성 참여를 더욱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서.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12월 27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게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원조사제도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의 책임성, 보안성, 인적 신뢰성 등이 요구되는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와 구분하여 그에 부합하는 목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 신원조사 수집 개인정보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신원조사 회보 종료 등 그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원조사제도란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임용 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연간 약 100만 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원회는 신원조사제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에 해당하나 모법인 「국가정보원법」의 구체적, 명시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공무원 신규 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조사를 별도로 중복하여 실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고, 신원조사의 범위에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권고

위원회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증진을 통한 예방적 효과와 인권침해 요인의 개선을 꾀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2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과정에서 입소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등에 반영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CCTV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소 노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에 의하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98호)을 조속히 심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3. 의견표명 주요 내용<sup>6)</sup>

### 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표명

위원회는 1월 25일 충청남도 의회에 발의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충청남도의회 의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여성·장애인·어린이·노인·이주노동자

---

6) 의견표명 목록은 부록 참고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가치, 조례 폐지 주장의 합리성, 지역 인권보장 체계 폐지로 상실되는 공익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검토 없이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 폐지안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도지사의 인권증진 노력이 중단되어야 할 만큼의 상황 변화가 없으며, 충청남도의 농가인구 비중(14.1%), 65세 노인인구 비율(16%)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증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의견표명 이후에도 위원회는 위원장 성명을 2차례 발표하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충남인권조례」는 폐지되었다. 이후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2018년 9월 「충남인권조례」는 다시 제정되었다.

## 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수어통역 제공 의견표명

위원회는 2월 22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KBS, MBC, SBS 방송 3사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과 패럴림픽 개·폐막식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KBS는 IOC 위원장 연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어통역이 없었고, MBC와 SBS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전광판에도 송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 3사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패럴림픽 개·폐막식뿐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현장에서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수어통역 제공을 통해 화합과 상생, 평등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되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명실상부한 인류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인권교육강사의 자격 기준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인권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인권교육강사 1인 이상’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제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인권교육기관의 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사람’에서 ‘최소 6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여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교육기관 인력의 조건을 ‘인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요건 대신, ‘경력과 인권 지식이 입증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인권교육강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를 인권교육기관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5월 3일 국회의장에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의2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 지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 필요한 자료(조사대상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는 보호기관에 위탁되었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되면서 정보주체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위원회는 보호종결아동이 자신의 정보가 공개·수집되기를 원치 않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자립실태조사 참여율이 증진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OECD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7조는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마.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결정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의견표명

위원회는 6월 7일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는데도 재판부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각급 법원에 사례 전파 및 관련 절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고인은 수급자증명서 등 소명자료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으나, 담당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재판 당일 진정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취하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행위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서 아동의 연령이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지문 등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보호자의 신청으로 사전 등록하는 ‘지문등정보’는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뿐만 아니라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보호자의 정보 등으로 광범위하다.

위원회는 생체정보인 ‘지문’은 그 특성상 고유성, 불변성, 일신전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인데, 지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개정안은 길 잃은 아동이 발견되어 경찰청에서 보호하게 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

등록된 정보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정보의 폐기를 요청하기 전까지 장기간 보관되고, 모든 아동의 실종을 전제로 아동 및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 제4차 유엔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의견표명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3월 9일 인권이사회(HRC) 결의 36/12(2017년 9월 28일)에 따른 제4차 인권교육 프로그램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6월 15일 인권교육이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인권이사회의 2017년 9월 28일 결의를 지지하며,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력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인권교육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 세계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인권교육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여성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 이주민 인권, 노동인권 및 인권 친화적 기업경영, 노인인권, 언론 및 미디어 환경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인권교육의 핵심 대상 및 방법, 인권교육 내용, 인권교육가 대상 훈련과정 체계화 및 인권교육의 평가, 인권교육의 다양한 형태와 국가인권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7월 26일 국회의장에게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보호기간 상한 명시,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객관적·중립적 통제 절차 마련, 보호 필요성과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보호기간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호 개시 및 연장 시 객관적·중립적 기관 통제 절차, 보호의 필요성,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등이 미흡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폐쇄된 공간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르는데, 특히 아동에게는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2015년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구금은 적절한 최단 기간만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난민, 망명희망, 보호자 없는 아동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아동구금, 과밀·열악한 보호시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 제6항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 목적에 맞춰 적절한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및 「소년법」에 의한 6호 처분 아동<sup>7)</sup>(이하 ‘가목 아동’)과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정서적·행동적 장애 아동과 피학대 아동(이하 ‘나목 아동’)의 분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이 입소 대상이다. 가목 아동은 주로 비행 단절을 위한 각종 비행 예방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나목 아동은 주로 의료적 치료와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위원회가 2017년 「소년법」에 의한 6호 처분 지정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이 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아동 간의 폭행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및 비행 학습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아동보호치료시설 대부분이 비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의 입소 이유와 목적이 다름에 따라 시설이 구분되어야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과 인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시설 구분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수를 늘리고, 시설 보호가 아닌 다양한 대안적 처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차.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9월 13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에 대하여 대체복무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신청사유 제한,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 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복무 형태 등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말까지로 정하였다.

이후 김중로, 이종명, 이용주, 김학용(2건) 의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각각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위원회는 이 5건에 대해 국제인권규범과 그동안 위원회 대체복무 권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견표명을 하였다.

대체복무 법률안 모두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복무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 인권위원회(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1993년 결의 제84호)와 자유권규약위원회(2005년 3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으로, 국방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고, 심사위원 자격요건을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양심적 병역거부 보고서>(2017년 제35차 회기)는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보다 긴 경우, 초과 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이 처벌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 법률안은 모두 합리적,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복무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 복무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장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군 영역이 아니며 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위원회 역시 구제활동, 환자 수송, 소방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생명보호 등 봉사과 희생정신이 필요한 영역 채택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률안 중 일부가 대체복무 내용으로 지워 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 규정상 군 또는 국방부 소관 업무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가.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여성가족부는 국회 남인순 의원이 3월 13일 대표발의한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김상희 의원이 3월 26일 대표발의한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위원회는 성희롱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의 확장과 사회적으로 선언적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희롱의 정의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성희롱의 범위는 업무, 고용, 교육 등 피해자의 노동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하고, 버스·지하철·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경찰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의 정의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외에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9월 13일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 **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임신 진료기록 제공)**

국회 이찬열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줄 것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진료 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8일에 대표발의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위원회는 10월 4일 임신 여부가 건강과 성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고 임신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이나 혼전임신 등이 사용주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파.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의견표명**

위원회는 10월 22일 ○○군수에게 △△원에 대하여 아동인권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아동인권 분야에 대해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원은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들이 편을 나누어 심한 갈등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위원회에 제기된 사건 외에도 다른 아동학대 의심행위 신고, 폭행, 종사자 해고, 종사자 인건비 착오지급,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사건이 있었으며, 또한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 및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사자 등 당사자 간의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었다.

특히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종사자가 원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별한 구조적인 변화나 외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의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이에 위원회는 ○○군청에서 비록 연 1회 아동인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나 정기점검 기간 사이에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하.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 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0월 22일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선감학원 사건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현재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 마련 전이라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광복 이후 부랑아 강제 수용시설로 사용되었다.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현재 밝혀진 것만 4,691명의 아동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되었다. 당시 선감학원 아동의 약 41%는 8세에서 13세였고, 강제노역에 시달렸으며, 식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열매, 들풀,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아동들은 선감학원 종사자 및 다른 아동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 및 구타 속에서 고통받다가 탈출 또는 사망하였고, 3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피해 사실이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생존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 함진규 의원은 7월 3일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경찰청장의 의견조회에 대해 위원회는 10월 25일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공포는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성희롱의 처벌을 현행 경범죄 최대 금액인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신설하고 성희롱 발생 시간과 장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요건은 50만 원의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성희롱 발생 시간과 장소, 가담 인원 등에 따라 그 피해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효과적인 범죄 제지와 검거라는 측면에서 현행법 체포 요건이 일반 범죄와 동일할 수 있도록 벌금 60만 원 이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상 형벌이 배제되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현행 14세)을 하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현행 15년)을 상향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소년사법체계에서 아동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및 사회 복귀를 위해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보면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이고 축법소년 수도 줄고 있어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소년범의 엄벌화 입법조치가 소년범죄를 감소시킨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정책이 엄벌화되는 것보다 재범 방지 중심으로 강화되고 재비행에 노출되는 상황의 개선이 바람직하며, 소외되고 있는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더. 국방부 훈령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11월 26일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 훈령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방부는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연락장교 선발 시 “파견복귀 후 4년 이상 복무가능한 자”로 제한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위원회는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 제2조에서 해외연락장교의 정의를 “해외 자료 입수 및 협력 등을 업무”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무 형태의 실질은 파견이라 할 것인바, 단지 근무지를 해외에서 두는 것에



불과하거나 일반적인 선호 근무지의 성격에 불과한 파견에 일부 인재 양성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혜적인 정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특히 계급별로 상이한 연령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는 군의 특성상 파견 복귀 후 4년 이상 복무가 가능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각 계급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러. 군 영창 폐지 관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12월 20일 국회의장에게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영창제도의 대체방안으로 논의 중인 군기교육은 그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방부장관에게 군기교육 제도의 내용과 명칭은 인권친화적으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영창제도는 1896년 1월 24일 제정·공포된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처음 등장한 이래, 부대 지휘관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4차례에 걸쳐 군 영창 방문 조사를 실시해 권고해왔다.

「헌법」에서 영장주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기에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질로 보고 있다. 군이라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영창은 영장주의에 반해 병사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률안(대안)은 군기교육 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군기교육은 복무규율상의 처분으로 신분상 변동이 없는 한 그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이는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 복무기간을 징별로 인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군기교육 프로그램은 인권친화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일명 ‘군기교육대’는 기존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에 맞게 인권친화적인 명칭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머. ○○기업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12월 28일 2011년부터 극심한 노사분쟁을 겪어온 사업장인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기업과 ○○기업지회, 관계기관인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기업에서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조합 간 차별 대우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온 결과, 많은 근로자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일부는 우울증 등 질병 발생에 따른 산업재해(요양 승인)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설문·면접) 결과, ○○기업 소속 근로자 다수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인간관계가 악화되거나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이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밀건강검사 결과,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 등이 확인되어 지속적 치료와 정기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기업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위원회는 7월 30일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16도10912 「병역법」 위반 사건과 2018도4708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위 각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위 각 규정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2004년 최초로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래 현재까지 1심 무죄판결이 총 86건 선고되었으며, 이 중 72건이 최근 2년간 선고되었고, 특히 2016년 10월과 2018년 2월에는 항소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동안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심리 대상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 법원의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불인정에 대한 의견제출

위원회는 12월 6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관련하여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12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다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제도는 1989년 폐지 전까지 수많은 공안사범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되어왔는데, 과거 상당수 공안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 행위, 불법감금 등으로 조작돼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보안감호처분에 대한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유사 타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형사보상이 어려워지는 등 이번 재판이 인권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의료원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위원회는 12월 24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의료원 근무 중에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하여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중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2014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 소송이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아동의 전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질병의 특성상 출산 후 진단될 수밖에 없고, 당시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임신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 손상이 발생하면 진료 횟수 증가, 경제적·정신적 고통 등을 겪는데, 태어나 임신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결국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태아 건강 손상의 경우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해 유산과 다르게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귀책사유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 가.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성명

위원회는 2월 7일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관계법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연령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령 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2013년 1월 17일 국회의장에게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또는 더 낮게 정하고 있고, 선거권 연령도 점차 하향되는 추세이다. 이에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 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이행 촉구 성명

위원회는 3월 2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권고 사항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 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최종견해는 2015년 7월 제출한 정부의 제8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8년 2월 22일 개최한 제69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이며, 2011년 제7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이후 7년 만에 나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3개 분야에서 총 53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과 2005년 「남녀

차별금지법」 폐지 이후 성차별 방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과 성적 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무국적 및 이주여성, 농촌 여성 등 소외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하였다.

권고 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예술흥행비자(E-6-2)제도 개선,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에 대한 권고는 2년 이내 이행 조치에 관해 서면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 **다.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 촉구 성명**

위원회는 5월 10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5월 9일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그동안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것은 북한 당국의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았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석방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명도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위원회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서도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 라.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대책 마련 촉구 성명

위원회는 6월 1일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정부가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24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인은 869명이며, 이 중 예멘인만 479명이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 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있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심사에 집중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예멘은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000만 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19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멘을 떠났으므로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 내 난민지원체계의 부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인력 및 통역자원 부족 등<sup>8)</sup>으로 난민심사 자체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고,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본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

8)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심사관은 1명이며, 난민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청 직원 1명을 난민심사 업무에 추가 투입하였고, 아랍어 통역인이 제주도 내에 없어서 타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마.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성명

위원회는 6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1일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12월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률안 내용인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고, 대체복무자를 교정시설에서 현역 군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바. ○○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환영 성명

위원회는 9월 17일 ○○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경찰에 의한 폭행·가혹행위 등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하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심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 「인권교육지원법」 발의 철회 관련 성명

위원회는 10월 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여야 의원 20명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발의가 철회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 「인권교육지원법」은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군대·학교 등 사회 각 영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으로 기대되었다.

법안의 입법과정은 대국민 여론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본 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으로 왜곡되어,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였다.

비록 이 법안이 발의 후 철회되었으나, 위원회는 향후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 정·관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법안이 합리적으로 성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한 성명

위원회는 12월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484명 중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에 대해,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심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당일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으나,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난민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할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을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의 난민 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다.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412명의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 규정도 취업허가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 어렵다.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의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 자.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현장방문 및 성명

위원회는 12월 16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12월 11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위험 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외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이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으며,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2월 26일 위원장은 고인의 빈소를 방문하여, 유족을 위로하고 정부 조사 및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유족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현장(9·10호기) 및 운행 중인 1~8호기를 찾아 열악한 노동환경을 직접 점검하였다.

## 차. ○○○ 고공농성 해결 촉구 성명

위원회는 412일째 진행 중인 ○○○ 고공농성과 관련하여 ○○○지회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노동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사, 그리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점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2월 28일 발표하였다.

2018년 1월 사무총장의 고공농성 현장 방문, 노사 당사자 면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고공농성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12월 28일 위원장이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장 성명을 통해 ○○○ 고공농성 해결을 위해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 사회 전체가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하였다.

##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가.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의 공론화와 실질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문헌연구, 일반 국민 1,000명에 대한 인식조사, 전문가 132명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체형벌제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많은 국민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적절한 형벌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형제도 폐지, 「헌법」,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대체형벌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와 검토를 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추진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과 기술의 인간 영역 대체 등 인권상황 변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적 가상공간의 경계가 희석되고, 자동화(automation)와 연결성(connectivity)의 극대화 등 제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발전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향후 경제·사회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술의 인간 영역 대체, 자동화된 기술에 의한 차별 등 인권상황의 중대한 변화 초래가 예상되고 있다.

실태조사는 전국 1,000명의 일반 시민(남녀 각 500명, 지역 및 연령 배분)에 대한 설문조사,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각계 전문가 3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5%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생활편의 향상 등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중요시하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정책 제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의 일원화 및 감독기구 기능 개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준 마련과 투명성(설명받을 권리 등) 보장,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적용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제도 현황 및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는 「정착지원법」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변보호관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신변 보호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신변보호제도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인권침해 요인 등을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례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 라.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우리 사회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돌봄 수혜자인 동시에 돌봄 제공자로서 노인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지만, 공식적·비공식적 관계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돌봄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일반 노인과 노노케어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노돌봄의 긍정적 효과 확대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및 노노케어 사업에서 참여자와 수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도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마.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이주민의 확대와 다문화의 진행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시적인 영역을 형성해왔고,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하는 구조의 일부로 자리 잡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참정권 등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인권보장 및 다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조사 항목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보이며, 특히 이미 확립되어 있는 노동권 등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설문조사에서 개선방안으로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권리 공유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으로는 이주민의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제가 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모두 최하위 순위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주민 대상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신 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3.2%,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7.6%, 이주민 범죄는 32.1%만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 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배제 현황과 실태, 비인가 대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의 적정한 교육권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인가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비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에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학생 부담금이 높고 학교 시설, 건강검사의 유지, 교사 자격 인증 등에서 공교육 내의 학교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위원회는 아동 및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동 및 미성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를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압류된 땅이 있거나 가족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등의 아동 및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은 단순히 의료보장 수단의 의미를 넘어

장학금 신청, 학자금 대출, 취업, 주거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신용과 소득능력 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및 미성년자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 아.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과 소년사법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 외에 「소년법」,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소년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세 유형 중 하나로 처리하는 국내 소년사법 체계에서는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보호자 참여권, 변호인 조력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받을 권리, 개별처우를 받을 권리, 신체 구속과 무력의 제한에 관한 권리, 진정어의 접근 가능성, 관계자의 전문성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실태조사에서는 국선변호·국선보조, 전문적 조사제도, 이의제기권, 소년 분류심사원·소년원 확대, 정기적 심사권, 종사자 교육 등 형사절차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부사관이 부대 관리 및 소부대 전투력 육성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국방부가 국방개혁계획에 따라 부사관을 전투부대 병력의 4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나 선임 부사관의 사생활 등 관여, 계급적 관계 등으로 부대 외적인 부분까지도 장교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근무 여건 등 부사관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8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장교들은 부사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거의 없다고 답한 반면, 남자 부사관의 33%, 여자 부사관의 44%는 부사관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장교의 군대 예절 요구, 군 숙소 배정, 진급, 보직, 표창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부채/저축 현황 제출,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개인 승용차 구입 및 운행 통제, 휴가, 외박 통제 등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군대 내 성희롱 및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여군의 23% 수준이 직접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군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차별 규정 강화’를 최우선으로 뽑았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안을 검토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차. 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공관병, 복지시설 관리병 등 비전투요원의 인권침해 사실이 언론에 제기되어 비전투요원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국방부에서 자체 점검과 단계적 개선계획의 이행 사항 확인을 통하여 비전투요원의 인권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인권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다.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부대의 사후 대응이 미흡해 보복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복무부적응자라는 낙인이 형성되는 점, 비밀이 보장될 수 없는 군 시스템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비전투요원이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관계는 ‘병-부사관’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카.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위원회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학교보건 실태에 대한 우려,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미비, 노후시설 문제, 안전시설 부족, 통학지원 부족으로 가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가의 보조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의료 지원이었다. 이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나,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 안전사고 시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 이용 학생의 대피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육활동이나 의료·건강지원, 재난안전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타.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위원회는 장애인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 우선 이용, 출산, 자녀교육 및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마다의 편차, 활동보조인의 지원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모·부성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정과제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현 과정에서 모·부성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에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질적 서비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입양특례법」 개정 필요, 출산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기본 생존권을 위한 경제적 안정의 확보, 거점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 인증 의료기관 제도의 도입,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육아전문지원 부서 신설, 모·부성권 확보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홍보의 다각화, 홈헬퍼, 아이돌보미, 활동보조인 등 각종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책의 개선, 장애인 모·부성권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 결과, 급성기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 입원 정도이고, 정신병원에서 퇴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며, 정신재활 서비스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원 또한 극단적으로 적고, 케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간 협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케어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위기개입 서비스 시스템 마련, 퇴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 강화, 주거의 선택권 보장, 지역사회집중 치료 사례관리 등 전문가들의 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사회 비의료적 재활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개혁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장애인권리협약」 각 조항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문헌연구 방식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에 관한 정책,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다양한 법령과 제도가 장애인 및 관련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독립의견서 작성과 장애인 인권보호 및 향상 등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정책,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초안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로서 향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향후 장애인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관련 쟁점의 최신 국내외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이 연구보고서가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거.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3월 12일 대한민국 정부에 “온라인 성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들이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한다는 당사국의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별적 발언과 폭력 및 혐오에 가까운 글(말)이 생산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4곳을 선정해 해당 사이트 내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표 게시판의 게시 글을

분석한 결과 강남역 살인사건과 ‘미투’ 및 몰카사건에 대한 사이트별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게시글에서 여성혐오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양한 형식의 신체 공개 멸시와 모욕적 표현도 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40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반수 이상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남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이 고립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세상보다 온라인 세상이 권위적이며, 여성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사에 참여한 여성 대부분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답하여,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너.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입직 과정에서부터 임신·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으로 보장된 임신 중 단축근무, 유·사산 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480명 중 245명(51.0%)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이들 중 171명(69.8%)이 배치·승진에서, 173명(70.6%)이 보상·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549명(68.6%)은 출산휴가 사용 시 차별을 받았고, 그 이유로 ‘업무 공백’(191명, 34.8%), ‘유급휴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151명, 27.5%),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105명, 19.1%)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159명(19.9%)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111명

(69.8%)이 배치·승진에서, 113명(71.1%)이 보상·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641명은 그 이유에 대하여 ‘육아휴직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신청할 분위기가 아님’ 237명(37.0%), ‘업무부담/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124명(19.3%), ‘소득이 줄어서’ 76명(11.9%) 등으로 응답하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취하여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치에 관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정시퇴근 정착’(177명, 22.1%),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무 확산’(155명, 19.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제도 보장 및 점검·감독 강화’(125명, 15.6%),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99명, 12.4%),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활성화’(94명, 11.8%), ‘남녀고용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83명, 10.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더. 문화예술계(영화)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중에서도 영화계는 여성 배우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면서 현장에서 남성 스태프들의 성희롱과 모욕적인 언동도 감수해야만 하는 등 수많은 여성 스태프와 엑스트라가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총 605명(여성 478명 79.0%, 남성 127명 21.0%)이었다. 이들 중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 원인 경우는 여성이 42.7%로 남성의 26.0%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비정규직 중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여성이 20.8%로 남성의 12.0%보다 많았다.

영화계 입문 이후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13가지 피해 유형 중 하나 이상 경험자 비율)은 전체 34.9%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15.0%, 여성 40.2%였다. 여성 내에서도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는 비정규직, 비책임급, 짧은 경력과 계약 주체가 도급회사인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등에서 많았다.

영화산업 내 남성과 여성에 따른 채용 조건, 승진 기회, 업무에 있어 성별 구분, 의사결정 참여 정도, 일할 기회 등에서 여성을 차별한다는 데 대해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은 동의하였지만 여성의 동의 수준은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영화산업 내에서 여성에게는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부여하거나 기대한다'에 대해서는 남성은 14.2%만이 동의한 반면, 여성은 71.4%가 동의해 성별 차이를 보였다.

## 2. 인권증진 사업

### 가.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초 미투운동이 검찰 등 공공기관, 문화예술, 각급 학교, 의료 분야, 종교계 및 정치권까지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위계적 권력과 젠더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은 불법행위임에도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예방과 구제 관련 공적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긴급하게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근본원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4월 5일, 제1차 토론회는 '미투로 연대했다!'는 주제로 일상화된 젠더폭력과 미투운동의 의의를 알아보고, 위계적 조직문화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고찰하여, 미디어는 성폭력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또한 여성혐오 현상을 통해 미투운동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4월 12일, 제2차 토론회는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실태와 특성을 진단하고,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였다. 또한 조직 내 구제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도대체 법·제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올바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4월 19일, 마지막 제3차 토론회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영화계, 무용계, 연극계 및 문단의 권력 구조, 착취 구조를 고찰하고 정책적 제안과 재발방지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 나.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 ■ 아동인권 모니터링

위원회는 아동인권 영역 전반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였다. 정책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당사자 모니터링과 정책연구 사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첫째, 정책 모니터링은 아동에 대한 전문가들로 아동인권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정책 및 제도의 국제인권기준 이행 정도를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별로 검토하였다.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기초보존·복지, 교육, 특별보호조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아동에 관한 정책·제도 전반을 검토하였다.

둘째, 현장 모니터링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경찰, 교사, 시민사회활동가 총 15명을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당사자 모니터링은 10개 권역(서울,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아동 141명을 선발하여, 공통 주제인 나의 놀 권리와 권역별 자유주제(아동의 진로와 대학, 아동보호권, 학생인권조례, 청소년의 일할 권리, 학교주변 유해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아동 당사자의 권리주체성을 강화,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 하였다.



넷째, 정책연구 사업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당사국이 협약의 개별·구체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인 청원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한 해외사례 및 가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 ■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광복 이후 부랑아 강제 수용시설로 운영되었다. 1955년부터 1982년 선감학원이 폐쇄되기 전까지 최소 4,691명의 아동이 경찰 및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되어, 강제 노역, 폭행 등 가혹행위, 굶주림에 시달렸다. 아동들은 선감학원 종사자 및 다른 아동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 및 구타에 고통받다가 탈출 또는 사망하였고, 3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6월 22일과 12월 17일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과거 부랑아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강제 노역과 폭력,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사 및 생활환경에 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책 방안으로 법률 제정을 포함하여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10월 22일 국회의장에게 과거 부랑아 시설이었던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인권침해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이 사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가능한 지원 방안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 아동인권 보고대회

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8개의 세션을 통해 진행된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인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첫날인 22일에는 개회식 및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세션을 진행하고, 둘째 날인 23일에는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세션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스쿨 미투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학교폭력 세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예정된 「아동권리협약」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자 간담회,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연구> 결과 발표 세션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당사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아동의 놀 권리 세션을 열었다.

3일간의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인권단체 전문가 및 당사자 등 100여 명과 일반 참가자 600여 명의 참여로 위원회의 아동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자 및 대중과 공유하고 아동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종합 토론의 장이 되었다.

## 다. 노인인권 증진

### ■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11월 22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노인혐오 및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통해 위원회는 노인혐오 등 사회적 갈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세대갈등의 유형과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토론회 1부는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 및 노인혐오에 대한 현상 및 진단’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2부는 ‘세대통합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토론회를 통하여 노인혐오 및 세대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는 노년세대에 대한 혐오와 세대갈등의 문제가 노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접근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라. 장애인 인권 증진

### ■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과정을 통해 생활 속 장애 차별요소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원 48명을 구성하여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서울·인천 지역 운동경기장 관람시설 17개소, 강원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9개소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시설 접근성 등을 모니터링하였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전달,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하였다. 서울·인천 운동경기장 관람시설 17개소와 강원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3개소는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하였다.

○○○○공사는 휴게소 이용자를 위한 ‘hi-쉽마루’ 모바일 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즉시 개선 완료하였다. 또한 전국 190여 개 휴게소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지역순회 토론회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4월 11일 무안에서 시작하여 4월 13일 대구, 4월 16일 원주, 4월 17일 서울, 4월 18일 대전, 4월 19일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에서 ‘장애인의 문화·관광권’, 창원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및 장애인 인권현안’, 무안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실태 등 지역인권 현안’, 대구에서는 ‘장애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대전에서는 ‘장애인의 미투(ME TOO)’, 원주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주제로 의견 수렴과 지역 장애계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 ■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

위원회는 5월 11일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실태조사에서 시설생활인의 60% 이상은 비자발적 입소자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거나 입소 당시 원하는 서비스 요청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시설 생활 중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았고, 폭력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내 입·퇴소과정, 건강권, 탈시설화 방향 등 다양한 정책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

### ■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위원회는 10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정신장애인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해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국내외 여러 전문가를 포함한 120여 명이 참가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평등 실현과 의사결정지원제도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 마.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 ■ 제2차 이주민권 가이드라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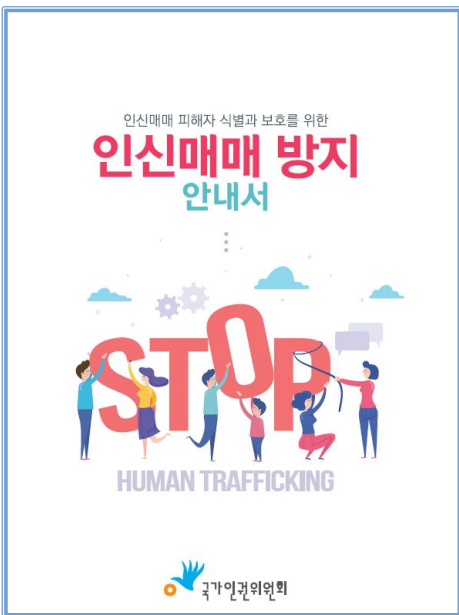
위원회는 2012년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권고하였고, 매년 정부 부처의 이행 실적을 모니터링해왔다. 계속 변화하는 이주민 현황과 국내외 이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이주민권 쟁점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18년 초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마련

2015년 국회에서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를 본인이 보관하지 못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이나 무력의 행사 혹은 다른 형태의 강제,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이익의 제공이나 수락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혹은 인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착취는 성매매나 그 밖의 성 착취, 강제노동 및 노동력 착취, 노예제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판단한다.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

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6월 20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토대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현장이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 강화를 위한 인신매매 예방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였다.



### 인신매매란?

공연하러 왔는데 성매매를 하라니...

공연과 관련 없는 강요에 의한 업무

고용계약 위반	48.2%
유박	20.9%
휴일 근무	18.2%

59.1%  
개인사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sup>1)</sup>에 따르면, 착취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

인신매매자는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착취하여 임금을 가로채거나, 합당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1) 이하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라 함

## ■ 난민인정자 처우 보장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2018년 5월 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4만470명 중 839명이 난민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위원회는 한국난민인권연구회와 함께 난민인정자 처우 보장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획하여 난민인정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9월 19일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 난민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배포

위원회는 제주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을 시작으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까지 이어지는 것을 주목하면서 난민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부정적 인식에 대하여 근거 있는 사실 확인 등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난민과 이주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외국인 범죄가 많아졌다?** (출처: 법무부 및 경찰청 자료) **No!**

2017년 체류기간 수가 2016년보다 약 6.4% 증가했으며, 2017년 외국인 범죄는 2016년보다 오히려 약 17.6% 감소하였다.

체류기간인 현황	외국인범죄 발생현황
131,067명 증가	7,656명 감소
2,048,441명	43,764명
2,180,498명	36,099명

**2 난민을 받아들이면 범죄율이 증가한다?** **No!**

가.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은 범죄의 소용이 되었다?

독일의 2015-2017 난민수용현황 및 총 범죄발생건수 (2018 법무부 실명자료 및 독일연방 발표자료)

항목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난민 수용 (명)		148,215	445,210	326,370
총 범죄 발생 (건)		6,330,649	6,372,526	5,781,984
범죄 증감률		-	약 0.7% 증가	약 9.6% 감소

독일은 2017년 약 30만명의 난민을 수용하였으나, 총 범죄발생건수는 2016년에 비하여 약 9.6% 감소하였다. 이는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적은 건수이며, 특히 독일 내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는 66만건에서 70만건으로 23% 가량 감소하였다.

출처: 유엔난민청(UNHCR)

**나. 스웨덴은 난민을 받아들인 후부터 성범죄가 많아졌다?** (출처: 스웨덴 정부, 스웨덴법제연구원, 영국 BBC방송)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법제연구원에서 범죄 용의자가 외국 출신자에게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00여 년 전인 2009년임을 밝혔으며, 오히려 스웨덴이 가장 많은 난민신청자를 받아들인 해인 2015년에는 범죄 발생 건수가 73% 하락하였다.

스웨덴의 성범죄 관련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이 유엔인권 국가 중 성 평등 지수 1위 (유엔개발협력기구, 2017) 국가이며 그간 법 개정률 둘째 강대국, 상하정 그리고 성 적차 별의 법적 장치를 확대하며 성평등과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범죄 피해 보상 상한액이 최대화 혹은 가해자의 수가 9%에 불과한 집안집수로 집계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난민으로 위장하여 테러단체가 들어온다?** (출처: CNN, IAVN인종고교포사우소) **No!**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난민 위장(Refugee Crisis)으로 불리는 난민 대거 유입(사태) 발생한 시기에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던 테러 공격 중 단 하나도 난민 신청자에 의해 발생한 테러는 없었다. 2016년 9월 UN 총회에서 UN 대리와 및 인종 관련 특별보고관은 위험이 테러이름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반면, 오해의 제민이라고 언급하며 테러의 이름은 실제의 테러를 악화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오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4 난민신청자는 모두 생계비 지원을 받고있다?** (출처: 법무부 난민과) **No!**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기준 432,000원이다.

그러나 2017. 12. 31. 기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동안 전체 난민신청자 중 약 3.2%만이 생계비를 지원 받았다. 그리고 그 중 65%만 이생계비를 지원받은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며, 실제로 생계비를 지급받은 평균 기간은 3개월이었다. 결국, 전체 난민신청자 중 약 3%가 생계비를 지급받으며, 그 중에도 3%만이 6개월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5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출처: 위민연기부 Global Trends 2017) **No!**

대한민국의 인구 천 명당 난민을 인종은 0.04명으로, 이는 전 세계 모든 난민 수용국 중에서 130위이며, OECD 가입 국가들의 난민인종률과 비교 시 최하위권 (위에서 두 번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안전재트워크가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 바. 군 인권보호

### ■ 군부대 내 공중전화, 인권상담전화 ‘1331’ 연결 개선

위원회는 군부대 내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 위원회 상담전화번호 ‘1331’ 이용 시 연결 제한을 개선하여 군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진정권 보장을 제고하였다.



군부대 공중전화에서 인권상담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1'을 누르는 경우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무작위로 10여 개 부대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대에서 “잘못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로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등 메시지와 함께 통화 연결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군부대 내 공중전화 사업자별로 조사한 결과, 연결 제한 원인이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에 따른 기술적 문제임을 확인하여 국방부에 '1331' 연결 제한 해제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부대 내 공중전화에서 위원회 상담전화 '1331' 연결 제한을 모두 해제하였다.

■ 육군훈련소 <신병교육 가이드북>에 위원회 진정 소개 및 국방일보에 위원회 군 관련 인용 결정례 연재

7월 24일 군인권조사과 출범에 맞춰 소관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최혜리 상임위원)이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훈련병 등을 격려하였고, 훈련소장과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을 협의하여, <신병교육 가이드북>에 위원회 진정을 소개하는 난을 추가하였다. 또한 군인권조사과 신설에 따른 집중 홍보 차원에서 일 15만 부가 발행되는 <국방일보>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사건 결정례를 8회 연재하여 장병들이 숙독하고, 간부 등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방일보 연재 수록 목록

게시일	주제	헤드라인
2018. 9. 11.	종교의 자유	“종교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무교도 존중해야
2018. 10. 4.	군 의료	군인은 아프면 피병? 참지 말고 치료받아야
2018. 10. 30.	징계절차	열차려 종료시간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2018. 11. 13.	사생활의 자유	군 간부 독신자 숙소만 점검? 엄연한 사생활 침해
2018. 11. 26.	행복추구권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2018. 12. 12.	진정권 보장	군내 '진정권'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



## 사. 노동자 인권보호

### ■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위원회는 2월 13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500명의 응답자 중 70%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효적 구제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아.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 ■ 2018 인권경영포럼 개최

위원회는 6월 22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계 구축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8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국회, 정부, 경제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상환 상임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시범 적용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인권경영 추진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 자. 정보인권 증진

### ■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 자문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10월 25일 정보인권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관련 성과 및 2019년도 업무

방향을 소개하였고, 각 단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 제안하고 토론하였다.

특히 경찰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범죄수사 목적의 각종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선, 정부에 의한 인터넷 심의제도(임시조치, 차단 등) 전반의 개선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 2018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참가

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8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Internet Governance Forum)에 참가하였다.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미래 정보사회의 발전 방향,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각국 국가기관, 인권·시민사회단체,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 포럼으로서 정보인권 분야에서 권위 있는 논의의 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8년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신뢰의 인터넷’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어 각국 전문가 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각국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에서의 차별 해소, 극단주의 대응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의 대응 등 다양한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차.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발간

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최종견해 문서와 함께

위원회가 제출한 쟁점목록 의견서, 독립의견서, 정부보고서, NGO보고서 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발간

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보고서가 제37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최종보고서 원문 및 국문 번역본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제출한 독립의견서, 검토보고서, 인권이사회 발언문, 정부보고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보고서 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을 위한 의견서 제출

위원회는 2018년 1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5·6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권리영역별 쟁점을 수록하였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노키즈존 확산, 청소년 미혼모의 안전한 낙태, 법률상 아동의 권리가 주어지는 나이, 아동자살, 베이비박스, 미세먼지·석면·어린이집 통학차량·가습기 살균제 등으로 인한 아동안전, 스마트폰·도박 과의존, 출생등록, 아동학대, 스쿨 미투, 입양·파양, 교육권, 여가·놀이, 난민아동, 빈곤 아동, 근로아동, 성적 착취,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여 총 62개 쟁점으로 구성되었다.

### ■ 제97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의견 제출 및 참석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제97차 회기 중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통합 대한민국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위원회는 10월 22일 협약의 국내 이행 정보 및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 해온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해 최근 사례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공식 세션에 국가인권기구로서 참여하여 국내 이주민의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도출하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촉진을 도모하였다. 대한민국 담당 국가보고관 개이 맥도걸(Gay MCDUGALL) 위원은 심의 최종발언에서 “2012년 심의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행 상황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장 전경



정문자 상임위원 발표

## 제4절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가. 개요

#### 1) 추진 배경

2010년부터 반(反)다문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현상이 대두되었으며, 2012년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에서 등장한 혐오의 발언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Hate Speech)’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2018년 제주도 예멘 국적자의 난민신청 사안 등을 둘러싸고 혐오표현이 더욱 격화되면서 혐오 현상은 사회 이슈로 촉발되었다.

근래의 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8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혐오표현은 대개 여성,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대어 표출되고 그 양상 또한 일상화, 전면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혐오의 확산 배경에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 불평등 구조와 같은 경제적 요인, 혐오를 유포하는 대중매체의 등장, 정치적 맥락 등의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혐오가 언제든 폭력이나 범죄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폭력과 증오범죄(Hate Crime)는 혐오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혐오표현이나 증오범죄(Hate Crime, 편견을 동기로 한 범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이에 위원회는 2016년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실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 제5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 논의 과정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 2) 목적

위원회는 혐오의 문제가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 있는 구조적 차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초를 위협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혐오차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혐오 표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권고를 통한 혐오차별 상황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혐오표현 인식개선 및 예방, 혐오 표현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등이 있다.

## 나. 주요 활동

###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2013년 이후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왔으며, 혐오표현으로 인한 심각한 해악이 드러나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고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혐오표현과 혐오표현으로 인한 차별 예방을 목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초·중등교육기관, 대학교와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대응전략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 「난민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성명

2018년 1월부터 약 5개월간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국적자들이 대거 난민신청을 한 사례를 계기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일부 근거 없는 주장과 이슬람에 대한 편견 조장으로 난민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이 확산되었으며, 6월 13일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협약국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불가함을 밝히고, 국민 불안 해소방안과 난민제도 악용 방지대책,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난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8월 7일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을 환영하며,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하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 ■ 성소수자 편견 해소를 위한 2018년 서울퀴어축제 참가

2017년 위원회는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점을 알렸고, 2018년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맞이하여 축제 당일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혐오표현 개선활동을 펼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의미를 담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위원회 청사에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무지개 배너를 게시하였다. 축제 현장에 설치된 홍보부스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한편 축제 참여 인증 사진 촬영, 인권 타투 부착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 ■ 혐오차별 관련 간담회 및 모니터링 활동, 토론회 개최 등

혐오표현과 그로 인한 차별문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제정 연대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2월 23일 개최하였다. 효과적인 혐오차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법률, 조례 등 입법 관련 사항, 언론, 외부 토론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8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양상을 살펴보고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2일 노인혐오 등 사회적 갈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세대갈등의 유형과 실태를 진단하고,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인권 차원에서의 정책·제도적 접근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 혐오차별 적극 대응을 위한 ‘혐오차별 대응기획단’ 구성

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진행해오던 혐오차별 대응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2019년 1월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을 구성하였다. 이 기획단은 혐오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혐오차별 문제의 공론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규범 마련과 실천 견인, 국내외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절 평가

2018년 위원회는 인권정책과제의 발굴 및 확장, 인권과 관련된 법률·정책·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함께 사회 현안 이슈 등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보호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 방안 실태조사 등 23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파악하였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을 권고하여 이주노동자 사업장 점검과 상담의 전문성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미등록 이주아동 출국정지 관행 개선을 권고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의 과태료 미납 시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 개선 권고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에 대한 법적 관리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을 권고하여 예방관리제도의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항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등 건강권 보호 권고를 통해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보존기간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리고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형사재심절차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 ●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sup>10)</sup>·공직유관단체<sup>11)</sup>, 구금·보호시설이 그 업무의 수행<sup>12)</sup>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sup>13)</sup>를 하는 경우, 또는 법인·단체·사인(私人)이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 진정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주로 진정 제기로 개시된다.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 등 제3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2)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용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를 말한다.

있다. 구술·전화로 진정하기 어려운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받는 면전진정<sup>14)</sup> 제도도 있다.

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각한다.

2018년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9,280건으로 2017년 1만2,329건보다 3,049건(24.7%)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7,070건(76.2%),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2,185건(23.5%), 기타 25건(0.3%)으로 집계되었다.

## 긴급구제

진정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2018년 1월에는 위원회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긴급구제 요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인 사회복지시설장에게 불이익 조치 증지를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2월에는 모친과 동생을 간호해야 하는 중국동포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 당국이 국적신청을 기각하고, 강제퇴거명령 조치를 한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

것은 부당하다는 긴급구제 요청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수용하였다.

아울러 8월 후서기에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긴급구제 요청을 하였는데,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긴급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용하였다.

##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직권조사는 8건에 대해 개시를 결정하고, 11건을 처리하였다. 처리 유형을 보면, 권고 8건, 고발 1건, 징계 권고 1건, 의견표명 1건이다.

##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 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시설 방문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방문조사는 8건에 대해 개시를 결정하였고, 3건을 처리하였다. 처리 유형은 권고 2건, 조사종결 1건이다.

## 인권상담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권전문상담원과 전문상담위원이 참여하는 전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취약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를 상담하기 위해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기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던 순회 상담의 방식을 개선해 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 대상,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 현장 등 적시성 있는 상담 방식을 도입하였다.

[표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등 접수·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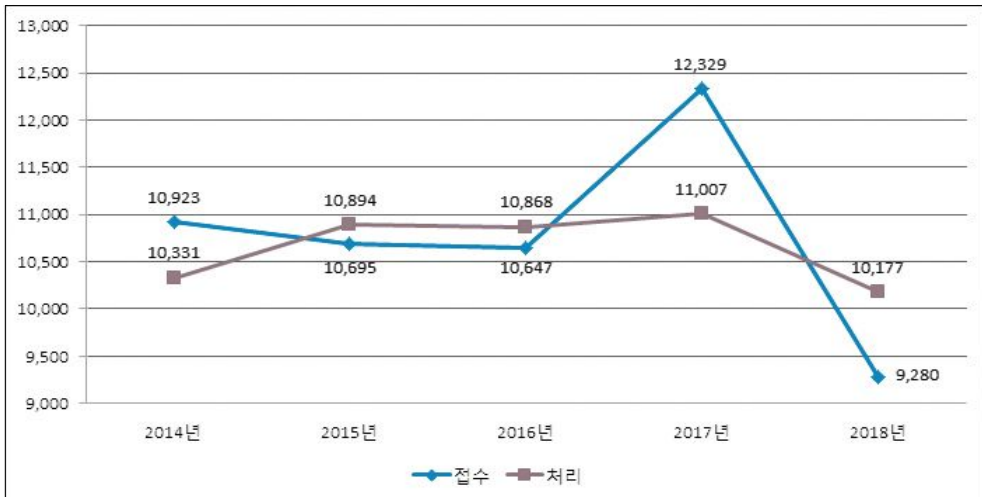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진정·상담 민원·안내 총 접수건수	진정사건 총 건수		인권침해 진정사건		차별행위 진정사건		기타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누계	972,598	132,185	129,093	101,147	99,365	28,748	27,442	2,290	2,286
2018	87,526	9,280	10,177	7,070	7,717	2,185	2,437	25	23
2017	91,638	12,329	11,007	9,144	8,580	3,152	2,375	33	52
2016	80,283	10,647	10,868	8,161	8,424	2,432	2,410	54	34
2015	80,686	10,695	10,894	8,499	8,795	2,188	2,016	8	83
2014	82,093	10,923	10,331	8,708	8,093	2,197	2,223	18	15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그래프 2-2-1]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가. 진정사건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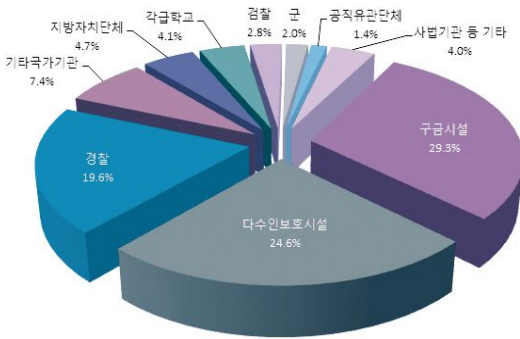
2018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총 7,070건이 접수되어 이전 해보다 2,074건(22.7%)이 감소하였다. 이는 2017년 5월 대통령의 위원회 위상 강화 발표 이후 급증한 경찰(△326건), 구금시설(△446건), 다수인보호시설(△591건) 관련 진정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인보호시설은 2015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인데, 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외에 2018년 이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각급 학교 관련 진정도 접수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전 3년치 평균(547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접수되었다.

**【표 2-2-2】**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소계	검찰	경찰	구금 시설	국정원	군	기타 국가 기관	다수인 보호 시설	사법 기관	입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출입국 관리 기관	각급 학교	공직 유관 단체	기타
누계	101,147	3,008	19,833	29,686	258	2,280	7,503	24,841	1,207	76	4,734	397	4,143	1,441	1,740
2018	7,070	129	1,236	1,811	11	256	304	2,017	56	1	290	56	518	196	189
2017	9,144	199	1,562	2,257	10	280	486	2,608	97	11	470	83	668	291	122
2016	8,161	142	1,484	1,651	9	199	315	3,036	77	2	307	59	594	222	64
2015	8,499	144	1,363	1,715	3	153	259	3,473	61	6	445	81	551	190	55
2014	8,708	190	1,539	1,631	11	182	392	3,464	83	3	387	18	497	230	81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그래프 2-2-2]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인권침해 진정 누적 건수는 10만1,147건이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접수 현황을 피진정 기관 별로 살펴보면 구금시설 관련 진정이 2만9,686건(29.3%)으로 가장 많고,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 2만4,841건(24.6%), 경찰 관련 진정 1만9,833건(19.8%), 기타국가기관 관련 진정 7,503(7.4%) 순이다. 구금·다수인보호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8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 관련 진정이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에는 감소하였다.

## 나. 진정사건 처리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최근 몇 년간 연 8,000건 이상을 처리하였으나, 2018년에는 처리 건수가 7,717건으로 2017년에 비하여 863건이 감소하였다. 이는 성희롱·성추행 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팀 등 각종 현안 관련 TF 운영에 따른 조사인력 파견,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및 탈북 여종업원 집단입북 사건 직권조사 등 대규모 직권조사 실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8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리구제 건수도 670건으로 2017년 대비 206건(23.5%)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조사중해결(△261건)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특히 다수인보호시설(△162건), 구금시설(△45건)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아울러 권고 건수는 2017년과 비슷하나, 수사의뢰 및 고발 건수는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권리구제율<sup>15)</sup>도 2017년 10.2%에서 2018년 8.7%로 하락하였다.



[표 2-2-3]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법률구조 요청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누계	101,147	99,365	11,892	145	2,564	19	15	1,795	7,354	56,761	1,386	28,786	540
2018	7,070	7,717	670	3	209	-	-	124	334	4,704	76	2,251	16
2017	9,144	8,580	876	8	210	-	4	59	595	5,421	96	2,164	23
2016	8,161	8,424	903	19	179	1	9	122	573	4,956	82	2,452	31
2015	8,499	8,795	858	8	133	-	-	277	440	5,101	79	2,705	52
2014	8,708	8,093	728	21	78	1	-	229	399	4,890	48	2,387	40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이다.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한편, 2018년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기관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처리 건수가 다수인보호시설 2,047건, 구금시설 1,871건, 경찰 1,546건, 각급 학교 576건, 지방자치단체 342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권리구제 건수는 경찰 153건, 다수인 보호시설 134건, 각급 학교 117건, 구금시설 97건, 군 54건 순으로 많았다.

15) 권리구제율 : 권리구제 건수/처리 건수(%)

[표 2-2-4] 2018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 계	7,070	7,717	670	3	209	-	124	334	4,704	76	2,251	16
검찰	129	180	11	-	9	-	-	2	99	2	67	1
경찰	1,236	1,546	153	-	32	-	73	48	754	34	602	3
국정원	11	8	0	-	-	-	-	-	8	-	-	-
지방자치단체	290	342	24	-	7	-	1	16	233	6	79	-
사법기관	56	81	9	-	6	-	-	3	57	1	14	-
입법기관	1	3	0	-	-	-	-	-	3	-	-	-
기타국가기관	304	341	25	-	12	-	1	12	230	6	80	-
구급시설	1,811	1,871	97	-	44	-	1	52	1,116	7	649	2
다수인보호시설	2,017	2,047	134	3	43	-	12	76	1,425	5	479	4
군	256	261	54	-	10	-	19	25	169	3	35	-
각급 학교	518	576	117	-	41	-	12	64	320	6	127	6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	56	98	17	-	2	-	-	15	49	-	32	-
공직유관단체	196	235	26	-	3	-	4	19	142	3	64	-
기타	189	128	3	-	-	-	1	2	99	3	23	-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이다.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 2. 직권·방문조사

### 가. 직권조사

아동양육시설의 거주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시설 측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전원을 시도한 행위가 드러났다. 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거주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 해소, 아동과 시설 종사자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직권조사 사례와 관련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결과, 위원회의 권고가 모두 수용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7월 26일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단속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사고 발생 후 생명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 특수학교 장애인학생 폭행 관련 직권조사, 육군 GP 총기 사망 사고 관련 직권조사도 실시하였다.

### 나. 방문조사

군 정신병동 4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 격리 및 강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교정시설의 경우 10개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징벌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대상자 관행적 분리수용 지양, 기동순찰팀(CRPT) 인권교육 실시,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등을 권고하였다. 외국인보호시설의 경우

3개 시설을 방문하여 보호외국인의 장기수용 및 의료처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통제 위주의 운영 방식 변경,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 실효성 확보, 장기수용 보호외국인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7개 갱생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환경 및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12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인요양원의 신체 구속 실태, 입·퇴소 과정, 종교의 자유 보장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및 생활 관련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 시설 내 CCTV 운영 실태 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에 의하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 7898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외에 소년분류 심사원 7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가. 검찰·경찰·법원

##### ■ 출국정지 지연 해제에 따른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위원회는 사기 혐의로 출국정지된 재외동포가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검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바로 해제하지 않고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야 법무부에 해제 요청을 한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4월 26일 검찰총장에게 출국금지·정지된 사람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997년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출국을 반복하며 사업을 하다 2006년 시민권을 획득하였는데, 2008년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2013년 입국하였다. 출국정지가 되었다. 검찰은 진정인에 대해 20차례에 걸쳐 출국정지 및 기간 연장 조치를 하였고, 진정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28일간이나 출국정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에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합당한 사유 없이 해제 신청을 지체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피의사건 처분결과 자택 발송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위원회는 피의자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피의자 집으로 우편 통지한 사건과 관련하여 7월 5일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 주의 조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피의사건은 인지사건에 해당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처분결과 통지서의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하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수취 및 열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처분결과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피의사실의 진위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지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해당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 확정판결 전 압수물 폐기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으나 검찰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 압수물(휴대전화)을 폐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9월 18일에 해당 검사와 수사관 서면 경고 조치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압수물품인 휴대전화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1심 선고 이후 진정한 측이 휴대전화 몰수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고, 2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폐기로 방어권 침해가 크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최종 판결이 있기 전 검사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한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압수물 폐기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보존·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 ■ 선순위 집회라는 이유로 ‘알박기’ 집회 방치는 인권침해

위원회는 회사 정문 앞에 선순위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며 후순위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사측의 행위를 방치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3월 28일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자유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였다.

사측은 지난 2000년부터 365일 24시간 집회신고를 해왔으나 실제 집회 개최 일수는 며칠 되지 않아 일명 ‘알박기’ 집회를 관행적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정한이 문제 제기한 무렵에도 사측은 회사 정문 앞 좌우 측 인도 전체

(약 200~300m)를 매일 24시간 참가인원 100명의 집회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실상 사측 직원이나 용역직원 5~6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흠어져 있다 다른 집회 시도가 있으면 선순위 집회 신고를 주장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6월 법원의 집회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는 사측이 집회 물품 앞을 가로막거나 둘러싸는 등 방해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적극적인 조율 및 방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1월 법원은 사측이 자신들의 선순위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진정한 등을 고소한 사건 판결문에서, “직원 및 용역을 동원해 24시간 진행하는 선순위 집회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와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가 후순위 집회에 대해 집시법상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청와대 앞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경찰이 청와대 앞을 통행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3월 28일에 청와대 경호실장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불심검문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관련 업무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과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문을 할 수 있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문·

검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의 무분별한 불심검문 활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당시 경찰관들이 진정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을 살 만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가 부족하였는데도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 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검문을 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검문 요건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서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 진술조서 수정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진술조서 작성 후 내용 추가를 요청하는 고소인을 방해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8월 9일에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의 증감변경 청구가 있을 때 조서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 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판단해 추가로 기재하던 진술조서 마지막 장을 가져갔고, 새로 인쇄해 주면서 추가 진술 기재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진술자에게 압박감을 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진술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 및 「범죄 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를 포함한 진술자에게 기재된 진술 내용을 열람시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추가로 조서에 기재토록 해, 동등하고 공정한 수사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호 하고 있다.



또한 담당 경찰관이 수사과정 확인서에 추가 진술 부분을 작성하라고 안내하였다고 하나, 수사과정 확인서는 진술자 조사 시각 및 조사 진행 경과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추가 진술 용도로 보기 어려우며, 별도 추가 진술 기재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진정인이 고소인 조사 바로 다음 날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고, 조사 당일 추가 진술 기재를 시도했던 진정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 진술을 기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경찰관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진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추가 진술 기재를 방해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경찰의 자의적 내사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경찰이 민주화운동가에 대해 장기간 부당한 내사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11월 9일에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과 내사를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규칙 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은 진정인과 주변 친인척 등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하면서 「경찰내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사 착수 보고, 승인 및 관리 절차, 내사 기간 제한 등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내사행위가 법령의 규정이 아니라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내사는 현재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규율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인 만큼 구체적인 통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첩보 등에 의한 경찰내사 건수가 2017년 한 해에만 70여만 건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규칙으로 일탈·남용 등을 통제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도 보았다.

또한 해당 내사 관련 지침이 국민의 인권과 내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관련 경찰공무원이 내사 착수, 승인,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사  
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 침해 여부를 주장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였다. 내사 개시 및 절차가 관행에 따르거나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이 방지될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 ■ 압수수색영장 내용 확인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압수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영장을 읽는 도중 영장을 회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11월 29일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총 28페이지의 압수영장을 진정인 A, B에게  
각각 교부하였다가 약 1분 40초 동안 10여 페이지를 읽고 있던 A의 압수영장과  
약 1분 동안 2페이지를 읽고 있던 B의 압수영장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58조 등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와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들에게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하나, 압수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은 각각 진정인들의 압수영장 25쪽과 28쪽에 기재되어 있어 당시 10쪽과 2쪽 남짓 읽은 진정인들의 경우 영장 회수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담당 경찰관은 영장에 진정인들 외 여러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영장집행 절차의 지연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구두 설명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장제시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정인들에게 압수영장 일부만을 보여주고 회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재판 중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은 인격권 침해

위원회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12월 10일에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주의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7년 2월과 5월 두 차례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5월 공판기일 판사가 설명한 내용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세 번째 탄원서 제출 시에는 증거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을 뿐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판사는 2017년 6월 공판기일 법정 방청석에 있던 진정인을 호명해 일으킨 후 “주제넘는 짓을 하였다” 또는 “주제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반환받아 가라고 하였는바,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방청객 중 일부는 진정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와 무시를 당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주제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진정인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군

### ■ 여군 편의시설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대대장 및 주임원사가 부대 내 1명이 근무하는 여군에 대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관련 고충을 제기한 여군에 대하여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1월 24일 국방부장관 등에게 여군의 야외훈련 시 생리현상 해결, 숙영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군 양성평등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 여군이 부대생활 중 여자화장실이 구비되지 않고, 고장을 수리해주지 않고, 화장실 갈 때마다 남군들에게 여자화장실 키를 받아가야만 하여 급한 경우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부대 주임원사가 피해 여군을 고의적으로 회식 등에서 배제했으며, 유격장에 마련된 여자화장실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피해 여군을 1.6km 떨어진 타 부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고충처리를 제기하자 피진정인들이 징계를 하겠다며 협박과 보복을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 ■ 상급자의 모욕적인 발언

위원회는 9월 8일 육군 제〇〇사단장에게, 피진정인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일상적인 반말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할 것과 같은 사단 〇〇연대장에게, 소속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들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격·명예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평상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군무원들에게도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서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고 사과하고도, 이후 개선되는 것이 없이 동일 행동을 반복하였다. 통상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상급자의 발언은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하급자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신분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관행적으로 비속어와 모욕적 언사를 계속 사용하였는바, 위원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 사회복지무원들에 대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위원회는 사회복지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9월 18일 〇〇가정법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과체중임을

이유로 수시로 공연히 “야, 살 빼” “저렇게 뚱뚱한 놈한테 누가 일 맡기냐!”라고 말한 행위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공상 처리를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오토바이 운행이 진정인에게 미칠 불이익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출·퇴근 시 오토바이 운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개인이 이동 시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할지는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선택 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이를 강제하여 실제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므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어떤 발언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용모 등 신체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표현이 직설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 진정인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보아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군 영창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도헌병의 인격권 침해

위원회는 교도헌병들이 군 영창 미결수용자에 대해 폭언, 모욕, 성적 수치심을 주고, 진정 제기를 방해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1월 9일 제○○여단장에게 미결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부대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제○○여단 헌병대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도헌병들로부터 폭언과 모욕,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을 듣고, 진정 제기를 방해받은 행위 등에 대하여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부대 측은 수용자와 근무자들은 관행적으로 심한 농담과

장난을 해왔고, 문제가 된 병사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근무자들은 직무교육, 인권교육, 사고예방교육, 군법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문제된 병사가 징계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진정부대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육 내용은 주로 사고예방에 대한 것으로, 진정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수용자 인권’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부대가 소속 교도헌병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입창 사실 고지

위원회는 11월 9일 ○○사단장에게 징계입창자의 의사에 반한 입창 사실을 고지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입창 처분을 받아 영창처분집행통지서에 법정대리인 등에게 영창처분 집행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부모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통보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군인사법」 제59조의2 제6항 단서조항 및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 혐의 사실 및 징계 처분의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통제하고 결정할 사항임에도, 진정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의 원인이 된 징계 혐의 사실과 처분의 내용을 진정인들의 가족에게 고지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군 현실상 책임 있는 상관의 입장에서 소속 부대원을 전출시키는 상황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적극적인 부대 지휘 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들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직무교육을 통해 그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구금시설

### ■ 노동위원회 출석 시 보호장비 착용 외부 노출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 2016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심판에 출석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건물로 이동하는 과정과 심판 과정에 포승과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는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기관이어서, 호송교도관인 피진정인들이 호송 장소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호송 과정에서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마스크나 수갑가리개 등 보호용품이 호송차량에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진정인의 얼굴이나 수갑을 찬 상태를 가려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호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호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수갑가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호송교도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 구치소의 부당한 서신 검열 및 징벌

위원회는 8월 29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가 진정을 많이 했다거나,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거나 징벌을 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인에 대한 징벌 의결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수용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본인이 목격한 사건에 대하여 언론사에 서신을 발송하려 하자, 구치소에서 이를 검열하고, 서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신 발송을 불허하고, 징벌 처분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수용자의 서신 검열은 검열 사유에 해당할만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하며, 검열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에 따라 서신 자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언론사가 수신처라는 이유만으로 서신 검열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진정인이 발송하려 했던 서신 내용도 피진정기관의 업무상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명백한 거짓 사실이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신의 발송을 불허하고 진정인을 징벌한 피진정인의 처분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위원회는 10월 24일 ○○구치소장에게, 미결·기결 수용자들이 합동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결수용자의 종교 행사 참여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법무부장관에게는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교행사 실시 방법과 수용자 참여 기준 등을 만들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미결수용자인데, 피진정인은 기결수용자들에게는 매주 1회 예배 참석을 허용하면서 미결수용자에게는 월 1회만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미결수용자는 구금으로 인해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위축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 쉽고, 자칫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의 영향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적정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상태에 있어(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이러한 상태의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리 수용되어 서로 다른 처우가 제공되어야 하나 교도소 과밀화 등으로 인해 같은 구금시설에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고, 종교행사 참석은 교정교화의 효과 외에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안, 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갑작스러운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위축되기 십상인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는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어 종교행사 참석이 미결수용자보다 기결수용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전국 구치소의 종교행사 실시는 비록 각 시설의 규모나 종교를 가진 수용자 숫자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정시설별로 원칙과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공범 등이 있는 경우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행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미결·기결 수용자들이 합동으로 또는 유힬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종교행사 참석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구금시설 과밀수용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1월 5일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행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검찰 총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권고하였다.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출범 이후 10여 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으나, 2013년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17년 말 기준 115.4%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의 수용률은 124.3%로, 전체 평균보다 8.9%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여성수용자의 경우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산구치소 여성수용률은 185.6%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수용자 간 다툼과 입실 거부, 징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번 직권조사 결과, 과밀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용자는 26% 증가하여, 2017년에는 미결구금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반해 수용정원은 4%만 증가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무부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시민사회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 수용자 접견 시마다 과도한 교도관의 청취·기록

위원회는 11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이 수용자 접견 시 교도관 청취·기록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용자의 접견교통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범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 있는 수용자라는 이유로 약 2년간 183회 접견 시마다 교도관이 청취, 기록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일부 언론이 진정인을 취재하여 보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인멸이나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협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언론 취재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접견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수용자에 대하여 접견제한처분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접견 시 접견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도관 회의를 통하여 다음 교도관 회의까지 진정인을 '접견 시 교도관 청취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반복한 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진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접견교통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다수인보호시설

### ■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진학지도 결정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시설 원장에게 표현하였는데, 원장은 ○○고등학교는 거리가 멀어 원생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원장은 ○○고등학교가 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통학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학원 수강 지원 등을 통해서 내신 성적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례가 없기에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원장이 시설 원생의 진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도를 하지 못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월 28일 원장에게,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의 희망의사를 존중하여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 ■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장애인 체벌

위원회는 5월 4일 사회복지법인 ○○○○ 이사장에게,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재활교사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것과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생활재활교사는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파리채로 2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훈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피해 부위 사진과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2회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워 생활재활교사의 체벌행위는 합리적 제재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거주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5월 9일 해당 시설 운영법인에 시설장 해임 등 증징계처분과 시설 아동과 직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실행을 권고하였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시설 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보내거나, 보내려고 시도한 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평소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시설 측과 갈등을 빚은 한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자, 시설에서는 이 아동의 평소 행동과 쌍꺼풀 수술 등을 사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병원 측 거절로 무산되었다. 또한 시설 생활규정에 ‘일시 귀가조치’를 징계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학교를 잘 가지 않거나 시설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동의 없이 원가정으로 일정 기간 돌려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가 통제나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았으며,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의 동의 없이 징계성 일시 귀가조치를 결정한 것,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유엔 「아동 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고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아동양육시설 직원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5조의 책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2일 ○○시설 원장에게,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설에 대한 아동인권 특별지도 점검 및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 교육,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 정신병원 환자의 접견권 침해 등

위원회는 6월 11일 ○○○병원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병원 측은 3차에 걸쳐 피해자의 전화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2차 제한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 아닌 벌칙으로, 3차 제한에서는 제한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의학적 근거 없이 보호자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입원기간 중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 면회를 제한하여 피해자는 동생 등과 면회를 하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병원 측의 위와 같은 피해자 행동 및 면회 제한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상 ‘치료적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정신병원의 부당한 노동 등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11월 12일 ○○병원장에게, 특별한 사정 없이 환자들로 하여금 병동 내 배식과 청소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안전, 위생 등이 확보된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곳에서 전문요원 등의 배치 및 관리 없이 작업을 시키고, 작업 참여 환자의 개인별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되지도 않으며 작업 결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 관련 법규상 절차 또한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나 같은 법 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금전의 부적절한 사용

위원회는 11월 12일 ○○시설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금전 관리와 자기결정권에 대해 교육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용 냉장고 구입비 전액을 환급하며, 향후 이용자의 금전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 중 일부는 전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냉장고를 구매했는지 불확실하였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금전으로 기관 내 시설인 냉장고를 구매하도록 한 것은 시설 기능 및 장비 보강에 이용자의 금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된 행위로 판단되며 구입비용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시간외 근무 관리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와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은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서 시간



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문 인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들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초과근무 수당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시간 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지문 정보와 같은 생체 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다른 대체수단, 예컨대 전자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한 컴퓨터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 없이 지문인식기와 같은 지문 정보 인식기기만을 통해서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지문 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 ■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과거병력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치료가 끝난 과거 병력을 건강진단결과서에 ‘과거치료자’라고 기재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담당 의사의 ‘과거치료자’라는 판정은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독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치료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현성 감염자’와 ‘과거 치료자’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병력 관리의 목적은 굳이 ‘건강진단결과서’에 ‘과거치료자’라고 기재하지 않더라도, 과거 병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건소의 의료기록 등으로 별도로 관리함으로써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의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시 ‘과거치료자’ 항목과 관련하여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발급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 공무원 징계 사실에 대한 과도한 공유

위원회는 8월 29일 ○○청장에게, 향후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실에 관한 개인 정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공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공문을 통해 진정인의 소속, 지위, 성명과 징계사항(3개월 감봉)을 기관 전 부서 및 지청에 공람 조치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공직자의 의무 위반 사실과 징계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공유한 것은 위법하며, 단순히 “소속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의식 고취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과 실명을 명시한 채 사례를 전파한 것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전파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고, 공익적인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수하물 검사과정에서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진정인 1(남성)은 2016년 12월 중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다른 세관 여직원 등 타인이 보는 앞에서 가방 속에서 속옷, 콘돔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여 수치심을 주었고, 진정인 2(여성)는 2017년 12월 김포공항 세관 직원에게 소지품 검사를 당했는데 당시 다른 남자 여행객 2명과 여자 여행객 1명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용품들인 속옷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 여러 물건을 검사했고, 칸막이 등으로 사생활 보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김포공항 세관이 검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검사대 뒤편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로서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검사 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검사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검사대와 검사대기선의 거리를 충분히 두는 방식 등으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 이와 같이 쉽게 실현 가능한 인권친화적 방안이 있음에도 단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11월 14일 ○○청장에게 여행자 개인휴대품 검사 시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와 대기선 사이의 거리 조정 등의 대책을 만들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 ■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폭언 등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가 초등학생 단원들에게 “장애인보다 못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발언은 사회적 약자에 빗대어 단원들의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연습에 집중하거나 실력을 제고하기 위해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를 인식하는 관점을 형성해나가는 성장과정의 아동들에게 왜곡된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등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4월 3일 ○○구청장에게,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주의 조치하고,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 ■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욕설에 인한 인격권 침해

○○공사에서는 △△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민휴게실로 변경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민대표들과 회의를 시작해서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인 ○○공사 △△센터장 등은 주민휴게실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회의를 마치고 주민휴게실 설치 현장인 어린이놀이터를 지나는 과정에서, 주민휴게실 설치에 반대 의견을 가진 진정인이 피진정인 일행을 따라가며 동영상 촬영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욕설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욕설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공사 △△센터장이라는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을 상대로 욕설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월 26일 ○○공사 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바. 각급 학교

### ■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을 같은 반 학생 20여 명이 있는 교실에서 면담하여, 피해자가 위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학생 상담 또는 조사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월 31일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교사가 학교 폭력 사건 대응 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 기숙사 강제퇴관 공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대학교 측에서 기숙사생을 강제퇴관 조치하면서 그 사실을 공고문으로 게재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이\*\* 생활관생”과 같이 성명 일부를 익명 처리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은 여러 학생이 함께 생활하여 교우관계를 통해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다수의 학생이 퇴관 조치된 학생을 식별할 수 있고, 이 공고로 인하여 그 학생이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교 측은 특정인의 강제퇴관을 공고하지 않아도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관 사례를 기숙사생에게 공개하거나, 오리엔테이션에서 관련 규정을 안내하면서 일정 기간에 발생한 강제퇴관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규정 위반 사례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학교 측이 기숙사생의 강제퇴관 사실을 공고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향후 기숙사생에 대한 강제퇴관 조치 시 해당 강제퇴관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3월 28일 권고하였다.

####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며 위클래스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해당 교사는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군인으로 상당한 직급에 있다고 하며 사과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개별 상담실에 들어가 있고 8명의 가해학생이 번갈아 상담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게 하여,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피해학생 아버지의 권위를 근거로 가해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유도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가 아닌 사회적 권위에 굴복한 사과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상담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당사자들이 이러한 방식에 저항하며 사과를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상호 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가해학생들이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격리된 공간에서 상담교사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1:1 대화하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4월 3일 해당 학교장에게, 위클래스 상담교사에 대해서 학교폭력 상담 방법과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 아동극 강제 동원에 의한 인권침해

○○대학교에서는 모든 보육학과 학생들에게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매일 4시간 정도 아동극 공연을 준비하게 하고, 공연에 임박한 시기에는 주말 및 휴일에도 공연 준비를 강요한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대학교 측이 아동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아동극 연습 준비에 필요한 시간에 상당하는 학점을 배정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사실상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극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아동극 공연 준비 강요로 인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학과 수업이나 교양과목의 수강과 과제 수행, 중간고사 시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초래되었으므로, 아동극 공연 준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학생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5월 29일 ○○대학교 총장에게, 보육학과 학생들이 아동극 참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 기숙사 무단외출에 대한 과도한 제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김밥을 사기 위해서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가 적발되어 4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가 결정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무단외출에 대해 선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숙사 퇴사 등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정도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 선도 조치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0월 22일, 해당 학교장에게 학생 선도 조치를 함에 있어 징계 대상 행위가 징계 학생의 불이익과 비례하도록 기숙사 운영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가. 영역별 접수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18년 12월까지 접수된 전체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2만 8,748건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이 1만1,307건(39.3%)으로 가장 많고, 채용·해고·임금 등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8,334건(29.0%),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차별이 1,676건(5.8%)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에는 총 2,185건의 차별행위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접수 건수가 2017년에 비하여 다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017년 대통령의 위원회 위상 강화 입장 표명 후 진정접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하였다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영역별로 보면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598건(27.4%),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이 1,008건(46.1%), 교육시설 등에서의 차별이 92건(4.2%) 등이었다.

고용 차별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모집·채용에 관한 것이 185건(30.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또는 임금 외 금품 지급에 관한 것이 112건(18.7%), 교육·배치·승진에 관한 것이 103건(17.2%), 정년·퇴직·해고에 관한 것이 62건(10.4%) 등이었다. 재화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 중에서는 용역에 관한 것이 480건(47.6%), 재화에 관한 것이 371건(36.8%), 교통수단이나 상업시설의 이용에 관한 것이 143건(14.2%)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교육시설에 관한 차별이 80건(87.0%), 직업훈련기관에 관한 차별이 12건(13.0%)이었다.



[표 2-2-5] 최근 5년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고용에서의 차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소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지급	임금 외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소계	응역	재화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소계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누계	28,748	8,334	1,367	1,740	466	148	318	1,130	315	6	242	247	778	1,577	11,307	4,360	4,764	1,051	816	283	33	1,676	1,578	98	7,431
2018	2,185	598	75	110	49	23	31	88	24	-	6	10	46	136	1,008	480	371	66	77	13	1	92	80	12	487
2017	3,152	787	76	181	38	21	39	136	34	-	3	36	71	152	1,228	593	282	211	110	28	4	129	122	7	1,008
2016	2,432	490	65	93	26	15	13	92	26	-	6	14	44	96	863	326	350	88	55	40	4	256	249	7	823
2015	2,188	594	58	123	34	13	16	141	27	-	9	19	50	104	951	299	489	104	41	16	2	93	90	3	550
2014	2,197	575	65	123	47	14	27	72	41	1	14	15	70	86	890	401	287	101	81	18	2	109	106	3	62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나. 사유별 접수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18년 12월까지 접수된 총 2만8,748건의 차별행위 진정 사건들을 사유별로 분류하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만3,524건(47.0%)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희롱 2,737건(9.5%),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2,317건(8.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1,719건(6.0%), 성별 또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1,276건(4.4%) 등의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장애 1,103건(50.5%), 성희롱 251건(11.5%), 사회적 신분 181건(8.3%), 나이 106건(4.9%), 성별 98건(4.5%) 순으로 집계되어 이들 사유가 여전히 우리 사회 내 차별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된 19개 차별사유로 분류되지 않는 진정이 207건(9.5%)에 달하는 등 차별 진정사건의 제기 사유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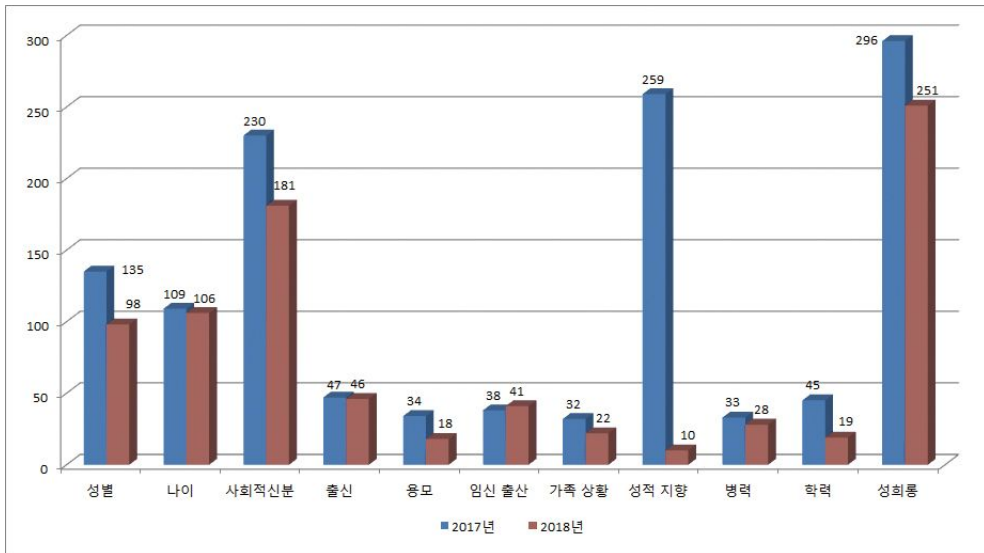
[표 2-2-6]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 색	사상	전과	성적 지향	병력	학력	성희롱	기타
누계	28,748	972	209	13,524	1,719	2,317	171	429	18	356	141	304	223	118	17	57	227	352	455	649	2,737	3,753
2018	2,185	98	22	1,103	106	181	16	29	1	18	10	41	22	6	1	4	12	10	28	19	251	207
2017	3,152	135	25	1,428	109	230	20	25	2	34	19	38	32	5	-	9	16	259	33	45	296	392
2016	2,432	96	15	1,511	101	89	8	28	-	20	16	8	19	8	1	8	10	5	32	23	205	229
2015	2,188	65	6	1,147	98	117	8	23	-	23	10	21	12	10	4	2	10	11	17	23	203	378
2014	2,197	64	15	1,139	103	158	19	48	3	21	6	14	15	18	2	-	13	11	28	36	235	249

[그래프 2-2-3] 전년 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장애, 기타 제외)

(단위: 건)



※ 접수 건수 30건 미만 차별 사유 제외

※ 출신은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의 합계이다.

## 다.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18년 12월까지 종결 처리된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총 2만7,442건으로 총 접수 건수 2만8,748건 대비 95.5%가 종결되었다.

종결 처리된 사건 중 시정권고나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등 실질적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7,655건(27.9%)이다. 특히 시정 및 구제조치, 가해자 징계 등을 권고한 사건이 1,732(6.3%)건이고, 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사건이 737건(2.7%)이었으며,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로 피진정인이 문제를 자체 시정하는 등 진정 내용이 해결된 조사중해결 사건은 5,112(18.6%)건에 이른다.

또한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6건이고, 피진정인 등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거나 그러하다고 볼만한 충분한 의심이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건은 18건이었다.

진정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진정 내용이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은 5,801건(21.1%)이었고, 진정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거나 다른 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종결된 경우 혹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각하된 사건은 1만3,689건(49.9%)이었다.

2018년의 경우 권고 건수는 338건으로 2017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육군 내 성소수자 색출 및 부당수사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집단 진정사건들이 권고 결정으로 일괄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표 2-2-7] 최근 5년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누계	28,748	27,442	7,655	18	1,732	56	737	5,112	13,689	137	5,801	160
2018	2,185	2,437	944	3	338	7	17	579	1,018	2	473	-
2017	3,152	2,375	725	1	147	15	29	533	1,100	6	542	2
2016	2,432	2,410	559	2	70	9	36	442	1,416	12	423	-
2015	2,188	2,016	428	-	40	1	36	351	1,134	7	438	9
2014	2,197	2,223	483	2	64	1	95	321	1,115	7	591	27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함이다.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중해결 건수 제외

한편, 2018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처리 건수가 장애 1,316건(54.0%), 성희롱 220건(9.0%), 성적 지향 251건(10.3%), 기타 차별 사유 154건(6.3%), 사회적 신분 124건(5.1%) 순으로 많았다. 또한 권리구제 건수는 장애 544건, 성적 지향 247건, 성희롱 38건, 나이 23건, 사회적 신분 15건, 기타 차별 사유 13건 순으로 많았다.

[표 2-2-8] 2018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 종결			
합계	2,185	2,437	944	3	338	7	17	579	1,018	2	473
성별	98	64	11	-	5	1	-	5	29	-	24
임신·출산	41	27	8	-	5	-	1	2	16	-	3
혼인 여부	10	10	3	-	2	-	-	1	4	-	3
용모·신체조건	18	26	4	-	2	-	1	1	14	-	8
가족 상황	22	26	7	-	-	-	3	4	11	-	8
성희롱	251	220	38	1	16	4	2	15	151	2	29
장애	1,103	1,316	544	2	26	-	9	507	535	-	237
나이	106	83	23	-	8	-	-	15	26	-	34
사회적 신분	181	124	15	-	7	-	1	7	66	-	43
출신국가	29	17	5	-	-	1	-	4	7	-	5
출신민족	1	2	0	-	-	-	-	-	1	-	1
인종	6	3	1	-	-	-	-	1	1	-	1
피부색	1	0	0	-	-	-	-	-	-	-	-
종교	22	24	8	-	6	-	-	2	10	-	6
출신지역	16	19	1	-	-	-	-	1	16	-	2
사상, 정치적 의견	4	4	-	-	-	-	-	-	1	-	3
전과	12	13	2	-	1	-	-	1	6	-	5
성적 지향	10	251	247	-	247	-	-	-	4	-	-
학벌·학력	19	22	6	-	4	-	-	2	9	-	7
병력	28	32	8	-	6	-	-	2	11	-	13
기타	207	154	13	-	3	1	-	9	100	-	41

※ 조사종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 각하·기각 : 각하·기각 종결 처리 건수 중 조사종결 건수 제외

## 2. 직권·방문조사

### 가. 직권조사

2018년 미투 운동을 뜨겁게 달구었던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그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아 내부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성희롱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성평등정책관 신설 등 성평등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기초조사를 통해 정신병원에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을 탑승시키지 않은 채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데려오는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병원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개선 및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해당 병원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결과, 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

또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노동을 부과하고, 계속 입원심사 절차 회피를 목적으로 자의 및 동의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를 접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위 사례가 사실로 밝혀져 해당 병원에 노동 부과 중단 및 작업요법 개선, 부당 입원 형태 시정 등을 권고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권고하였다. 이외 특수학교 장애인학생 폭행 관련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나. 방문조사

2018년 5월 30일부터 비자의 입원에 대한 입원적합성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및 정책적 개선을 위하여 입원적합성심사 시범사업 결과와 위원회에 제기된 입원적합성심사 진정사건 분석 등 관련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5개 권역 국립정신의료기관과 6개 지역 민간 정신의료기관(200병상 이상 6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해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입소에서 퇴소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지적·발달장애인 거주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시설환경, 시설 내 인권침해 신고체계 및 권리구제 진행 상황, 인권지킴이단 운영실태, 의료체계, 재산관리 등 점검을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 ○○협동조합 대의원 후보 등록 시 여성차별

위원회는 ○○협동조합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의원 선출 시 여성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1월 18일 권고하였다.

○○협동조합장은 여성대의원을 7인 이상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선거구는 여성대의원 1명이 할당되어 있으므로 여성인 진정인은 여성대원으로 입후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 할당된 여성 비율 이외에는 여성의 참정권 행사를 더는 불가능하게 하는 ○○협동조합의 여성대의원 의무 선출조항은 적극적인

우대조치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남성 정원을 여성 정원보다 월등히 많이 배정한 후, 여성에게 극히 한정된 피선거권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남학생을 앞 번호로 지정하는 출석번호 부여 방식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0번부터 부여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남학생을 앞 번호로 지정하는 출석번호 부여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며, 이러한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하였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뒤의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7월 3일 권고하였다.

#### ■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 배제

위원회는 피진정인 ○○시장에게 △△한량춤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않고 기능과 예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을 12월 28일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남성 춤인 △△한량춤을 여성이 전승하면 원형의 변형·훼손 및 문화재적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무형문화재법」상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 원칙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와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하는 ‘전형’ 유지로서, △△한량춤의 ‘원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위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한량춤의 ‘전형’ 유지와 전승이 가능한지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수 장학생 선정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용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 ■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

위원회는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정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 신체조건 기준을 차별로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이를 개정할 것을 4월 13일에 권고하였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를 제외한 색신이상인 아님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범인 검거를 위한 총기 사용 등에 색 구분 능력이 필수적이고, 경찰의 순환근무체제에 따라 범인 검거 외 분야에 한정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색신이상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자체 실시하여 색신이상자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임상 실험에서 중도 이상 색신이상자라도 일괄적인 색신이상 상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색신이상인 자와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미 기존 결정에서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색신이상자들의 경찰공무원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결정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만한 증거자료나 상황 변화는 없다고 보았다.

## 다. 성희롱

###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희롱

위원회는 9월 27일 피진정인 김○○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진정인에 대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어머니가 편의점 사업주인 피진정인은 비록 임금을 받지 않았으나 주말에 편의점 물품을 발주하거나 창고 물건의 매장 반입 등 사업주인 어머니를 대리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진정인의 고용 지위나 근무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용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유사 성행위 장면이 찍힌 CCTV를 보여준 행위로 당시 21세의 진정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았다.

### ■ 지역방송사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

지역 방송사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상사의 성희롱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의 직장상사인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평소 피진정인1의 언행을 성희롱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진정인에 대한 수습 평가 시 부정적인 평가 의견을 냈다. 피진정인2는 본채용이 거부된 진정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자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이후 진정인이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 ○○○ △△방송본부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인 운영위원회와 위원들은 피진정인1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조직의 명예·화합을 내세우며 진정인을 비난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진정인이 복직 후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을 △△방송본부 외 ○○○ 소속의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11월 21일 ○○○사장에게, 진정인이 복직 후 다시 적대적 근무환경에 처하여 원하지 않는 경력 단절에 이르지 않도록 진정인을 △△방송본부 외 근무지로 전보할 것, 본사 및 전국 지역방송본부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직급별·성별로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라. 장애에 따른 차별

### ■ 특수학급·교사 없다며 입학 포기 강요한 학교장 검찰 고발

위원회는 언어소통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입학에 포기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3월 13일 해당 학교장을 고발 조치하였다.

학교 측은 특수반과 특수교사가 없으며,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외톨이가 될 수 있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미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없음을 알고도 입학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나, 학교 측은 학부모 면담을 통하여, 교육적 조치나 환경보다는 아동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상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학교장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혹은 그에 준하는 입학 포기 종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 ■ 지방선거 토론 방송 등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권고

위원회는 5월 4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 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어서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 없고 그 조차도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지상파 3사가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에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권고

위원회는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할 것과 함께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월·화·금·토요일 4일간 24시간 지원하고, 수·목·일요일 3일간은 퇴근해, 피해자는 야간에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달 총 720시간이 소요되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 지원의 활동지원서비스 총 시간이 59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고열과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여 출근한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 인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6도였고,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 및 항생제를 처방하였으며, 더 큰 병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폭염 속 혼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하였다.

### ■ 장애인 사법 절차 실질적 참여 증진을 위한 권고

위원회는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9월 19일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요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어통역 소요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며,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는 편의 제공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마. 나이에 따른 차별

### ■ 나이를 이유로 한 용역사업 수행인력 참여 제한

위원회는 1월 18일 ○○광역시 ○구청장에게 용역사업 수행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청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를 하면서 제안요청서에 유지보수 참여인력의 자격을 ‘50세 미만 남성’으로 제한하였는데, 관내 넓은 구역 및 장비를 대상으로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체력적 부분을 감안하여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상 체력요건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 기준이 왜 50세 미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나이가 직업 수행에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자격요건에서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나이를 이유로 한 볼링 선발전 참가자격 제한

위원회는 3월 5일 ○○협회에게 주관하는 프로선발전 응시 요건에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협회는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선발전 참가 자격에 ‘남성 만 45세 이하, 여성 만 4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었는데, 이에 대해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경기력이 떨어지면 중도 포기 등 경기 진행에 차질이 있고, 고령자일수록 대회 참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나이와 체력은 일률적인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프로볼링 선수의 나이와 경기력 간에 상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며, 특정 연령 이상의 집단 모두에 대하여 부정적 특성이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연령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점 등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이를 이유로 부서장 보직해임

위원회는 12월 28일 ○○보험 대표이사에게 향후 부서장 보직 등 인사 관리에 나이를 기준으로 삼거나 나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 회사에서 부서장으로 보임하던 중 갑자기 감사를 받은 후 보직해임되었는데, 이것이 50세 전후의 부서장 퇴출을 목적으로 한 나이차별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 회사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직해임된 부서장의 80% 이상이 48세에서 52세까지에 집중되어 있고, 부서장 보직자의 나이가 46세부터 49세까지의 범위에서 70% 가까이를 차지하다가 50세 이상에서는 10~20%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점, 최근 6년간 부서장 보직해임자의 최고 연령이 53세였던 점 등에서 부서장 보직해임에 당사자의 나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반적 경향성 또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제한

위원회는 6월 14일 ○○도지사에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도는 2017년 개최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서 선수 자격을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청원경찰,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으로만 한정하여 공무직원을 배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체육대회가 도와 시·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업 기반을 조성할 필요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중심의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도와 그 소속 시·군에서 공무원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 ‘협업’이나 ‘유대’의 필요성은 공직을 수행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여야 할 가치이지 공무원만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공무원만을 선수 참가 자격에서 배제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대학 산업체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및 임금 차별

위원회는 9월 27일 ○○○○대학교 총장에게 산업체전담교원의 재임용 평가와 절차를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할 것과 연봉 책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교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산업체전담교원인 피해자들은 다른 전임교원과 동일 직무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임용·재임용, 평가, 보수 등에서 달리 대우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산업체전담교원과 일반교원 간에 채용 기준, 보수산정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피해자들은 채용 당시 이미 산업체전담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산업체전담교원을 일반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및 산업체전담교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당사자의 충분한 사전 인지와 동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일반교원과 동일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산업체전담교원을 채용하고 동일한 직무를 부여함에도 그 신분만을 이유로 재임용 평가 절차를 달리하거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차별

위원회는 11월 1일 민간기업인 ○○○○ 대표이사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피진정 회사 소속 근로자 간 급여 및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는 데 노력할 것과, 근로자의 개인 차량 출입 및 비품 제공 시 달리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 회사에는 전체 근로자의 50%가 넘는 인원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피진정 회사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복리후생 및 사업장 내 차량 출입, 비품 등에 있어 폭넓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여 진정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 회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처우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자가 차량 출입 제한은 사업장 내 주차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 회사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작업 방식이나 처우 결정 등에 있어 협력업체들과의 연락·협의를 통해 일정한 관여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보았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피진정 회사 소속 근로자의 60% 수준이고 그에 더하여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처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한 사업장 내 개인 차량 출입 제한이나 탈의실 내 도난사고에 취약할 정도의 노후한 사물함 비치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대학교 특별편입생에 대한 차별 처우

위원회는 12월 12일 ○○대학교 총장에게 출신에 따른 일률적 성적 분리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원화된 학사과정을 위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들은 교육부로부터 폐교 조치된 대학의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들로서 피진정 대학에 특별편입학하였다. 피진정인은 기존 재학생과 특별편입생 간 성적 석차를 분리하여 산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하여, 성적을 통합 산출할 경우 당초

입학인원 간에 경쟁할 것으로 알고 입학한 기존 재학생들의 믿음에 반하고, 특별 편입생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기존 재학생들의 당혹감 등 현실적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특정 집단의 보호를 위해 다른 집단이 차별적 처우를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편입생들과 기존 재학생 간에 수강했던 수업과정 일부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시까지 서로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석차 분리 산출은 편입생들을 이질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매우 높아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사. 종교에 따른 차별

### ■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 차별

위원회는 11월 12일 ○○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그 취지에 맞게 학교 직원인사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 대학은 2017년 신입 교직원 채용 시 교인이라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교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에 비추어 교인이 아닌 사람이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학의 직원 채용은 종교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교직원들의 업무가 종교적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교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종교교육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헌법 및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종립학교로서의 건학이념을 지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것이 모든 직원 채용에 있어 원천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군종법사 선발 및 운영에서의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종분야 장교의 병적편입 종교를 선정함에 있어 불교의 군종법사 선발 시 해당 선발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한 채 관행적으로 ○○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2월 20일 국방부장관에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 2001년 군종법사로 임관하였고, 당시 결혼이 허용되어 약혼한 채 외국 유학을 떠났다. 이 기간 중 ○○종은 결혼금지로 종헌을 개정하였고, 피해자는 귀국하여 이를 알고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자녀 임신으로 혼인신고 후 2015년 ○○종에서 제적되었다. 이후 진정인은 ○○종으로 전종하여 성직을 유지하였으나,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2017년 7월 전역처분되었다.

진정인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의 부당함과 군종법사를 ○○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병역법」상 군종장교 병적편입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와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족하고 특정 종단에까지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방부는 군종법사의 경우 ○○종 종단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종은 2002년도 ○○대학교를, ○○종은 1996년부터 ○○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군종법사를 ○○종으로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단 간의 합의는 이미 진입한 종단의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 「병역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 취소 및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는지 및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종단 간 합의의 선행

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이 배제된 채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아. 병력에 따른 차별

### ■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한 학교 퇴소 조치

위원회는 6월 14일 해군참모총장에게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신체검사 시 질병의 치료나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군장교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수술 병력이나 질병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하지 않도록 「해군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2013년 9월 무릎십자인대 수술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소 조치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과거 수술 병력이 있는 경우 의학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개인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이 사건과 같이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수술을 받은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수술 기법의 발달로 선수생활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과 군대 내 다양한 병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 기능의 저하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군건강관리규정」상의 신체검사 기준만을 적용하여 진정인을 불합격 판정하고 퇴교 조치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대학병원의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위원회는 9월 27일 ○○대학병원장에게 감염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되, 식판 색깔 구분이나 의료기기 개별 지급, 혈액주의와 같은 특별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HIV 감염인을 구분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병원은 HIV 확진 후 진료를 받다가 일반 4인실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색상이 다른 식판에 음식을 제공하고 의료기기를 구분하여 개별 지급하고, 링거와 침상 등에 혈액주의 표기를 하는 등 다른 환자들과 구별되게 하였다.

HIV 감염인에게 격리식과 의료기기 구분 사용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합병증을 동반할 경우에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구분 사용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병원은 실제 감염 위험에 따라서가 아니라 HIV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HIV 감염인에게 격리식과 의료기기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 ■ 민간회사의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위원회는 10월 22일 ○○○○ 대표이사에게 직원 채용 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채용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 회사는 주말 긴급출동 사고접수 콜센터의 파트타임 업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보류하고 신체검사 재검진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B형 간염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2군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질환이고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경우 B형 간염이 활동성 상태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다른 직원들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채용을 보류하고 추가 검진을 요구한 피진정 회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자.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 ■ 임신·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위원회는 임신·출산휴가 등 임신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11월 21일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인 피해자가 임신,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 중에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해당 학교장은 피해자의 근무활동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계약을 만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출산 전후 상당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은 업무공백을 극복하기 어려워 근무활동평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임신 중에는 유산의 위험 등으로부터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야간근로를 자제할 수밖에 없어 임신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임신한 근로자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임신,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차.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 육군의 균형법에 의한 성적 소수자 색출 및 부당수사 등

위원회는 4월 13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향후 「균형법」상 추행죄 수사와 관련하여,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묻는 등 피의자에게 인격적 굴욕감을 주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육군참모총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육군 내 성적 소수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성적 소수자 색출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육군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동성애자 색출을 추진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수사를 명목으로 동성에 성향의 발생 시기, 성적 호감의 유형, 선호 체위 등 지극히 사적인 질문까지 한 것은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인격적 모욕감 등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위원회는 11월 12일 ○○대학교 총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 개최 시 학교 내 교육시설의 이용을 배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교 내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대학교는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대학교 강의실을 대관 신청한 건에 대해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대학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교육시설의 이용을 배제하고, 나아가 행사 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차별취급의 균형성을 벗어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 카. 학력에 따른 차별

### ■ 학점인정제 학사학위자에 대한 학력차별

위원회는 1월 18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복수학위에 대한 경력 환산에서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에 따른 수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4년제 대학 중퇴 및 2년제 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대학에 편입하여 복수 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원 호봉획정 시 복수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 학위 외 다른 학위의 수학연수도 80%의 경력을 인정해주지만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취득한 것과 동등한 학위로 볼 수 없어 경력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학점인정법」에서 규정하는 학점은행제의 취지와 모순되는 것으로, 단지 학교에서의 학습과정이 아니라 이유만으로 경력 환산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고, 학점인정제를 통한 학위 취득의 적절한 수학연수 산출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진정인이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지 그것이 학점인정제의 수학 경력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인권상담조정센터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은 2017년 5월 대통령의 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 후 급증했다가 2018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또한 필요한 사안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 단계에서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진정사건은 9,280건, 상담 3만2,278건, 민원·안내(조사 대상 및 접수 절차, 타 기관 안내 등) 4만5,968건이 접수되어, 2017년보다 민원·안내에서 3,029건(7.1%)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정은 3,049건(24.7%), 상담은 4,092건(11.3%)이 감소하였다.

**[표 2-2-9]**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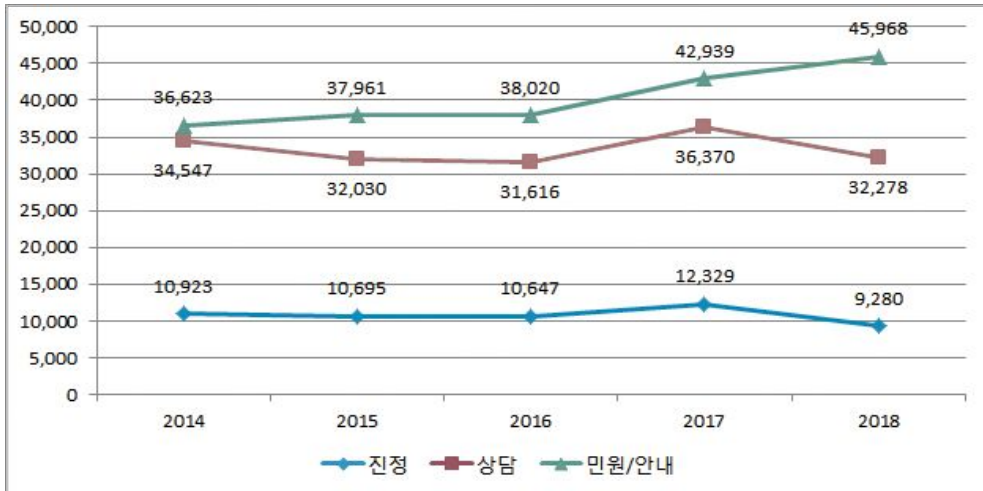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누 계	132,185	368,924	471,489	972,598
2018	9,280	32,278	45,968	87,526
2017	12,329	36,370	42,939	91,638
2016	10,647	31,616	38,020	80,283
2015	10,695	32,030	37,961	80,686
2014	10,923	34,547	36,623	82,09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상담은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를 포함한다.

[그래프 2-2-4]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증감 추이

(단위: 건)



## 1. 인권상담

### 가. 상담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처리한 상담은 약 37만 건에 이르며 2018년에는 3만2,278건으로 2017년 대비 11.3%나 대폭 감소하였다. 2018년 상담의 유형별 분석 결과,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전체의 40.2%, 차별행위 관련 상담이 8.6%,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이 3.6%, 기타 상담 종결 건이 47.6%를 차지하였다. 2017년과 비교하여 전체 상담 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관련 상담이 각각 0.3% 감소하였다.

한편 기타 상담은 재산권이나 사인 간 침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재판 관련 사항 등이다.

[표 2-2-10] 최근 5년간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합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면접진정 상담종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368,924		143,304	38.8	32,026	8.7	166,768	45.2	26,826	7.3
2018		32,278		12,970	40.2	2,772	8.6	15,365	47.6	1,171	3.6
2017		36,370		14,738	40.5	3,235	8.9	17,095	47.0	1,302	3.6
2016		31,616		14,421	45.6	2,530	8.0	13,661	43.2	1,004	3.2
2015		32,030		14,083	44.0	2,660	8.3	14,130	44.1	1,157	3.6
2014		34,547		13,859	40.1	2,974	8.6	16,531	47.9	1,183	3.4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나.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수인보호시설이 6,434건(49.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6년 전체의 56.1%, 2017년 50.3%, 2018년 49.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매년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상담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2017.5.)됨으로써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요건 심사가 강화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다수인보호시설 다음으로 단일 기관으로는 경찰 관련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대통령의 위원회 위상 강화 발언으로 진정/상담 등이 급증했던 2017년의 특별한 상황을 예외로 하면 2016년 2,020건, 2017년 2,283건, 2018년 1,937건으로 상담 요청 건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상담과 진정 건이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의 자정 노력이 일정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각급 학교 1,075건, 지방자치단체 753건, 공직유관단체 552건, 구금시설 30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금시설 상담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시설 특성상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서면이나 면진진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대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전체 상담 건수의 2.8%(2016년 2.2%, 2017년 2.7%)에 불과한 366건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 내 인권침해 빈도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사병 등의 위원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11]**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단위: 건)

구 분	누계	2018	2017	2016	2015	2014
합 계	143,304	12,970	14,738	14,421	14,083	13,859
검 찰	4,746	231	264	179	271	282
경 찰	28,485	1,937	2,283	2,020	2,113	2,236
국 정 원	243	10	10	4	13	6
특 사 경	108	-	-	-	-	-
지방자치단체	8,964	753	836	660	602	673
사법기관	2,015	139	149	131	128	154
입법기관	94	3	12	7	11	5
기타 국가기관	9,276	532	680	582	584	630
구금시설	3,965	303	436	356	335	266
다수인보호시설	65,517	6,434	7,411	8,086	7,863	7,463
군	4,524	366	403	311	350	502
각급 학교	7,459	1,075	1,165	997	821	931
출입국관리기관	471	48	61	88	70	38
보호시설	169	5	-	-	-	-
공직유관단체	2,904	552	545	403	376	378
기 타	4,364	582	483	597	546	295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상담 건수에서 면진진정 상담종결 건수는 제외된 것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된 건수는 포함된 것이다.

### 다. 차별행위 상담

2018년 역시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전체 차별행위 상담의 36.0%(2016년 35.8%, 2017년 32.9%)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희롱 관련 상담이 835건(30.1%), 그 뒤를 이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189건(6.8%),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133건(4.8%) 등의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매년 장애차별 관련 상담 비중이 높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차별 시정 시도가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미투’ 국면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상담 건수가 2017년보다 감소하고, 2016년보다는 96건, 13% 증가한 데 그쳤다.

[표 2-2-12]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 상담 현황

(단위: 건)

구 분	누계	2018	2017	2016	2015	2014
합 계	32,026	2,772	3,235	2,530	2,660	2,974
성 별	992	98	122	76	64	72
종 교	253	27	32	22	24	17
장 애	10,715	998	1,065	906	994	1,072
나 이	1,996	133	144	116	126	155
사회적 신분	2,620	189	231	155	192	213
출신지역	205	15	12	14	10	18
출신국가	740	46	49	44	54	69
출신민족	39	1	1	2	4	3
용모 등 신체조건	466	33	54	37	33	55
혼인 여부	182	10	19	19	15	12
임신·출산	536	53	75	39	54	47
가족 상황	243	17	33	14	25	23
인 종	56	3	6	8	6	5
피부 색	18	1	-	1	2	2

구 분	누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사상·정치적 의견	101	9	4	9	1	6
전 과	415	27	34	20	29	39
성적 지향	74	6	12	12	8	12
병 력	925	57	115	62	61	83
학벌·학력	375	13	32	18	24	24
성 희 롱	8,292	835	962	739	726	819
기 타	2,783	201	233	217	208	228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상담 건수에서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는 제외된 것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된 건수는 포함된 것이다.

## 라. 인권순회상담

위원회는 2018년 총 13회에 걸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이란 현장에서 상담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진정을 접수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6월 16일 한국농아인협회 원주지회가 주최하는 ‘강원도 농아인 대회’ 행사장을 찾아가 지역 농아인 대상 순회상담을 시작으로, 포천 소재 한센인 정착마을, 부산 ‘인권마라톤 대회’ 등 관련 단체 및 외부 기관(인권단체,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등과 긴밀한 협조로 순회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확대·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8년은 제주지역으로 들어온 예멘인 500여 명이 난민신청을 하며 이들의 인권상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와 광주인권사무소는 제주이주민센터와 협력, 현장에 순회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144명의 상담을 받고 의료기관 연계 등 후속 조치를 하였다.

[표 2-2-13] 2018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구분	차수	개최 시기	상담 지역	주요 대상
인권상담조정센터	1차	7. 21.	서울 금천구	청소년
	2차	11. 27.	경기도 포천	한센인
부산인권사무소	1차	10. 13.	경남 창원	장애인
	2차	11. 4.	울산광역시	참가자 등
광주인권사무소	1차	6. 29. ~ 30.	제주시	예멘 난민 신청인
강원인권사무소	1차	6. 16.	강원 원주	강원농아인대회 참가자
	2차	6. 19.	강원 원주	원주여성영화제 참가자
	3차	9. 7.~8.	강원 속초	장애인영화제 참가자
	4차	9. 20.	강원 원주	장애인영화제 참가자
	5차	10. 19.~ 20.	강원 강릉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6차	10. 23.	강원 춘천	장애인영화제 참가자
	7차	11. 4.	강원 원주	인권 마라톤대회 참가자
	8차	11. 10.	강원 춘천	강원 플리마켓 참가자

또한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인권순회상담의 현장성, 적시성을 보완하기 위해 순회상담과는 별도로 119 인권현장 대응팀을 운영하였다.

[표 2-2-14] 2018년 119 인권현장 대응팀 운영 현황

차수	날짜	상담/ 면담 대상	현안 사항
1차	4. 13.	○○ 노조, 금속노조 및 전문가 면담	한국 ○○ 사태
2차	4. 23.	구치소 교도관, 가족 등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
3차	6. 4.	현장 농성 중인 노동조합 관계자	○○○ 노동자 고공농성
4차	8. 18.	현장 모니터링	성폭력-끝장집회
5차	8. 30.	농성 중인 노조 관계자	○○공장 비정규직 노조 농성 현장
6차	9. 6.	지원 중인 인권단체 관계자	이집트 난민신청자 단식농성
7차	9. 17.	현장 농성 중인 조합 관계자	○○공사 노조 위원장 단식농성
8차	9. 28.	단식 농성 중인 노조 지회 조합원 등	○○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청 점거 단식 농성

## 마. 진정함 점검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금·보호시설에 의무로 부과된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진정함 설치 및 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사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 진정 안내문 부착, 진정서 및 필기도구 비치, 진정함 시건장치 관리, 진정함 관련 애로 사항 청취 등으로 진정함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8년 점검 방법은 중앙행정기관(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등)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자체 진정함 실태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기관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매년 자체적으로도 진정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진정함 설치·운용 실태조사 점검 결과(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군영창 등), 중앙행정기관(법무부)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경우 대부분의 수용자가 편지지 및 봉투, 필기구를 소지하여 개인별 우편을 이용하고 있어 진정함 이용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진정함 설치 및 운용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대표적인 교정시설인 서울·인천·수원 구치소를 현장 방문하여 진정함 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현재 교정시설 관련 진정사건의 경우 관할 소재지별로 위원회 본부 및 각 지역 인권사무소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본부 주소만 기재(안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정사건의 경우 교정시설 소재지별로 위원회 본부 및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 업무소관을 안내하도록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 2. 진정 접수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한 진정사건은 총 13만2,185건인데, 이 중 76.5%인 10만1,147건이 인권침해, 21.7%인 2만8,748건이 차별행위, 1.7%에 해당하는 2,290건이 기타 사건이다. 2018년 접수한 진정사건 9,280건 중 인권침해는 7,070건(76.2%), 차별행위는 2,185건(23.5%)이다.

2017년 대비 진정 접수 건은 3,049건(24.7%)이 감소하였는데, 인권침해 진정이 2,074건(22.7%), 차별행위 진정이 967건(30.7%) 감소하였다. 이 중 차별행위 진정사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2017년 차별행위 진정 접수 건수가 2016년 대비 29.6% 급증한 데 따른 반사적인 효과로 분석된다.

[표 2-2-15]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합계	비율	합계	비율	합계	비율
누계		132,185	76.5	28,748	21.7	2,290	1.7
2018		9,280	76.2	2,185	23.5	25	0.3
2017		12,329	74.2	3,152	25.6	33	0.3
2016		10,647	76.7	2,432	22.8	54	0.5
2015		10,695	79.5	2,188	20.5	8	0.1
2014		10,923	79.7	2,197	20.1	18	0.2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3. 면전진정

2001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급·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접수 건수 총 5만6,811건 중 5만6,627건이 종결 처리되었다. 2018년에 종결 처리된 면전진정 2,654건 중 570건(21.5%)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1,171건(44.1%)이 상담종결, 913건(34.4%)이 신청인에 의해 면전진정이 철회되었다. 면전진정 처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종결 건수는 면전진정 접수 건수의 감소에 따라 다소 감소했으며, 상담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문의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관여할 수 없는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2010년 우편 진정 활성화를 모색한 이후 수용자들이 면전진정 대신 우편을 통해 진정하여 면전진정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면전진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구급시설 화상상담 일부 도입 등 면전진정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표 2-2-16] 최근 5년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별 구분	접 수	처 리						
		소 계	진정접수		상담종결		철회	
누 계	56,811	56,627	14,651	25.9	26,826	47.4	15,150	26.8
2018	2,648	2,654	570	21.5	1,171	44.1	913	34.4
2017	2,765	2,859	673	23.5	1,302	45.5	884	30.9
2016	2,619	2,479	495	20.0	1,004	40.5	980	39.5
2015	2,658	2,727	654	24.0	1,157	42.4	916	33.6
2014	2,874	2,836	687	24.2	1,183	41.7	966	34.1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4. 민원

위원회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진정 접수 및 조사 업무 이외에도 각종 민원 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민원 처리 등 건수는 총 2만9,953건으로 민원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원 이용 수단을 살펴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1만5,054건(50.3%)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이 9,900건(33.1%), 우편/FAX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4,785건(16.0%) 순이다. 범정부 통합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포함하면 83.3%의 민원이 인터넷 망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표 2-2-17] 최근 5년간 접수 경로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합 계		우편/FAX		인터넷		대통령 비서실		국 민 신문고		기 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203,784		50,723	24.9	101,822	50.0	700	0.3	49,729	24.4	810	0.4
2018		29,953		4,785	16.0	9,900	33.1	18	0.1	15,054	50.3	196	0.7
2017		25,640		5,399	21.1	7,612	29.7	24	0.1	12,486	48.7	119	0.5
2016		19,416		5,035	25.9	7,935	40.9	44	0.2	6,286	32.4	116	0.6
2015		14,677		4,748	32.3	7,237	49.3	30	0.2	2,552	17.4	110	0.7
2014		14,293		4,940	34.6	7,277	50.9	14	0.1	2,037	14.3	25	0.2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민원 처리 결과 현황을 보면 반복 민원, 내용 없음, 회신 불가능 등으로 회신 없이 처리 종결한 1,260건(4.2%),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 중 타 기관으로 바로 이송한 민원 1만1,530건을 제외하면 조사 대상 안내가 6,220건(20.8%), 민원회신 3,811건(12.7%), 진정접수 안내 3,513건(11.7%), 진정접수 절차 안내가 2,077건(6.9%) 순이었다.

**[표 2-2-18]** 최근 5년간 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누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합 계	203,784	29,953	25,640	19,416	14,677	14,293
진정접수 절차안내	20,775	2,077	1,622	942	969	1,501
조사대상안내	55,614	6,220	3,949	3,699	3,395	3,915
진정내용 보완요구	3,239	982	489	374	113	41
진정사건 처리안내	1,355	152	51	46	78	110
법령등 자료송부	680	3	2	5	-	-
질의회신	785	-	-	-	-	-
면전진정 안내	450	6	7	4	11	9
타기관 이송*	20,781	11,568	8,424	505	26	18
타기관 안내	943	18	74	148	4	17
진정접수 안내	44,162	3,513	6,959	5,151	5,106	5,128
민원인취하	864	23	72	53	49	84
공람종결	1,780	263	52	97	42	19
처리종결(회신무)	22,784	1,260	1,236	5,594	2,055	1,377
민원회신	22,682	3,811	2,633	2,747	2,778	2,048
기타	6,890	57	70	51	51	26

\*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타기관으로 이송한 민원(2018년 1만1,503건) 포함이다.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제5절 기초조사 및 조정

2018년 2월 ‘진정사건접수 및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TFT’에서 조사국의 조사관별 보유사건 증가로 사건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력 상당 부분이 각하 처리에 투입되어 오히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요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함께,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접수 초기 단계에서 각하·조정·합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8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기존 인권상담센터를 인권상담조정센터로 개편하여 진정사건의 기초조사 및 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초조사·조정팀을 신설하였다.

### 1. 기초조사

기초조사·조정팀이 신설되어 업무를 시작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전체 진정 접수 3,219건의 17.2%(553건)를 배정하여, 같은 기간 전체 종결 4,120건의 12.8%(526건)를 종결하였다. 기초조사·조정팀이 각하에 소요하는 기간은 평균 9.9일로(전체 각하 사건 소요기간 2017년 63일, 2018년 88일) 비교적 손쉬운 사건에 대한 각하 처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19] 진정사건 기초조사 배정 및 종결 현황**

(단위: 건)

기 간	배정 진정사건수		종결 진정사건수	
	전체 배정 건수	기초조사팀 배정 건수	전체 종결 건수	기초조사팀 종결 건수
2018. 8. ~ 12.	3,219	553 (17.2%)	4,120	526 (12.8%)

## 2. 조정

2018년 조정 사건은 22건이 접수되어 2017년에 비해 14건이 감소하였고, 조정성립도 2018년 7건으로 2017년에 비해 12건이나 감소하였다.

진정사건 접수 대비 조정사건 접수 건수 비율은 2018년 0.2%(조정 22건/진정 9,280건), 2017년 0.3%(조정 36건 / 진정 1만2,329건), 2016년 0.4%(조정 38건 / 진정 1만647건) 대로 대체로 저조하다.

조정 활성화를 위해 조정 절차 간소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접근이 필요하여,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조정위원 1인의 단독조정제도 도입, 조정위원회 회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개정, 진정서에 조정신청 선택 항목 신설 등을 위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표 2-2-20]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종 결					
		소계 (①+②+③)	조정 성립 ①	조정 불성립 ②	조정갈음결정		각하 ③
					성립	이의신청	
누계	155	155	71	28	(10)	(6)	56
2018	22	26	7	3	(4)	-	16
2017	36	43	19	4	(1)	-	20
2016	38	30	18	4	(2)	(1)	8
2015	3	2	1	-	-	-	1
2014	1	1	1	-	-	-	-

\* 조정갈음결정의 ( )안의 숫자는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에 포함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제6절 평가

2018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경우 접수 및 처리 건수, 권리구제 건수 모두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는 위원회의 권리구제 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2017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의 위원회 위상 강화 입장 천명 이후 진정사건이 이례적으로 급증하였던 데 따른 조정 과정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주요 권고 등을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체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당사자 동의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사례들이 확인되어 경찰청장에게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청장은 이에 각 경찰서 등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였다. 또한 유치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보호장비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장 내 경찰장구 사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청은 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경우 출국 금지·정지된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검찰은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출국금지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확정판결 이전 1심 종결 이후에 압수물을 폐기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경고 조치하고, 확정판결 전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지방검찰청들은 이를 수용하였다.

아울러 법원의 경우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각하 사유에 해당함에도 법상으로 보장된 위원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결정 지연 관련 의견표명, 형사사건 재심 절차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불인정에 대한 의견제출 등을 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로서 유의미한 결정을 하였다.

교정 분야의 경우 현안인 수용자 건강권, 과밀수용, 징벌 등의 문제에 대해 직권 조사, 방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수용자 인권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언론사에 발송하는 서신 검열과 수용자의 접견 시마다 과도한 교도관 청취 기록에 대해 권고하였다.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외부로 노출되어 겪는 인격권 침해와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권고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의 상급학교 진학 시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진학지도를 할 것을 시설장에게 권고하여 해당 시설에서는 아동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거주 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등의 사안에서 직권조사 및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처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시설장에게 징계처분이 결정되었고, 또한 시설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시설 감사를 통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등 아동인권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자 노력하였다.

군의 경우 2018년 7월 군인권조사과가 신설되어 군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병역 관련 정책 및 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심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화장실 운영 등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 권고, 병사의 외출·외박을 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통제한 데 대한 개선 권고, 당사자 의사에 반한 징계입창 사실 고지 관련 권고, 군부대 가혹행위 및 병사 관리 소홀 관련 개선 권고, 결혼한 군종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에 대한 권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권고를 하였다.

한편, 2017년에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한 건에 대해 2018년 관할



경찰서장은 불수용 의사를 회신하였다. 또한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피조사자에 대해 무리한 강압 조사를 하여 피진정인 소속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와 경찰청장에게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휴식권 부여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한 건에 대해 2018년에 피권고기관들이 권고를 수용하였다.

검찰의 경우 2017년에 검사가 수도권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을 조사 편의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구치소로 강제 이송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지방검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와 검찰총장에게 실태 점검 등을 권고한 건에 대해 2018년 해당 지방검찰청장은 권고를 수용하였으며, 검찰총장은 소속 기관들에 수용자 이감조사 관련 유의사항을 전파하였다.

진정사건의 차별 사유는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나이, 성별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전체 차별사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장애차별 진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많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위원회도 장애차별과 관련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정책과 법·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수어통역 미제공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결과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수어통역이 폐막식과 패럴림픽 개·폐막식에서 제공되었다. 혹서기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긴급구제 조치 권고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등에서 필요한 조치 이행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심사 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등 고용상 장애차별,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탑승 거부나 승강기 탑승 제한 등에 관하여 시정을 권고한 결과 피진정인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성희롱·성차별 진정은 2018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미투’ 운동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당사자 간에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성차별적 구조·관행과 편견으로 인한 성희롱 재발 및 2차 피해 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유념하여 그 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지역언론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결과, 진정인이 더는 적대적 근무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을 배제하거나 협동조합 대의원 후보 등록에서 여성을 차별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여 피진정인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사회적 신분에 관한 진정의 경우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같은 직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음에도 공무원 신분 또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와 복리후생, 경력 인정 그 밖의 각종 처우에 있어 달리 대우받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근거는 될 수 없으며, 비정규직 고용이 단지 비용 절감 등의 목적에서 차별적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원직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시정권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여 공무원의 선수 자격 제한을 없앴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및 사업장 내 시설 이용 등 차별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에서 개선을 위한 조치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이차별 진정은 고령자에 대한 채용 거부나 해고 등에 관하여 많은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

으로 설정된 연령 기준에 따라 또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이나 각종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데 대하여 위원회는 일관되게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해왔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지원 서류를 반려한 행위,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용역사업 수행이나 디자인 공모전 참가를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결과, 피진정기관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신체 조건, 종교, 병력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차별 진정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사안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HIV 감염인을 일반병실에서 구분하여 대우한 행위,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보류 등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여 피진정기관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기업 장기분쟁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악화 관련 의견표명을 계기로, 충청남도과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별 진정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등 전반적 조사 여건이 우리 사회의 차별 시정에 대한 요구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간접차별이나 제도적·구조적 차별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명시적 차별에 비하여 조사와 판단이 더 어려운 특성을 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위원회의 조사 여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한편, 더욱 적실성 있고 정교한 차별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기존 조직·인력의 조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별 행위의 조사·구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에는 2017년 급증한 진정사건 처리에 매진하는 중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긴급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하반기 개시한 ○○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 ○○○○○○공사 간부 등의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 및 고발을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총 8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월 ‘미투’ 운동을 촉발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맞물려 검찰 내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하였다.

아울러 언론의 탈북 여종업원 기획입국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위원회의 개입이 시급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3건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함으로써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17년 급증하였던 상담 건수는 2018년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2018년 8월부터 기초조사를 통한 진정내용 보완, 조정, 각하사건 조기 종결을 위해 인권상담센터를 인권상담조정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각하 사건의 처리 소요 기간이 이전에 비해 크게 단축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정의 경우 접수 건수가 저조하여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일깨우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제26조에 근거해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한계적 가치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인권교육과 홍보는 인권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2018년은 미투운동의 시작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해였다. 이에 위원회는 각종 인권 현안이 발생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인권교육 정책 기능과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인권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에 힘을 쏟았다.

#### 인권교육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유치원 교사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 지정 요건을 강화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였다. 초·중·고교 교과서를 인권적 시간으로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공식 사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였다. 국회 및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및 인권연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장기적

으로 입법 환경을 조성하고, 연수원 부지 확보 및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방향 등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과 관련 부처 등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기업인권교육협의회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또한 언론 인권교육기본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언론인 인권교육을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담당자 및 인권보호관을 대상으로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캐나다 에퀴타스(EQUITA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권정책 발전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네팔,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등 참석한 국가들이 큰 만족을 표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에퀴타스 및 인권정책발전과정을 국제인권교육의 플랫폼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 예방〉, 〈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언론과 인권〉, 〈인권 경영의 실제〉 등 사이버 인권교육 보조교재를 발간하고,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및 〈인권교육지표틀〉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또한 〈노동인권 교육교재〉를 발간하는 등 인권교육 내용이 풍부해지도록 노력하였다.

## 홍보

인권교육과 함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실행하였다.

온라인 뉴스레터인 〈휴먼레터〉를 매월 2회 발송하여 위원회 주요 보도자료와 함께 다양한 활동 내용을 알렸다. 블로그 〈별별이야기〉에는 20명의 온라인

서포터즈 별별기자단과 함께 600건 이상의 홍보 콘텐츠를 게재했으며, 이를 페이스북과 카카오토티 등에 올리는 등 새로운 방식의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위원회의 정책권고와 조사 결과, 사업과 활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총 235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위원회의 결정과 사업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지도록 하였다. 또한 제7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언론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위원회 설립일인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를 제2회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라디오 캠페인 진행과 사진전 개최,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인쇄물,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가. 학교·공공·시민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교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법적·제도적 토대는 물론 인적·물적 토대가 튼튼히 뿌리내려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인권교육 책무를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원, 지역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체계를 갖추어 실행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인권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2018년 8월 24일 여야 의원 20명이 서명한 「인권교육지원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단체가 「인권교육지원법」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오도하며 격렬한 발의 철회 활동을 하였고, 10월 1일 발의가 철회되었다. 향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교육지원법」의 입법 취지와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등 입법 환경을 조성하여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계속해서 인권교육원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협조를 통해 타당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직제 개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한 인적·물적 토대가 될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적절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유아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인권교육 기관 지정 요건을 ‘인권교육강사 1인 이상’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제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인권교육기관의 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사람’에서 ‘최소 6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여 인권교육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인 인권교육이 법적·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언론의 오보 및 왜곡 보도가 지속되고, 개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포털 영향력 증대 등 언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언론인 인권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친화적인 언론의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언론인 인권교육 3개년 기본계획의 3대 목표는 오보와 왜곡 보도 없는 정직한 언론, 관습과 편견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언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언론을 만드는 것이다. 추진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언론 인권교육 기반을 조성, 언론 네트워크 협력 및 인권교육 실행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등 인권친화적인 언론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유엔은 「2005년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실행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초·중등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학교는 한 사회의 핵심 가치와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로 교육 현장에서 인권을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2018년 개정된 국·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내용, 인권 침해 및 차별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하여 초·중등학교 영역의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64개와 인권조례 제정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87개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모니터링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이 현황 분석 결과는 향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권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검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나. 인권강사 양성 및 위촉

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 인권교육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강사는 인권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권강사 양성뿐 아니라 양성된 강사의 자질 향상을 촉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2018년에는 신규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을 기존 9일에서 12일 과정으로 대폭 늘렸다. 기본과정을 기본과정 1(4일)과 기본과정 2(2일)로 나누어 시행하고, 전문과정(4일), 심화과정(2일)을 이수하도록 하여, 인권강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도 인권의 역사·개념·가치,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과 유엔인권 체계 및 국가인권기구의 이해 등을 기본과정에서 이수한 후 전문과정에서 인권총론, 개별 분야의 인권과 자유권, 개별 분야의 인권과 평등권, 개별 분야의 인권과 사회권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심화과정에서는 강의 시연 및 평가를 통해 실제적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노인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에 대응하여 노인분야 인권강사 양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역의 필요에 따른 장애분야는 강원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노인·장애 두 분야에서 총 26명의 강사를 새롭게 위촉하였다.

인권강사 양성 못지않게 위촉된 인권강사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강사단 워크숍을 진행해 전국의 강사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일간의 집합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인권에 관한 새로운 흐름 등 지식과 강의 역량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사이버 인권교육 2과목 이수, 역량강화 워크숍 3회 참여, 인권강의 3회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재위촉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스스로 학습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가. 인권교육 국내 협력체계 구축

5월 2일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 영역을 특화하여 현재 2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최소 4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인권교육법」의 제정과 인권교육원 설립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전달과 운영체계를 조속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5월 9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 총 13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강사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관별로 개발한 장애인 인권교육 콘텐츠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대규모 집체교육이 아닌 소규모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교육 콘텐츠 개발 시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성이 낮은 사이버 교육보다는 현장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6월 26일 학교분야의 인권교육 향상을 위하여 2018년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9개 대학에서 참석하여 각 대학의 인권교육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대학과 관련된 위원회 진정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각 대학의 운영규정 표준안을 협의하였다. ‘미투’ 관련 대학별 현황, 갈등 해결 방안 및 사례 등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향후 위원회가 대학 인권센터 직원의 인권교육을 맡아줄 것과 위원회가 개발한 인권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연계하여 활용하며 향후 인권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018년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회

2018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군인권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간의 인권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위원회가 개발하고 있는 ‘군인 인권의 이해’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이 피드백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국방부 및 각 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에 부응해 2018년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과 인권옹호자 워크숍을 각각 5월과 10월에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인권가치를 이해하고 인권행정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 하며 인권 업무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할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인권교육기획 및 운영 평가, 인권침해 조사사례 분석방법, 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인권교육담당자 및 인권옹호자들이 인권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집담회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동질성을 확인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

위원회는 2018년 11월 21일 인권교육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교육 지원법」 추진 방향, 인권연수원 설립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인식하고,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과 협력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홍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시민사회 단체와 정기적으로 실천의제를 논의하는 플랫폼(Platform)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인권연수원의 경우 시설보다 먼저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우선 공공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향후 인권교육 전문위원회는 실제적인 인권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 인권교육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사건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유엔은 2011년 「유엔의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이행지침(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하였으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정의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인권경영이 확산되는 흐름에서 기업들은 인권경영의 이해, 실행 방안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가 인권경영 매뉴얼, 교재 개발 및 배포, 홍보 등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위원회는 기업 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회 기관 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인권경영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향후 기업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해 인권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며,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인권교육과 연구를 발전시키고 대학 및 지역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인권증진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서울대학교가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서 대학의 인권교육·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인권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실시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 인권교육 시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표 2-3-1] 2018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분야	일자	인원	참석 대상
군인권 교육협의회	6. 21.	12명	국방부, 3군 및 해병대, 위원회
	12. 21.	12명	국방부, 3군 및 해병대, 위원회
장애인인권 교육협의회	5. 9.	15명	교육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나아장애인인권교육센터, 한국DPI,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권교육·연구중심 대학협의회	6. 26.	17명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위원회

## 나. 인권교육 국외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는 국제적인 인권교육과 연구를 발전시키고 캐나다 및 한국 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캐나다 에퀴타스(EQUITAS)와 인권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캐나다 에퀴타스는 세계인권선언의 공동 입안자인 존 험프리(John P. Humphrey)를 포함한 학자와 사회 활동가들에 의하여 인권교육이 사회정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설립된 단체이다. 이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교육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인권교육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고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 인권교육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훈련 프로그램 주최 및 교육 자료 공동 출판 등 기회를 도모하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의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소속 구성원의 인적 교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8월 23일에서 9월 13일까지 3주 동안 방글라데시, 우간다, 콜롬비아, 베트남, 네팔, 키리바시 및 스리랑카 7개국 14명을 대상으로 인권정책발전 연수



과정을 운영하였다. 국가별 인권상황과 인권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 제도화 사례를 제시, 국가별 인권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액션플랜을 작성해보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4모듈로 구성되었다.

※ 인권정책발전 연수과정 프로그램

모듈	강의	현장견학
모듈 I 인권정책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역할</li> <li>·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인권 : 조약기구의 권고를 중심으로</li> <li>· 한국의 인권이슈</li> <li>· 국가인권정책</li> <li>· 현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li> <li>·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li> <li>· 인권재단 ‘사람’</li> <li>· 경찰청인권보호센터</li> </ul>
모듈 II 분야별 인권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와 인권</li> <li>· 광역자치단체와 인권</li> <li>· 인권도시</li> <li>· 노인과 인권</li> <li>· 난민과 인권</li> <li>· 여성차별과 인권정책</li> <li>· 북한과 인권문제</li> <li>· 교육과 인권</li> <li>· 인권과 인권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청</li> <li>· 광주광역시청</li> <li>· 국립아시아문화전당</li> <li>· 국립5·18 민주묘지</li> <li>· 제3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li> <li>·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li> </ul>
모듈 III 개발과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과 인권</li> <li>· 기업과 인권</li> </ul>	
모듈 IV 국별 보고 및 액션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기반 정책 프로그래밍</li> <li>· 국별보고</li> <li>· 액션플랜 수립 및 발표</li> </ul>	



인권정책발전 연수과정을 통하여 인권 제도화 확산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가국의 인권상황 개선, 위원회와 협력관계 구축 등 국제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인권 연수과정 프로그램 및 운영 등에 대해 매우 만족했으며, 향후에도 본 연수과정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제9차 세계인권교육콘퍼런스 참가자

위원회는 세계 인권교육의 흐름, 쟁점 및 현안을 파악하고, 세계인권교육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웨스턴시드니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인권교육콘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이 콘퍼런스는 국제기구, 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노조와 연합, 종교단체, 언론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시민으로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발현할 목적으로 구상되었으며, 호주를 비롯한 70여 개국에서 3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국제인권교육 시드니 선언을 채택하여 향후 인권교육 방향이 되는 공식적인 문건을 갖추는 성과가 있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 및 인권교육 세션에 참여하여 여러 나라의 최근 인권교육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위원회 인권교육 방향 마련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호주·네팔 등의 나라와 인권교육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다.

###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가. 인권교육 실시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교육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인권사무소에 인권교육센터 운영, 강사양성 시스템 정비를 통한 인권강사 배출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자 등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기본권, 기업이 국민 인권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업인권, (청소년)노동인권강사과정과 기업 대상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적극 운영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총 4,160회(29만9,936명) 실시하였다. 2017년과 비교할 때 교육 횟수는 6.5%, 교육 참여 인원은 35.6% 증가하였다. 특히 사이버 인권교육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인원과 기업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로 사이버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인권교육 확대에 기인한다. 교육과정의 감소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인권특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법정 의무교육이 추가되고 있는 인권교육 추이를 볼 때 향후에도 사이버 인권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2-3-2]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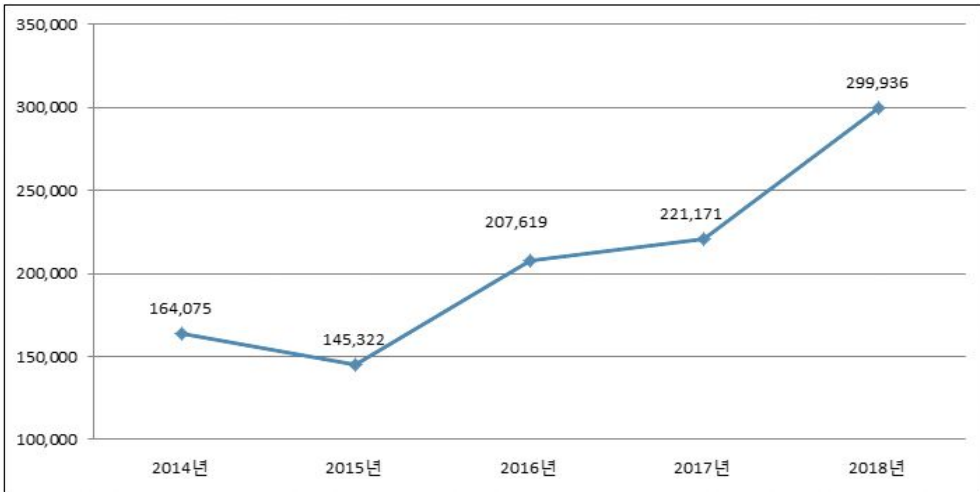
(단위: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계	24,644	1,760,352	3,481	164,966	2,677	62,010	4,053	508,900	14,433	1,024,476
2018년	4,160	299,936	427	19,957	484	8,542	1,133	165,248	2,116	106,189
2017년	3,910	221,171	494	28,916	533	10,974	915	79,799	1,968	101,482
2016년	3,702	207,619	734	33,953	380	5,930	828	71,434	1,760	96,302
2015년	2,509	145,322	438	18,468	239	9,194	353	34,635	1,479	83,025
2014년	2,334	164,075	334	14,325	206	4,926	288	34,744	1,506	110,080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그래프 2-3-1]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인원 현황**

(단위: 명)



## 나. 분야별 인권교육과정 운영

### 1)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위원회는 2010년부터 인권교육을 통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인권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2016년 이후,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공동 운영 방식으로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시·군·구 공무원 938명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국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에 인권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표 2-3-3] 2018년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 분	횟수	인원	대 상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1	25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기관 공무원
	16	938	경기도, 산하 시·군·구 공무원

### 2) 군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군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방부와 공동으로 육군, 해군, 공군을 대상으로 군 인권교관양성과정과 군 간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해왔다.

군 인권교관교육과정을 총 2회를 운영하여 71명의 인권교관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군대 내 인권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군 기무, 교도관, 수사관, 의무관, 법무관 등 429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총 7회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군 지휘관이 군대 인권존중 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2017년 국방부와 협의, 육군 지휘관과정(대령, 중령)에 인권 특강을 포함하도록 한 이래 2018년에도 이를 지속하는 한편, 장군 진입자에 대해서도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표 2-3-4]** 2018년 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 분	횟수	인원	대 상
군 인권교관교육과정	2	71	군 인권교관
군 인권감수성향상과정	7	429	군 기무, 교도관, 수사관, 의료진, 법무
군 지휘관과정	8	565	군 중령, 대령, 장군진입자

### 3) 경찰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경찰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친화적 경찰업무 수행 기반 조성을 목표로 매년 경찰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은 경찰 청문감사관실 인권교육 담당자, 경찰청 소속 강사 등 80명을 대상으로 경찰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총 3회 운영하였다. 국가공권력 집행자로서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곧 인권보호로 나타나게 되므로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3-5]** 2018년 경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 분	횟수	인원	대 상
경찰 인권감수성향상과정	2	55	경찰 청문감사관실 인권교육 담당자
	1	25	경찰청 소속 강사 등 경찰관

#### 4) 정신건강, 장애분야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의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에 따라 전국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해왔다.

정신건강분야 교육은 2017년 신설된 강원인권사무소를 제외하고 2018년 전국 단위 정신건강분야 시설종사자 6,4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총 138회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분야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직접교육보다는 모니터링, 관계기관 협의 등 인권교육 정책 및 운영설계 지원에 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다.

**【표 2-3-6】** 2018년 정신건강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본부(수도권)		합계		인권사무소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89	4,515	138	6,400	10	346	7	294	18	758	14	487	-	-

장애분야 인권교육을 위해 2018년에는 각급 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장애분야 인권강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총 5,834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69회 실시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의무 강화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표 2-3-7】 2018년 장애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본부(수도권)		합계		인권사무소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	1,446	69	5,834	21	2,281	11	561	10	1,125	2	70	5	351

또한 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감수성, 전문성을 갖춘 인권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인권 일반론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1 과정(4일), 인권에 대한 국제 체제와 국가 인권기구의 이해의 기본2 과정(2일), 장애인 인권을 다루는 전문과정(4일), 강의 요령 및 인권적 강의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화과정(2일)으로 세분화하고, 기존의 66시간 이상에서 2018년에는 84시간으로 교육시간을 늘렸다. 강원인권 사무소에서 장애분야 인권강사과정을 운영하여 1회 14명이 최종 심화과정을 수료하였다.

**【표 2-3-8】 2018년 장애분야 인권강사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세부과정	수료 인원	교육 대상 및 과정
인권 강사 양성 과정	강원 인권 사무소	기본1(5.15.~5.18.)	14	강원지역 장애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 과정 신청자
		기본2(7. 3.~7. 4.)	14	기본1 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전문(8. 28.~8. 31.)	14	기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심화(10. 4.~10. 5.)	14	전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 5) 노숙인분야 인권교육과정

2011년 6월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위원회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3년 노숙인분야 인권교육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분야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 2018년에는 인권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양성한 노숙인분야 강사단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1,677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총 39회 진행하였다. 교육의 주제를 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시설 이용자 및 거주인의 인권보호로 나누어서 교육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표 2-3-9]** 2018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본부(수도권)		합계		인권사무소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6	830	39	1,677	6	194	6	228	4	191	5	186	2	48

## 6) 기업인권분야 인권교육과정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지고, 초(다국적)기업의 경영 활동이 다른 나라 국민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채택되고, 위원회는 2016년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2018년 도로교통공단 등 32개 공기업 6,982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2017년 14개 기관 1,621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권고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기업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은 2017년 1회 운영하였으나 사회적으로 기업인권 분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필요성에 비해 지원자와 수요자가 소수인 상황이다. 2018년도 인권교육 수요의 대폭 증가로 강사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양성이 요구된다.



## 7) 노인분야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우리 사회 노인의 인권 향상과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노인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2011년부터 노인분야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노인 복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시설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이 4시간씩 의무 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인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이에 대비하였다.

노인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은 서울 본부와 광주·대구·강원인권사무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인권 일반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1 과정(4일), 인권에 대한 국제 체제와 국가인권기구의 이해의 기본2 과정(2일), 노인인권을 다루는 전문 과정(4일), 강의 요령 및 인권적 강의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화과정(2일)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식과 감수성, 태도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2-3-10] 2018년 노인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세부과정	수료인원	교육 대상 및 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	본부	기본1(4. 23.~4. 27.)	14	서울·경인지역 노인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 과정 신청자
		기본2(6. 1., 6. 7.)	13	기본1 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전문(7. 3.~7. 6.)	19	전국 기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심화(9. 13.~9. 14.)	17	전국 전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광주인권사무소	기본1(4. 30.~5. 4.)	23	광주·전라·제주지역 노인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 과정 신청자
		기본2(5. 30.~5. 31.)	23	기본1 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전문(6. 25.~6. 28.)	23	전국 기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심화(8. 30.~8. 31.)	23	전국 전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구 분	세부과정	수료인원	교육 대상 및 과정
대구 인권 사무소	기본1(5. 10.~5. 18.)	14	대구·경북지역 노인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 과정 신청자
	기본2(5. 24.~5. 25.)	14	기본1 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전문(6. 14.~6. 22.)	16	전국 기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심화(8. 30.~8. 31.)	16	전국 전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강원 인권 사무소	기본1(5. 15.~5. 18.)	9	강원지역 노인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 과정 신청자
	기본2(7. 3.~7. 4.)	8	기본1 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전문(9. 4.~9. 7.)	8	전국 기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심화(10. 4.~10. 5.)	8	전국 전문과정 수료자 중 신청자

## 8) 영유아 및 초·중등학교분야 인권교육과정

영유아분야 인권교육을 위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친화적이고 안전한 유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3-11] 2018년 영유아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기 간	수료 인원	교육 대상
2.1.~2.2.	20	강원도 내 유치원 교사

2018년 학교분야 인권교육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중점을 두어 10월부터 11월 까지 성동공업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42회, 97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집중과정을 개설하여 강사를 양성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협업으로 중산초등학교 등 54개교, 2,34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교 관계자 인권교육을 위해 3일 과정의 아동학대예방

학부모교육 강의를 진행하였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과정을 운영하였는데, 학교최고경영자의 인권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하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2-3-12]** 2018년 학교 관계자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기 간	수료 인원	교육 대상
8.18.~8.20.	18	아동학대예방 학부모교육 강연자
9.5.	47	인천지역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

**9) 강사역량강화 인권교육과정**

기존에 양성된 강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증진하는 보수교육인 강사역량강화과정을 더욱 중요한 교육 업무로 설정하여 위촉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2일 과정의 집합교육을 본부와 인권사무소에서 분야별로 실시하였으며, 집합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워크숍을 통해 보완하였다.

**[표 2-3-13]** 2018년 강사역량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지역	수료인원	교육 대상
집합교육	본부(3. 9.~3.10.)	29	서울·경인지역 정신건강분야 위촉 인권강사
	본부(3.27.~3.28.)	32	장애·발달장애·노숙인분야 위촉 인권강사
	본부(4. 4.~4. 5.)	34	하청·이주분야 위촉 인권강사
	본부(4.19.~4. 20.)	21	스포츠·노인·기업분야 위촉 인권강사
	부산(4. 5~4. 6.)	32	부산·울산·경남지역 위촉 인권강사
	광주(4.23~4.24.)	36	광주·전라·제주지역 위촉 인권강사
	대구(4.13~4.14.)	35	대구·경북지역 위촉 인권강사
	대전(8.30~8.31.)	43	대전·충청지역 위촉 인권강사
	강원(6.15~6.16.)	9	강원지역 위촉 인권강사

## 10)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운영

2018년에는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방문교육을 총 484회에 걸쳐 8,54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방문 프로그램 운영은 인권교육 업무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고, 체험식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2-3-14] 최근 5년간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연도	계		공공 영역		학교 영역		시민 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8	484	8,542	92	2,195	230	3,672	162	2,675
2017	533	10,974	63	1,551	273	4,624	197	4,799
2016	380	5,930	19	383	284	4,473	77	1,074
2015	239	9,194	16	420	175	7,916	48	858
2014	206	4,926	1	5	169	4,178	36	743

## 11) 인권특강

위원회는 인권의식 확산과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에 부응하는 인권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공공, 학교, 시민 영역의 종사자 10만6,189명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총 2,116회 실시하였다. 인권특강에서 횟수와 인원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더욱 질 높은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강의를 지양하고 소규모로 횟수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표 2-3-15]** 최근 5년간 인권특강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연도	계		공공 영역		학교 영역		시민 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8	2,116	106,189	385	41,681	1,180	44,841	551	19,667
2017	1,968	101,482	327	37,136	1,191	39,681	450	24,665
2016	1,760	96,302	254	28,793	888	42,401	618	25,108
2015	1,479	83,025	196	17,780	806	44,097	477	21,148
2014	1,506	110,080	279	27,958	801	52,196	426	29,926

2018년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은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장애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영유아의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826회에 걸쳐 3만2,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각급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권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3-16]** 2018년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계	지역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대전·충청	강원
횟수	826	302	40	99	121	229	35
인원	32,130	11,670	1,147	3,551	2,846	10,772	2,144

## 1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상시 학습체제 구축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이버 자율학습을 통한 인권감수성 증진 및 역량 강화, 인권 관련 소양 함양 및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2005년 사이버 인권교육센터를 개설하고, 2006년부터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다.

2018년에는 18개 과정을 총 1,133회 운영하였다. 이수 인원 16만5,248명으로 2017년 이수 인원 7만9,799명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배경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 안내가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사이버 인권교육이 증가한 요인은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웹접근성 심사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교육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심화하여 폭넓은 기능 개선을 실현하고, 나라배움터 사이트의 평가 오답 정정 처리 등 이용자·학습자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위원회가 사이버 인권교육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고 파악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콘텐츠 공동 활용 요청이 2017년 11개 기관에서 2018년 25개 기관으로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인권 관련 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려는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7]** 최근 5년간 사이버 인권교육 현황

연도	이수인원(명)				이수율(%)		
	계	공직자	교사	시민	공직자	교사	시민
2018	165,248	98,958	6,627	59,663	81	91	72
2017	79,799	33,738	2,348	43,713	79	80	76
2016	71,434	46,226	13,066	12,142	80	81	59
2015	34,635	9,022	12,194	13,419	75	86	68
2014	34,744	7,578	24,863	2,303	84	86	37

##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위원회는 인권 콘텐츠의 중요성을 출범 초기부터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교육 콘텐츠는 인권교육의 핵심으로서 전달하고 공유해야 할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 양질의 인권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내용이 풍성해질 때 인권교육의 수준 또한 높아지고, 인권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2018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사이버 인권교육 보조교재인 <장애인 차별예방>, <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출간하였다. 또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인 <언론과 인권>, <인권경영의 실제>를 개발하였다.

미투운동 연속 토론회 자료집인 <미투로 연대했다>, <도대체 법제도는 어디에>,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원인은 무엇인가>,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유엔 및 국제엠네스티에서 발간한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및 <인권교육지표들>을 번역 발간하였다.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제3차에 걸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을 번역한 문서로서, 200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실행해야 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규범적 기초와 정의, 일반원칙, 목적, 주요 행위자, 대상 집단, 조정과 이행을 위한 구조, 이행 프로그램, 중간평가, 추진전략 등의 주제로 기술하고 있어, 인권교육 실행을 위한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교재 주요 내용

### 목 차

- 제1장.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 제2장.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1995~2004):
  - 제3장.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2009):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행동계획
  - 제4장.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
  - 제5장.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 제1,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 강화 및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 대상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
- 부 록 : 유럽평의회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에 관한 헌장 권고안 제(CM/Rec(2010)7호 및 주석서

〈인권교육지표들〉은 인권교육 정책과 이행 현황, 질적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 또는 측정을 위한 틀로서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정부 및 유엔 기구의 인권교육 이행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상황의 평가를 지원하는 도구이며, 국제 기준에 명시된 정부의 책무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될 인권교육훈련 이행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권교육지표들〉 교재 주요 내용

### 목 차

- 제1장. 서문
- 제2장. 국가 계획에서의 인권교육훈련
- 제3장. 정규 교육 분야에서의 인권교육훈련
- 제4장. 경찰(법집행공무원) 및 군인을 위한 인권교육훈련
- 제5장. 공무원, 보건 종사자, 사회복지사, 언론인 및 기타 전문직을 위한 인권교육훈련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을 실제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권 교육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인권교육 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육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실제 사례와 양식이 풍부하게 담겼다.

노동권,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사회권 강화와 평등권 증진을 목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인권 교육교재> 발간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교재는 한국의 노동 현실과 인권 현황을 알아보고, 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외국의 노동인권 교육체계와 사례를 소개하고, 노동의 개념과 의미를 정의하고, 노동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고찰한다.

## 나.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 1) 웹드라마 제작·보급

2017년까지 인권영화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나, 2018년에는 널리 확산하기 용이한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처음 제작한 웹드라마 ‘진정하세요’는



웹드라마 ‘진정하세요’ 포스터

위원회 조사관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역할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한편,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드라마는 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에서 근무하게 된 열정적인 신참 조사관 민태용(이주승 분)이 선배 조사관 유나경(고원희 분)과 함께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보여준다. 노키즈존으로 어려움을 겪어 진정했다는 아이 엄마와 소란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자영업자, 비만을 이유로 해고당해 억울함을 진정한 직원과 직원의 외모로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장 등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뒤섞인 사건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 속 조사관들의 고충과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 2) 인권작품(논문, 광고, 에세이) 공모사업

위원회는 매년 일상생활의 소재를 중심으로 인권이 생활 영역 곳곳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실시해왔다.

2018년 인권작품 공모전에는 에세이(아동청소년부, 일반부) 402편, 미디어(포스터, 인포그래픽, 포토스토리) 135편 등 총 537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총 34편을 선정하여 위원장 표창을 하였다. 선정된 수상 작품 중 인권 에세이는 <2018년도 인권에세이집>으로 발행하여 도서관, 인권사무소,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인권미디어(포스터, 인포그래픽)는 인권주간 행사로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갤러리에서 전시했으며, 위원회의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2-3-18] 2018년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부문	분야	수상내역	작 품 명
인권 미디어	포스터	대상	똑같은 인권침해의 흥기
		최우수상	보이지 않는 소중함
		우수상	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인권밀이 어둡다
		장려상	인권물결
			인권을 외치는 주체가 되어주세요
	인권-당신과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최우수상	함께가는 길
		우수상	감정노동자, 무시받아 마땅한 인권은 없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성범죄
		장려상	고령사회, 안녕하십니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경비아저씨, 안녕하세요
정보 속 나를 지키자, 미디어 리터러시			
인권 에세이	아동 청소년부	최우수상	안녕
		우수상	누가 그녀를 검열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특성화고에 다닙니다
		장려상	입을 막는 사람들
			평범한 너의 사랑을 응원해
			어느 낡은 세대 청소년의 혼란
	여성이라는 이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엘리베이터와 인권		
	정보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난민의 인권		
	일반부	에세이 대상	천상에서 온 메시지
		최우수상	우리는 하나
			즐거운 나의 집
		장려상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마음의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피부색에 각인된 주홍글씨			
누구를 위하여 태어났는가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			

## 5. 인권도서관 운영

위원회 인권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 도서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에 근거하여 2002년 별도의 소속기관인 인권자료실로 개관하였다. 2009년 위원회 조직 축소 과정에서 행정법무담당실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인권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6년부터 인권교육기획과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보존,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 서비스, 위원회 간행물의 등록·관리·보존,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인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3-19] 인권도서관 이용 현황

구분	누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직원 대출	18,514명 49,171권	632명 1,912권	1,157명 2,785권	1,188명 2,950권	1,124명 3,129권	1,188명 3,492권
외부대출 (개인, 단체)	4,671명 13,942권	360명 1,170권	428명 1,352권	286명 953권	294명 847권	266명 775권
도서관 이용자	122,222명	33,213명	45,694명	12,454명	3,526명	4,159명

※ 누계는 2002년 인권자료실 개관일부터 2018.12.31.까지 합계이다.

인권정보 이용 확대와 편의 제공을 위해 자료회원 가입을 통한 외부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과 책나래서비스 가입 회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민을 위한 인권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권사무소와 협력하여 지역 분관(부산·광주·대구·대전분관 2015년 개관, 강원분관 2017년 개관)을 운영

하는 등 누구나 인권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5월 위원회 직원, 지역분관 담당자,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수록 유엔인권정보 안내, 국내외 법률DB 등 정보검색 교육, 주요 인권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3-20]**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

자료 유형	소장 현황	자료 유형	소장 현황
단행본	47,047권	전자저널	583종
비도서자료	8,705점	Web-DB	7종(학술정보 5종 / 법률정보 2종)
연속간행물	86종	전자도서	2,265권

**[표 2-3-21]** 인권도서관 지역분관 장서 현황

(단위: 권, 점)

구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합계	1,409	1,411	1,698	1,413	927
단행본	1,197	1,205	1,468	1,206	775
비도서자료	212	206	230	207	152

**[표 2-3-22]**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간행물 원문 이용 현황

구분	2018	2017	2016	2015	2014
이용건수	8,694건	4,661건	4,602건	3,635건	3,771건

다양한 인권정보를 통해 국민이 인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매월 네 번째 목요일은 인권도서관에서 정기 인권영화상영회를, 10~12월에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109개 도서관과 인권영화상영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또한 어린이들이 책과 독서 활동을 통해 인권의 다양한 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국 도서관에서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8년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12개 도서관과 인권사무소 체험관 2개관에서

도서 전시회와 다양한 독서 활동, 세계인권선언문 읽기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2012년부터 인권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방문 대상별 분포도를 보면 중·고등학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복지관이나 교사 동아리 모임, 인권단체 등 성인들의 단체 견학 요청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인력 및 공간 부족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표 2-3-23]** 2018년 인권도서관 개최 행사 현황

행사명	개최시기	개최 현황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6.19.~12.20.	전국 12개 도서관, 인권사무소 체험관 2개관에서 개최
정기 인권영화상영회	매월	총17회 366명 참여 ※ 특별상영회 5회 포함
세계인권선언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상영회	10.10.~12.10.	전국 109개 도서관 약 7,770명 참가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연중(화~금, 1일 1회)	74건 1,191명 참가

[표 2-3-24] 2018년 인권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방문단체		방문자 수		
	건수	비율	인원	비율	
합 계	74	100%	1,191	100%	
학 교	초 등 학 교	7	10%	96	8%
	중 학 교	22	30%	431	36%
	고 등 학 교	24	32%	359	30%
	대 학 교	4	5%	33	3%
공 공 단 체	4	5%	53	5%	
민 간 단 체	13	18%	219	18%	

[표 2-3-25] 2018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일정

개최 장소	개최 일정	소재지
익산시립영등도서관 (광주인권사무소 공동 진행)	6. 19.~6. 30.	전북 익산시
아산시중앙도서관 (대전인권사무소 공동 진행)	6. 19.~7. 8.	충남 아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립용학도서관 (대구인권사무소 공동 진행)	7. 6.~7. 26.	대구광역시
부산인권사무소	7. 16.~7. 20. (부산인권전시관)	부산광역시
	7. 23.~7. 27. (부산시청 1전시실)	
천안성환도서관	8. 2.~8. 26.	충남 천안시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8. 2.~8. 26.	제주 서귀포시
전라남도립도서관	9. 1.~9. 22.	전남 무안군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9. 1.~9. 22.	경북 포항시
부안군립도서관	10. 4.~10. 28.	전북 부안군
동작어린이도서관	10. 4.~10. 28.	서울특별시
충청북도중앙도서관	11. 1.~11. 25.	충북 청주시
춘천시립도서관	11. 1.~11. 25.	강원 춘천시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교육센터 및 인권도서관 강원분관)	11. 30.~12. 14.	강원 원주시
통영시립도서관	12. 1.~12. 20.	경남 통영시

##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2018년부터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던 직원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여 인권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다. 인권전문학교, 부서별교육, 인권감수성과정, 대상별역량강화과정 등 총 13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총 641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인권전문학교는 조사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 기법 등을 주제로 한 ‘조사관학교’, 국내외 인권 현황을 주제로 한 ‘인권정책학교’, 인권교육 기획·설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인권교육학교’를 진행하였다.

인권감수성과정으로 ‘인권숲속교실’과 ‘국내인권현장탐방’이 진행되었다. ‘인권숲속교실’은 한반도 평화, 여행과 인권을 주제로 2회 운영하였으며, ‘국내인권현장탐방’은 청년인권과 인권 기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2개 팀이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를 면담하였다.

대상별 교육과정으로는 ‘신규직원역량강화’, ‘리더십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감동·소통리더십과정’을 새롭게 운영하여 여성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신규직원역량강화’ 과정은 2018년 신규 임용자 증가로 연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2017년 처음 시작한 부서별 전문교육을 2018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21개 부서에서 각 부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2-3-26] 2018년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현황

(단위: 명)

프로그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인원
제1차 신규 조사관학교	2.22.~2.23. (3일)	조사국 회의실	신규조사관을 위한 조사 이론 및 조사 실제, 기술	11
조사관학교	9.10.~9.14. (5일)	서울유스 호텔	조사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법 및 실무 역량 학습 조사관으로서의 인권가치 내재화,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방안 논의	92
신규직원 역량강화(1차)	4.16.~4.27. (10일)	서울유스 호텔 등	위원회와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인권기구 조사관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 및 조사실무	17
신규직원 역량강화(2차)	10.10.~10.18. (6일)	서울유스 호텔	위원회와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국제적 인권기구 및 국내 인권현안 이해 등	23
감동·소통 리더십과정	6.19.~6.20. (2일)	더케이호텔	여성 직원 간 소통과 이해를 통한 업무협력관계 형성 및 강화 위원회 지도자 역할에 대한 이해 등	22
리더역량 강화과정	10.30. (1일)	도봉숲속마을	위원회 전략추진 회의 후속 논의 인권특강: 가짜뉴스와 차별, 혐오의 확산	35
인권교육학교	6.21.~6.22. (2일)	청주라희 호텔 등	인권교육 기획과 과정 설계 등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관련 국내외 현황 및 상황변화	22
인권정책학교	12.17.~12.18. (2일)	라마다 서울동대문	유엔인권권고현황과 위원회의 역할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구조 변화 등	26
인권숲속교실 (1차)	11.14. (1일)	평화문화진지	인권, 평화를 말하다 • 영화, 드라마,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변화 • 개성공단 이야기	8
인권숲속교실 (2차)	11.28. (1일)	파주시 지지향	인권, 여행을 만나다 • 음악, 여행과 만나는 인권과 사람들 • 길 위에서 만나는 난민캠프이야기	22
국내 인권현장 탐방	8.21.~8.24. (3박4일)	서울, 전주 등	청년인권 운동가를 만나다 • 청년주거빈곤 현황 및 정책의 한계 등 주거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역할 모색	6
	11.28.~11.30. (2박3일)	일산, 전주 등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탐방 •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과정에서의 인권기반 적용 방안 모색	4
직원인권강사 역량강화	12.19.~12.20. (1박2일)	하이서울 유스호텔	위원회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인권교육의 이야기 흐름, 서사와 질문 구성, 방법론 인권교육기획 및 강의안 작성 실습	14
부서별 전문교육	부서별진행	-	부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별 전문교육 진행 • 총21개 부서, 24회 운영	339
합 계				641

2부. 인권력 주요 활동

##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가.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235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표했다. 보도자료는 위원회의 정책 현안, 조사 및 구제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인권 의제를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보도자료는 출처가 명확한 가장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 신뢰도와 주목도를 높이는 등 커다란 효과를 거둔다는 측면에서 위원회 언론 공표 활동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향상되고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보도자료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과 논평, 인권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국내외 주요 활동 등이었다.

위원회는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 요청에 대한 지원을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했다. 특히 미투운동, 사형제 폐지, 노인인권 등 핵심적인 인권문제는 언론과 공동기획보도 형태로 대외에 널리 알렸다. 그리고 모바일과 이메일 등을 통해 출입기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위원회 업무와 현안에 대해 알리고 있다.

2018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결정,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조단 운영, 혁신위 권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국민 사과 등 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및 현안 대응과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을 3회 개최하였다. 이는 언론의 이해와 주목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빠르고 명확하게 밝히는 데 일조했다. 아울러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6회 진행하였으며, 인권

보도준칙 확산, 언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지원 등 언론인 인권의식 제고에도 앞장섰다.

이와 함께 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강의, 언론홍보실무교육 등을 추진해 언론홍보에 대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언론 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

## 나.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기존의 블로그와 휴먼레터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진행하였다.

온라인 뉴스레터인 <휴먼레터>를 위원회 정책 고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2회 발송하여 위원회 주요 보도자료와 다양한 활동 내용을 알렸다. 20명의 온라인 서포터즈 별별기자단과 함께 600건 이상의 홍보 콘텐츠를 블로그 <별별 이야기>에 게재하였으며, 이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적극적이고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위원회 권고 사항, 인권 현안과 각종 이슈를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게재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인권의 날 기념 슬로건 공모', '가로세로날말퀴즈 이벤트' 등 온라인 이벤트를



카드뉴스

주요 활동 성과를 홍보하였다. 위원회 각 부서의 홍보 수요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혐오·차별예방, 혐오표현에 대한 라디오 캠페인을 31회 진행하였다.

진행하였다.

청사 앞 전광판을 통해 주요 결정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인권상 공모, 조정 제도 등을 홍보하였다.

위원회는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 속 인권을 알리는 한편,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및 다양한 정책과

#### 다. ‘인권의 날’ 기념식과 인권주간 행사 진행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주교좌성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각국 외교사절, 인권·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35호인 동시에 유월민주화항쟁진원지 표지석이 있는 성공회 서울대성당은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전환기인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 시작된 곳으로,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념식 장소로 선정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배우 권해효의 사회로,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식전 공연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서 70회의 타종 후 관련 영상 상영,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 위원장 기념사, 대통령 축사,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소프라노 임선혜 기념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이라 약속하였고,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2018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고 노회찬 국회의원에게 수여되었다. 고 노회찬 의원은 1982년부터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을 시작,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으며, 정당 및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 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세계인권선언 주요 조항을 낭독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1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가수 이은미, 2조(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모델 한현민, 7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형제복지원 생존자 한중선이 낭독하였다. 대체복무자인 야콥 할그렌 스웨덴 대사, 5.18 항쟁 고문 생존자 차명숙, 전 KTX 승무원 김승하, 전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 등도 낭독에 참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축사



가수 이은미 등 세계인권선언 낭독

## 라. <인권> 잡지 발간

<인권> 잡지는 2003년 8월 월간으로 창간되었으나 2007년부터 격월간지로 변경된 이후 2018년 12월 통권 119호까지 발간되었다.

<인권> 잡지는 인쇄본 3,600부를 발행하여 복지시설, 작은 도서관 등에 우선 배포되었다. 또한 인쇄본 잡지를 웹진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혐오와 차별, 갑질, 난민, 환경인권, 미투 등 시의적절한 인권 이슈를 매호 특집으로 다루면서 읽을거리가 풍부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인권> 잡지는 국가인권기구가 발행하는 인권 전문지이면서 교양지를 지향하며 콘텐츠와 디자인의 조화를 통한 ‘읽는 잡지’, ‘보는 잡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표 2-3-27] 2018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호 수	특 집	기타 주요 기사
1/2월호 (통권1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을 비트는 폭력, 갑질</li> <li>- 갑질, 갑과 을 그리고 병과 정이 만드는 피라미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화 시대의 ‘밥먹을 자유’</li> <li>- 별레의 탄생 ‘○○ 층은 어떻게 태어나는가’</li> <li>- 마틴루터 킹</li> <li>-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나</li> <li>- 청소년의 정당한 알바권리를 위해</li> <li>- 수많은 박종철을 기억하며</li> <li>-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수용시설의 학대</li> </ul>	
3/4월호 (통권1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를 비추는 거울, 미투</li> <li>- 미투가 바꾸고 있는 세상</li> <li>-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의 권리는 만 20세 이상에만 적용되나요</li> <li>- 혐오가 가져온 낙인, 조선족 괴담</li> <li>- 장애인에게 편한 세상이 모두에게 편한 세상입니다</li> <li>- 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li> <li>- 알록달록 세상 예쁜 인권을 만나다</li> <li>- 4월의 하늘은 그때도 푸르렀을까</li> <li>- &lt;돈조반니&gt;와 미투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계의 성폭력 미투 그리고 미래</li> <li>- 양심적 병역거부, 신념의 의무 사이</li> </ul>	

호 수	특 집	기타 주요 기사
5/6월호 (통권1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혐오, 우리사회의 민낯</li> <li>- 혐오를 찍어내는 사회</li> <li>- 혐오를 넘어선 소수자들의 투쟁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여성' 게이머</li> <li>- 사형제도를 이야기하다</li> <li>- 교문을 통과해도 아동의 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li> </ul>
7/8월호 (통권1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과 나, 로힝야 난민의 희망</li> <li>- 우리가 밝혀야 할 것들, 5·18진상 규명을 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름, '6월'의 흔적을 걷다</li> <li>- 우리 고전문학에서 만나는 인권</li> <li>- 불법 촬영부터 동일 처벌까지</li> </ul>
9/10월호 (통권11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과 인권</li> <li>- 과소비에 불편한 지구</li> <li>- 도롱뇽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li> <li>- 지금여기,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박육아 끝에 찾은 엄마의 행복권</li> <li>- 노동 그리고 최저임금</li> <li>- 법률 용어속의 차별</li> <li>- 한여름, 그 교실엔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다</li> </ul>
11/12월호 (통권1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짜 난민, 가짜 난민</li> <li>- 제도와 현실사이, 난민법</li> <li>-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짜뉴스는 왜 퍼지는 걸까?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법</li> <li>- 노인이 싫은 나라 혐로 사회</li> <li>- 유아한 삶의 권리를 변론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8+297일, 마음은 굴뚝같지만</li> <li>-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생소한 이름의 사이웃</li> <li>- 잊히는 이름, 위안부</li> <li>- 과거사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다</li> <li>- 국가폭력 이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의 변화를 바란다</li> <li>- 존재의 가시화, 폭력의 조직화</li> <li>- 낙태는 나의 선택이다</li> <li>- 이웃집 괴물과 맞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의 새로고침이 필요한 시간</li> <li>-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조성애 수녀)</li> <li>- 다문화를 걸핍는 혐오발언</li> <li>- 기면증 수험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주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도 좋은 사람 만나사랑하고 싶다</li> <li>- 모니터 안에 사람 있어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전태일의 값진 희생</li> <li>-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목소리</li> </ul>

## 마. 인권보도상 시상

2011년 9월 23일 위원회는 언론의 인권 보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였다. 위원회와 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2년 ‘인권보도상’을 제정하여 시상식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가 높아 매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8년 제7회 인권보도상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심사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5명의 외부위원과 정책교육국장, 홍보협력과장 2명의 내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민영 교수가 맡았다.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는 총 39건이 접수되었으며, 매체별로는 일간지 14건, TV 15건, 통신사 2건, 인터넷 7건, 잡지 1건이 접수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6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표 2-3-28] 2018년 제7회 인권보도상 당선작

구분	매체명	보도 제목	기자
대상	동아일보	‘그림자 아이들’ 시리즈 및 후속보도	조은아, 김재명, 김예운
본상	CBS	성심병원 간호사 선정적 장기자랑 등 인권침해 실태 연속보도	김명지, 송영훈
	제주CBS	70년 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수형인 기획보도	김대휘, 문준영
	프레시안	심층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전홍기혜
	한겨레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연속보고	고한솔, 김미향, 허호준, 이지혜, 신지민
	한국일보	비극의 로힝야족 난민캠프 최초 르포	정민승
	머니투데이		오세중



## 바. 결정례 동영상 제작·배포

2014년부터 결정례 영상 제작을 진행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이던 결정례를 재연 드라마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인권에 대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이주여성, 난민, 고용차별, 아동인권 등 4개의 분야별 결정례를 선정해 재연 드라마를 통해 설명하였다. 교육 등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된 결정례 영상을 모두 담은 CD를 제작·배포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에도 공개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3-29] 2018년 결정례 동영상 내용

분 야	내 용
이주여성	이주여성에 대한 성추행
난민	난민 장애인 등록 거부
고용차별	종교집회 참석 거부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
아동인권	노키즈존

## 제3절 평가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였다. 그런데 「인권교육지원법」 제정과 인권연수원 설립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반대 여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인권연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마련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18년 기업인권교육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을 준비하는 모임 등이 수차례 열려 2019년에는 언론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담당자 및 인권보호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인권역량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된 것은 긍정적이다.

캐나다 에퀴타스(EQUITA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권정책발전과정은 큰 문제없이 치렀다. 사이버 인권교재를 발간하고, 공무원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기본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권교육에 법정 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였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2018년 4월 의무화되었고, 위원회는 노인인권분야 인권강사 양성을 통하여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강사양성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강사 양성 집합교육 시간을 기본과정 1, 2 및 전문, 심화과정 총 84시간으로 늘리고 사이버 교육을 선행 이수토록 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접목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 공동운영 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경찰교육연수원·국방부 등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공동 운영하였다.

노동분야 인권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인 학생 대상 교육과 학교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2018년 8월 위원회 권고 이후 기업 대상 인권교육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위원회 위촉강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강사의 신규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분야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학습 수요자 및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2018년 16만5,248명에 이르는 교육생을 뒷받침하고 있는 업무 기반은 열악한 상황이라 물적·인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기존 관련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원인권역량강화교육은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여 대상별·직무별 교육으로 운영 체계를 재편하는 등 직원교육과정의 체계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상별 교육과정으로는 ‘신규직원역량강화과정’과 ‘리더십역량강화과정’을 통해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자 하였고,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감동·소통리더십과정’을 새롭게 운영하여 여성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원회 조직 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행된 직무별 교육과정은 조사관학교, 인권정책학교 등 인권전문학교와 부서별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업무와 교육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는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 현안, 조사 및 구제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인권 의제를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보도자료는 출처를 밝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 신뢰도와 주목도 면에서 2018년 위원회의 언론공표 활동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또한 2018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결정,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혁신위원회 권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국민 사과 등 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및 현안 대응과 관련해 총 3회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이는 언론의 이해와 주목도를 높여 인권 현안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인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연재, 심층보도 등에 대한 기획이 요구된다.

2018년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주요 이슈가 되는 사안을 친근한 이미지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게재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인권 홍보를 확산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위원회 조사관의 활동을 소재로 한 ‘진정하세요’라는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TV를 통해 방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언제나 누구라도 위원회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잡지는 2018년에 쉽고 재미있는 대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생활 속 인권 이슈인 혐오와 차별, 갑질, 난민문제, 환경인권, 미투운동 등 시의적절한 인권 주제를 매호 특집으로 다루었다. 또한 잡지 내용의 다양성과 인권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 잡지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호 기획회의를 통하여 잡지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켰다. 〈인권〉잡지는 국가인권기구가 발행하는 인권 전문지임과 동시에 국민 교양지를 지향하며 콘텐츠와 디자인의 조화를 통한

‘읽는 잡지’, ‘보는 잡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여하고 그 행사가 언론에 생중계 되는 것 등은 위원회의 홍보와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인권사무소와 연계하여 인권영화제, 토론회, 사진전 등 다양한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한 것은 지역사회에 인권의식을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9호에 근거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의 옹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위원회는 2018년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9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권 현장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걸친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도 실시하였다.

우리 사회 인권 취약 분야인 난민 단식 농성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기구나 담당자들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박 3일간 인권옹호자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을 중심으로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GANHRI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다양한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을 재수임하여 노인인권 의제에 관한 국제 활동을 견인하였다.

또한 9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23차 APF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차기 연례회의 개최를 유치하여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7개국의 국가인권기구 직원을 선발하여 연수를 진행하였다.

##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가. 인권단체와 일상적 협력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2019년 업무계획수립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단체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2019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차기 연도 전반적인 업무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위원회와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적 관계를 더욱 활성화하였다.

또한 7월에는 2017년에 이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쿼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성소수자 인권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 나.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추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운동을 활성화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 인권 현안에 대한 시의 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 사업, ○○자동차 국가 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조사와 캠페인 사업 등을 선정해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활동 프로그램과 인권감수성 향상 및 관심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표 2-4-1] 2018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

구분	계	장애	노동	이주	인권교육	북한	청소년	여성	군	노인	의료
접수	34	5	4	6	6	3	3	3	1	1	2
선정	14	1	4	2	1	1	2	1	0	0	2

2018년 성폭력사건에 대한 온라인 보도 방송 모니터링,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 가사노동자 인권 캠페인과 전국 순회 교육토론회,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등 1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각 인권 영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2-4-2] 2018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 현황**

연번	단체명	사업명
1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제고사업 “나는 정신장애인이다”
2	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노동자 인권캠페인 및 전국 순회 교육·토론회
3	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드게임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프로젝트
4	심리치유센터 와락	○○자동차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 및 심리치유
5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실태조사와 캠페인
6	사) 인권의학연구소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7	사) 국제아동인권센터	북한의 아동권리 현황분석
8	재) 한국기독교연합 사업유지재단	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9	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HIV 감염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HIV / AIDS 감염인 영양병원 및 (예비) 의료인 교육사업
10	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입주민과 함께하는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사업
11	사) 휴먼아시아	난민인권 NPO 활동가 양성프로젝트

연번	단체명	사업명
12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 쑥쑥, 학생인권 Up-Date(오름 데이트)
13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성폭력사건에 대한 온라인 보도 방송 모니터링
14	사)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참정권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또한 모범적인 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7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표 2-4-3]** 2018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단체명 / 사업명	선정 이유
심리치유센터 와락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 및 심리치유	건강모니터링사업의 발표회 전후로 인터뷰와 언론기사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문제의 해결과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 일어난 부당한 국가폭력과정의 세부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건강모니터링사업과 심층인터뷰 과정을 통해, 해고자·복직자의 배우자들을 조직하고 연결하는 기회가 제공됨. 이 과정에서 배우자들의 목소리가 가시화할 수 있게 됨. 또한, 해고자·복직자·배우자의 건강 개선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실태조사와 캠페인	전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범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계획 시 목표했던 1,000건을 훨씬 넘는 1,215건의 유효 설문건수와 사례조사를 수집함. 보고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및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요 언론에 조사 결과가 보도됨. 보고회 전후로 주요 언론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주거환경에 대한 보도가 나감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 및 주목을 가져 오는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함.
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HIV 감염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HIV / AIDS 감염인 요양병원 및 (예비) 의료인 교육사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 대상 교육 사전/사후 인식 및 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옴. 지역 내에서 감염인 당사자 강사 및 인권 활동가를 발굴하고, 요양병원에서의 감염인 입원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등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는 등 인권 향상에 기여함.

단 체 명 / 사업 명	선정 이유
<p>참여와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입주민과 함께하는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사업</p>	<p>지방자치단체와 첫 협력사업으로 춘천시내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경비원 노동인권 개선의 필요성 공론화에 기여하였고, 춘천시 담당 부서, 춘천시의회와 공감대 형성 및 이후 지역 거버넌스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향상에 기여함.</p>
<p>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 쑥쑥, 학생인권 Up-Date</p>	<p>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결과물을 통하여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한 것은 큰 의미이며, 학생이 직접 본인 학교의 생활규정을 찾아보는 사업을 통하여 학생인권 활성화에 기여함. 학생인권 채점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차후 본인 학교 생활규정을 채점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p>
<p>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성폭력사건에 대한 온라인 보도 방송 모니터링</p>	<p>성폭력 보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하여 대중에 발표함. 언론의 성폭력 보도 문제점을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심화하여 기록 및 발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음. 모니터링 결과발표회 이후 언론보도가 진행되었고, 언론사 내 젠더 관점의 보도를 고민하고 있는 기자들과의 협업 논의가 진행되는 등의 인권친화적 언론보도 문화에 기여함.</p>
<p>사)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참정권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p>	<p>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의 청소년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 없이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의 문제를 알리는 등 청소년 참정권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강원, 충남 등 전국 지역에서 청소년 후보가 동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켰음. 광고를 통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도달 합계가 25만이 넘는 등 청소년 참정권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함</p>

## 다. 인권현장 방문 등 교류

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 취약 분야를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원회 정책과제 발굴, 시설 및 단체 관계자와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현안 논의 등을 위해 인권현장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인권현장을 총 10회 방문하였다. 청소년 참정권 요구 국회 앞 농성장, 광주트라우마센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논산 육군훈련소, 난민 단식 농성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침해 당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직접 청취하며, 위원회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2-4-4] 2018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연번	방문일	현 장	유 형	비 고
1	4. 17.	청소년 참정권 요구 국회 앞 농성장	17세 이하 선거권 연령 하향 요구 등	사무총장
2	5. 17.	광주트라우마센터	고문 국가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 치유기관	이성호 前 위원장
3	6. 18.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에이즈 예방과 교육사업, 전문상담실 운영 등	정상환 위원
4	7. 25.	논산 육군훈련소	혹서기 훈련병 인권 상황 및 훈련 실태 점검	최혜리 위원
5	9. 13.	청와대 인근 난민 단식 농성장	난민 신청자들의 인권과 건강 상태 점검 등	최영애 위원장
6	9. 17.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등	예멘 난민 신청자 및 지원단체 면담	정상환 위원 정문자 위원
7	10. 19.	광주광역시 성요한병원	정신장애인 치료 시설	최영애 위원장
8	11. 6.	국회 앞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농성장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요구 청취	최영애 위원장
9	12. 26.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현장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최영애 위원장 정문자 위원
10	12. 28.	○○○ 고공 농성 현장	장기 고공 농성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권 등 점검	최영애 위원장

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주한대사관 등 100개 이상의 단체와 기관이 참여한 퀴어문화축제에 성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 개선 홍보를 위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국가기관 처음으로 건물 외벽에 무지개 깃발을 부착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7월 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 위원회 소개 및 진정 접수 방법 등 안내, 인권 관련 동영상 상영, SNS용 인증사진 촬영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로 축제 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여 축제 참가자들의 메시지를 청취하고 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위원회 건물에 걸린 무지개 깃발

이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위원회의 공식적 행사 참가로 국가인권기구로서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였다.



퀴어문화축제 배포 기념품



게시판에 부착된 다양한 의견

## 라.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인권 협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위원회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기구나 담당자들의 소통과 자료 공유를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권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www.human-rightstogether.com).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주요한 성과로는 ‘2018 인권옹호자회의’를 들 수 있다.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담당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하여 2박 3일간 진행된 2018 인권옹호자회의에서는 인권행정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 단위에서 인권 협치 제도 구축 방안,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역할, 인권행정기구에 대한 지원 및 「인권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상호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하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권네트워크 구축



2018 인권옹호자회의

## 마. 인권위원 워크숍

국제인권동향 변화와 문화예술계 인권문제 등 새롭게 부각된 인권 이슈가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인권위원 워크숍을 5월 11일 개최하였다. 인권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 초청 특강 및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인권 의제를 발굴하였다.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였던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국제인권 동향과 포괄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하여 난민과 인종차별 문제, 국제평화 등 글로벌 인권 이슈를 논의하였고, 영화감독 임순례의 ‘문화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영화계의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들이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발전·강화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리더십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이다. 출범 당시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나, 2016년 3월 연례회의에서 명칭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 변경하였다.

위원회는 매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 및 집행이사회에 참가해 다자간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월 제31차 연례회의에서 정관 개정, 장애인권, 노인인권, 실향민 보호, 제13차 국가인권기구대회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실무그룹 활동에 관하여 유엔 총회에서 브리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위원회의 국제적 리더십을 제고하였다.

#### 2)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역조정기구로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 지원, 국제인권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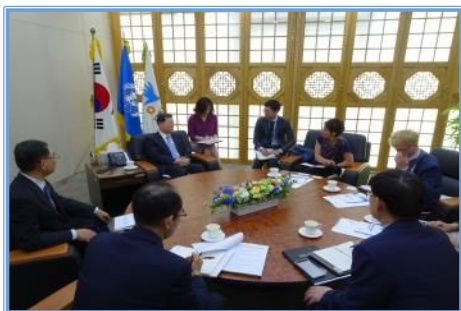
위원회는 9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23차 APF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연례회의에서는 APF 거버넌스 위원회 선출, GANHRI 부의장 선출,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등 국제 활동, APF 회원기구 국내 주요 인권 의제 및 인권기구 활동, APF 성과 보고서, 연례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19년 개최 예정인 제24차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 개최지를 논의하였는데, 위원회는 차기 APF 연례회의와 격년 콘퍼런스를 유치하여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내에서 더욱 중심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 나. 유엔기구·기타 인권 관련 기구와 협력

종교의 자유에 관한 유럽연합특사 안 피겔(Jan Figel),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이반 시모노비치(Ivan Simonovic), 유엔적정주거특별보고관 레알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인권사무차장보 앤드류 길모어(Andrew Gilmour), 유엔피해자권리옹호관 제인 코너(Jane Connors), 휴먼라이츠워치 사무국장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등 국제인권기구 대표들과 호주복지부 부장관 제인 프렌티스(Jane Prentice), 스위스 외교차관 파스칼 베리스빌(Pascale Baeriswyl), 카자흐스탄 고위급 정부대표단, 주한 영국 대사, 스위스 대사, 스웨덴 대사, 유럽 연합 대사 등 외국 기관 대표들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엔적정주거특별보고관 접견(5. 14.)



유엔피해자권리옹호관 접견(10. 15)

## 1) 유럽연합기본권기구(FRA) 방문

위원회는 2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유럽연합기본권기구(FR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를 방문하고 마이클 오플레어티(Michael O'Flaherty) 대표 등을 만나 유럽연합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이행 메커니즘,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평등권의 실현 등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럽연합기본권기구는 28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 주민의 기본권 및 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유럽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 국가 인권기구 등과도 활발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은 향후 연구 사례 공유, 국제행사 상호 참여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 2)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

위원회는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캐나다 국가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오타와 인권연구교육센터(Ottawa Human Rights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온타리오 대안분쟁해결기구(ADR Institute of Ontario), 이갈 캐나다(Egale Canada, LGBT Human Rights Organization) 등 인권기구를 방문하였다.



캐나다인권위원회, 오타와 인권연구교육센터 방문(11. 26.)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온타리오 대안분쟁해결기구(11. 27.)

이번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은 혐오·차별·배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양극화 및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 혁신적 개선 등 위원회 4대 중점업무 추진과 관련해 캐나다의 선진 인권제도 등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진행되었다.

#### 다.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및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몰디브, 몽골 등 7개국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2018년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2018 Partnership Program for Human Rights Defenders)를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였다.



초청연수자 인권도서관 방문(6. 25.)



2018년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수료식(6. 29.)

매년 실시하는 이 사업은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소속 국가인권기구 직원을 초청하여 주요 인권 이슈와 국가인권기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인권기구 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지역적·국제적 인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소속 국가인권기구 개요, 활동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워크숍 활동을 했고, 국제적 및 지역적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이슈인 국제인권시스템, 사형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등에 관한 각 국가의 현황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국회 등 기관 방문과 문화탐방을 병행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제도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외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는 인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2개국 73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초청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3. 국제회의 개최

위원회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제3차 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제3차 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에는 51개국 501명이 참석하여 아셈 회원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최영애 위원장, 마틴 가르시아 모리탄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을 비롯하여 아셈 회원국의 장·차관 9명, 정부 대표단 29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인도 사회정의부 장관, 중국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등 인구문제 주요 국가의 고위 인사가 참석하였다.

콘퍼런스에서는 지난 2차 콘퍼런스 결과 보고와 함께 회원국의 노인인권 진전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장기요양·완화치료 확산 방안,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 해소 방안,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인인권 보호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아셈 회원국의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역시 자국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최영애 위원장 개회사

또한, 콘퍼런스에서는 신설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에도 노인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 4. 직원 국외 연수

### 가. 인권현장훈련

위원회는 2018년 국외인권현장훈련을 2018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였다. 이번 인권현장훈련은 ‘인권친화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 인권기구의 역할 및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직원 5명이 참가하였다. 훈련 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캐나다 국가인권위원회, 캐나다 인권재판소, 온타리오 인권법률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인권현장훈련은 인권조례의 확산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나. 국외훈련

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8년 국외위탁훈련으로 국외장기훈련생 1명과 국외단기훈련생 2명을 파견하였다. 국외장기훈련은 ‘인권에 기반을 둔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 및 모델 연구’를 훈련 과제로 미국(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훈련생을 파견하였다. 상·하반기 진행되는 국외단기훈련에는 ‘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가 과제로 선정되어, 훈련생들은 미국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 부설 양탄연구소(Conell University, ILR School(K. Lisa Yang and Hock E. Tan Institute on Employment and Disability)와 미국 하와이대 장애학연구소(Center of Disability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Manoa)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제3절 평가

위원회는 인권감수성 증대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인권 이슈를 더욱 정확하고 친숙하게 알리려 하였다.

2018년에는 인권옹호자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 의제에 대해 논의를 시도한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논의의 장들이 지속성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 위원회가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활동을 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제31차 GANHRI 연례 회의에서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재선임되었으며, 실무그룹 활동에 관해 유엔 총회에서 브리핑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제고하였다. 또한 제23차 APF 연례 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를 강화하였으며, 차기 APF 연례 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를 유치하여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내에 영향력을 강화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3차 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및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의 노인인권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7개국의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를 통해 국제인권 시스템, 사형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등에 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며 국가인권기구 간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유엔적정주거특별보고관, 유엔피해자권리옹호관, 주한 영국 대사, 스위스 대사, 스웨덴 대사, 유럽연합 대사 등 외국 기관 대표들과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유엔기구 및 다양한 국가와 인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류를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유럽연합기본권기구(FRA)를 방문하여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 보장, 평등권의 실현 등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캐나다 인권기구를 방문하여 위원회의 4대 중점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선진 사례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전통적인 활동 범위인 유엔, GANHRI, APF, 인권 관련 주요 국제기구를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의 아셈 회원국 정부 등 다양한 주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권현장훈련은 해외 인권 현장 및 인권기구 방문, 교류를 통해 국제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 이슈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해외 사례 연구, 검토를 통해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인사 혁신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국외훈련은 국내외 인권 현안은 물론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과제로 선정하여 훈련 종료 후 위원회 정책·조사 업무 등에 활용함으로써 직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 ● 제5장 인권사무소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 기관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에 5개의 인권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0월 부산인권사무소와 광주인권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대구인권사무소, 2014년 10월 대전인권사무소, 2017년 6월 강원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다.

**[표 2-5-1]** 인권사무소 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인권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인권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인권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인권 상담, △경찰,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 군 제외),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구급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조사·구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체험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제2절 주요 활동

### 1.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2018년 인권사무소는 진정사건 2,125건, 상담 9,173건, 민원·안내 5,959건을 접수하였다. 이는 2017년보다 진정사건은 222건(9.5%), 상담은 405건(4.2%)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진정사건은 대전인권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인권사무소에서 감소하였고, 상담도 대전·강원인권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인권사무소에서 감소하였다.

**[표 2-5-2]**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인권사무소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합계	2018	2,125	9,173	5,959	17,257
	2017	2,347	9,578	6,238	18,163
부산	2018	516	2,060	1,437	4,013
	2017	529	2,425	1,343	4,297
광주	2018	400	2,570	1,804	4,774
	2017	625	2,787	2,024	5,436
대구	2018	391	1,972	802	3,165
	2017	498	2,125	1,367	3,990
대전	2018	682	2,178	1,005	3,865
	2017	518	2,146	1,497	4,161
강원	2018	136	393	911	1,440
	2017*	177	95	7	279

\* 강원인권사무소 2017년 통계는 개소일(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 합계이다.

##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2018년 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접수 건수는 1,864건이며, 종결처리 건수는 1,870건이다. 종결처리 면전진정 중 359건(19.2%)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855건(45.7%)이 상담종결, 656건(35.1%)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되었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면전진정 접수 건수는 117건(5.9%), 종결처리 건수는 169건(8.3%)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대부분의 인권사무소에서 면전진정 접수 및 종결 처리 건수가 감소하였다.

**[표 2-5-3]**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인권 사무소	연도	접수	처 리						
			소계	진정접수	상담종결	철회			
합계	2018	1,864	1,870	359	19.2	855	45.7	656	35.1
	2017	1,981	2,039	449	22.0	1,000	49.0	590	28.9
부산	2018	574	604	116	19.2	280	46.4	208	34.4
	2017	676	676	146	21.6	325	48.1	205	30.3
광주	2018	445	432	88	20.4	184	42.6	160	37.0
	2017	427	450	112	24.9	187	41.6	151	33.6
대구	2018	490	483	67	13.9	238	49.3	178	36.9
	2017	571	599	102	17.0	348	58.1	149	24.9
대전	2018	257	258	59	22.9	119	46.1	80	31.0
	2017	270	278	74	26.6	129	46.4	75	27.0
강원	2018	98	93	29	31.2	34	36.6	30	32.3
	2017*	37	36	15	41.7	11	30.6	10	27.8

\* 강원인권사무소 2017년 통계는 개소일(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 합계이다.

### 3. 진정사건 처리

2018년 인권사무소에 배당된 진정사건 건수는 3,023건이며, 처리 건수는 3,178건이다. 권리구제 건수는 총 332건으로 고발·수사 의뢰 4건, 권고 등 97건, 합의종결 19건, 조사중해결 212건이다.

2017년과 비교해보면, 진정사건 배당 건수는 1,015건(25.1%), 처리 건수는 638건(16.7%)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대부분의 인권사무소에서 배당 및 처리 건수가 감소하였다.

**【표 2-5-4】** 인권사무소 최근 2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인권 사무소	구분	배당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2018	3,023	3,178	332	4	97	-	19	212	1,936	18	882	10
	2017	4,038	3,816	420	1	116	1	20	282	2,243	55	1,098	-
부산	2018	697	695	77	-	19	-	5	53	421	7	190	-
	2017	889	876	86	-	25	-	2	59	527	13	250	-
광주	2018	656	680	80	2	17	-	3	58	377	-	213	10
	2017	953	908	101	-	35	-	8	58	514	13	280	-
대구	2018	776	747	96	2	21	-	7	66	450	5	196	-
	2017	949	940	141	1	31	1	6	102	481	11	307	-
대전	2018	682	744	67	-	35	-	1	31	439	4	234	-
	2017	987	983	85	-	21	-	4	60	647	18	233	-
강원	2018	212	312	12	-	5	-	3	4	249	2	49	-
	2017*	260	109	7	-	4	-	-	3	74	-	28	-

※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피권고기관의 권고 수용 여부 회신 의무가 있는 합의권고, 구제조치 권고, 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합

※ 조사중해결 : 각하 및 기각 건 중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등에 의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강원인권사무소 2017년 통계는 개소일(2017. 6. 1.)부터 2017. 12. 31.까지 합계이다.

## 4. 인권교육

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인권강사양성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을 실시하였다.

2018년 인권사무소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은 총 2,200회(8만5,018명)이며, 유형별로는 인권강사양성과정 54회(926명), 인권감수성향상과정 39회(831명), 의무교육 121회(7,119명), 방문교육 481회(8,497명), 인권특강 1,505회(6만 7,645명)로 인권특강을 통한 인권교육이 가장 많았다.

[표 2-5-5] 2018년 인권사무소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건, 명)

인권 사무소	합 계		강사양성과정		감수성향상		의무교육		방문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2,200	85,018	54	926	39	831	121	7,119	481	8,497	1,505	67,645
부산	652	26,519	9	147	14	368	37	2,821	86	1,730	506	21,453
광주	359	12,120	9	224	13	121	24	1,082	96	1,655	217	9,038
대구	527	17,257	13	223	8	242	32	2,074	138	2,064	336	12,654
대전	542	22,271	8	190	4	100	21	743	151	2,850	358	18,388
강원	120	6,851	15	142	-	-	7	399	10	198	88	6,112

특히 부산인권사무소의 경우 경찰 대상 인권교육 수강 인원이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약 1.7배(2017년 24회, 3,514명, 2018년 총 77회 6,243명) 증가하여 최근 2년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부산인권사무소는 경찰 대상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과 2018년 9월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교육 실행 방식과 콘텐츠를 개선하는 등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 가. 홍보

####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혐오와 차별 철폐’를 주제로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인권캠페인(9월 마산야구장), △울산인권마라톤대회 인권 캠페인(11월 울산 태화강 둔치), △부산문화다양성축제 인권캠페인(5월 해운대 구남로 광장), △세계인권선언의 날 인권캠페인(12월 부산 서면 광장)을 펼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2018년 7월에는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장애인 인권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장애인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 총 28점(사진작가 김중만, 마르쿠스 마르세틱)을 전시하고, 도슨트 프로그램(전시작품 해설)을 운영하였다. 전시실 중앙에는 약 200종의 어린이 인권도서를 병행 전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등 인권문화 교육 복합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인권 사진전 개막 기념 인권특강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장애인 인권 사진전 도슨트 프로그램

또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인권작품전시회, 인권영화상영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인권특강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지역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 골든벨>을 진행하였고, <인권 블로그>를 운영, 광주인권사무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지역에 인권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광주인권사무소 개소 13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인권사무소의 조사구제 활동을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지역별 언론사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성소수자, 난민, 노인, 장애 분야의 40여 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혐오와 차별을 주제로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질 당시의 인권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인권선언 기념주간에는 <찾아가는 인권 영화관>을 전남에서 운영하고 위원회 및 인권 전반에 대한 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행사



인권골든벨 행사

##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 지역 케이블방송인 CJ헬로비전을 통해 특집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대구 KBS 고정 라디오 프로그램 코너 개설을 추진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 개소 11주년을 맞이하여 대구인권사무소의 활동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지역 언론지와 방송을 통한 특별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기념주간 동안 음악회와 영화제, 릴레이 인권특강 등도 공동 주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는 2018년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온·오프라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온라인을 이용한 인권문화 확산 사업으로 충청남도 도정신문에 ‘만화로 보는 세계인권선언문’을 연재하고, 대전CMB 방송을 통해 세계인권선언문을 연중 방송하였으며, 충청투데이 신문에 ‘이야기로 풀어보는 위원회 결정례’를 연재하였다. 또한 대전인권사무소 ‘블로그 퀴즈 이벤트’를 연중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SNS 홍보에도 주력하였다.

지역문화 축제 등을 이용한 현장 홍보를 통하여 생활형 인권의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NGO 한마당축제, 충남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 어린이날 기념 아동인권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홍보를 실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인권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는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 인권 사진전, 인권특강과 인권영화 상영회, 개소 1주년 토론회, 취약현장방문 및 봉사활동, 언론 간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생 조직인 강원인권사무소를 적극 홍보하였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장애인 인권 사진전, 찾아가는 인권영화 상영회, 여성인권토론회, 70주년 기념식 및 인권음악회, 청소년 인권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강원인권사무소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인권 현안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인권기자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인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블로그를 개편하여 개편 전 월 평균 94명에 불과하던 방문자 수가 개편 후 1,200여 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나. 인권체험관(인권전시관)

###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전시관은 2018년에 세월호 참사 4주기 사진전, 환경과 인권 사진전, 위원회 결정례와 인권상당사례를 시각화한 일러스트 작품 프로젝트 등을 기획·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2018년 인권전시관 방문객 수는 총 1만2,464명으로, 개관 이후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730명(학생, 장애인, 경찰 및 의경,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86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제공하였다.



〈소리없는 밤, 짙은 어둠으로 남았다〉  
세월호 참사 4주기 사진전



인권체험교육 운영

##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인권테마역사는 일상적 인권을 다룬 각종 포스터와 미술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공간으로, 지역민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인권감수성을 고취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149회에 걸친 참여형 프로그램에 총 2,924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관내 학교 인권체험공간인 서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소년자원봉사 인권활동터전으로 입지도 다지고 있다. 2018년 인권테마역사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을 초대, 인권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나의 세계인권선언 쓰기 시간을 가졌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5번 주출 입구에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내용과 포스터를 새롭게 교체하여 이용객들에게 '인류가 만든 가장 고귀한 약속'으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대구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을 열어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138회에 걸쳐 2,064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지방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인권체험관에서 인권감수성과정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내 인권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았던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대전인권사무소

2018년 학생, 시민, 장애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850명이 151회에 걸쳐 인권체험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전시 관람에는 1,504명이

참여하는 등 연간 총 4,354명이 인권체험관을 이용하여 지역의 인권가치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국방대학교와 대전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관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전인권체험관은 분야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단 14명을 위촉하여 분야·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는 인권에 대한 체험을 통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예방 기능을 확대하고자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인권체험공간을 마련하여 2019년 2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될 체험공간에서는 인권 가상현실(VR) 체험,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인권협약 알아보기, 인권영화 및 애니메이션 감상, 인권 보드게임, 인권 낱말 퀴즈, 인권 룰렛 게임, 인권포토존 등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직접 인권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은 4가지 유형(중심시력장애, 주변부 시야장애, 비특이성 시력장애, 매질혼탁)의 저시력 시각장애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구성할 것이다.

또한 인권체험관 내 인권전시관에서는 월별 주요 기념일(3월 여성의 날, 4월 장애인의 날 등)을 토대로 인권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테마별 자료 전시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 다. 기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 부산인권사무소



학교규칙 모니터링단 워크숍(4. 11.)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학교규칙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학교규정 개정을 유도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지역 중학교(총 174개교)의 학교규칙을 전수 검토하고, 567개 규정 내 인권침해 요소가

담긴 3,500여 개 조항에 대하여 각 학교에 개정을 권장하였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업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스킨십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인권 업무 강화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광역단체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현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중요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인권 행정 및 정책 실행에 관한 실무자들의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부산광역시와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경남지역 인권옹호자 대상 인권워크숍을 개최하여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와 상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권리옹호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조사지원 및 전문가 자문 등) 체계를 강화하여 진정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실질적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인권보호 업무를 중심



부산·울산·경남 인권옹호네트워크 발족

으로 하는 기관(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2018년 5월 31일 ‘인권옹호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네트워크 기관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인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광주인권사무소

2018년 한 해는 기관 및 다양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 대학 내 인권센터가 개소·설립됨에 따라, 인권센터 워크숍을 열고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외 지역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 신장을 위해 여성 및 장애, 정신장애분야로 특화된 분야별 네트워크를 총 4회 운영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피해자 및 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광주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폭력 피해와 진정한 치유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민·관·학 공동 학습 및 소통의 공간인 <광주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10회 운영하면서 「차별금지법」, 예멘 난민, 미투운동, 한반도 평화, 신안염전 노예사건 등 다양한 주제로 전국의 인권 이슈를 환기하고 학습을 통한 정책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3차 인권상담네트워크



제59차 광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협력 대상 지역을 위원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북 권역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인권 거버넌스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화 단계별 자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내 인권센터 워크숍을 통해 인권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등과 자문 및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분야의 경우 지역 장애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부모회 등과 장애인권 네트워크를 운영, 장애인 인권증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 대구시 인권옴부즈만, 대구시 인권증진팀과 함께 지역주민 인권개선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경북 행복재단과 함께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증진 활동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구인권사무소는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요청에 따라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의원 당선자 및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는 지역 인권 현안 공유 및 단체,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인권상담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였다.

장애·노인분야 권익옹호기관 상담사례 발표회, 이주분야 인권활동가 사례 발표회, 인권행정 네트워크 회의, 충청권 학생인권 워크숍, 대학 인권센터 인권상담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과 연계하여 성소수자, 정신장애인 등 관련 인권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충북 지역 대상 인권특강, 충남 지역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도 실시하였다. 분야별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필진을 구성하여 블로그에 인권 에세이를 게재하고, 인권독서모임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사무소는 인권 관련 기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인권문화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우선 강원지역 13개 주요 단체로 구성된 상시적 협력체계인 소통협력위원회를 통해 강원 지역 내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인권단체와 연계해 원주여성 영화제, 속초·원주·춘천 장애인영화제 등 총 8회에 걸쳐 인권상담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인권단체와 50회 이상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강원인권사무소는 소통협력위원회, 강원도청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강원인권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강원지역 인권옹호자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크숍을 인권활동가뿐만 아니라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강원지역 권익옹호기관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강원지역 인권옹호자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였다.(11.22.~23.)

한편 강원인권사무소는 원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원주시의원 대상 인권특강을 진행하였고(11.12.), 강원도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인재개발원에 강원지역 최초로 인권과정을 개설하였으며(6.7.~8.),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인권경영 관련 위원회 최초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4.24.)



## 제3절 평가

부산인권사무소는 진정사건 조사 시 대면조사와 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현장성을 강화하고, 장애인단체 노숙농성 현장,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 집회 현장, 인권조례 개정 반대 집회 현장 등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현안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8년은 부산·경남·울산 교육청과 함께 학교분야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부산대학교 인권센터,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등 인권교육의 외연을 확장한 해였다. 또한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였다. 앞으로 ‘기업과 인권’, ‘형사 절차와 인권보호’와 같은 특수(전문) 분야 강의를 전문적으로 이끌 인적 자원 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조례 이행과 지역인권기구 설치 등 지역인권제도 구축에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부산인권사무소 관할지역(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지역 인권제도의 발전이 시작 단계에 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지방자치단체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 인권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을 높이고,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 2019년에도 지방정부가 인권정책·교육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담당조사관제 운영> 및 <주요사건 조사관 토론>을 실시하였다. 특히 광주인권사무소 관할인 제주 예멘 난민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자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권옹호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조사와 문제 해결 모색에도 힘썼다.

한편 <2018 세계 인권도시 포럼> 개최 시에는 공무원 네트워크 특별세션 및 부대행사로 장애인 사진전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인권 현안에 대해 지역 언론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매체와 협력하였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70주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 트라우마센터, 광주인권회의 등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인권기념주간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인권영화상영 등 지역에 인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장애, 이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분야 인권강사 양성, 발달장애인 인권강사양성과정 공동협력과정,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등을 기관 및 단체와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여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의식 확산과 인권 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권 실현’, ‘인권의 지역화’를 목표로 인권침해, 장애차별 사건 등에 신속한 조사구제 활동과 인권교육, 홍보,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조사관 토론회와 협업체계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권 심사구조표를 활용하여 권리구제 효과를 높였으며, 처리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지역에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권리옹호기관과 인권중심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지역별 인권증진 네트워크를 다져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 데도 힘썼다.

아울러 인권의 가치와 위원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지역 라디오방송, 인터넷 신문사 등 다양한 매체와 협력하였고, 특히 2018년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경찰청 등 지역 기관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형 인권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차별예방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2013년 인권체험관을 개소하고, 2015년 대구인권교육센터를 개관하여 다양한 형태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공기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대학교 인권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하였고, 대구인권사무소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인권을 통한 교육’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힘썼다.

대전인권사무소는 2018년 한 해 충청남도, 충북 증평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폐지 및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반동성애 단체의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는 활동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인권 현안 전반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하였다. 또한 인권체험관에 재방문하는 기관 및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체험관의 장기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권체험관 입주시설의 안정화, 체험 교구,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강원인권사무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개소 1주년 기념행사,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행사를 통해 강원지역에 인권문화가 확산되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기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소통협력위원회와 강원인권포럼이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강원인권사무소 설립 이후 최초로 시의회의원 대상 인권특강,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권과정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인권경영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강원지역이 워낙 광범위함에 따라 모든 지역에 균형 있는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부 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289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304
3. 2018년 결산 | 314
4. 2018년 상담·진정 통계 | 315
5. 2018년 업무 총괄도 | 317
6. 2018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 318
7. 2018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334
8. 위원회 간행물 | 335
9. 보도자료 | 338
10. 사진으로 보는 2018년 | 347
11. 위원회 소관 법규 | 361
12. 위원회 활동일지 | 365
13.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 37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8**

#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2018. 12. 31. 기준)

## 가.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 ■ 인권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선출·지명권자(임기)
 위원장 <b>최영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li> <li>•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li> <li>•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li> <li>•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li> <li>•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li> <li>•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li> <li>•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장</li> </ul>	대통령 지명 (2018. 9. 4.~ 2021. 9. 3.)
 상임위원 <b>정상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회 사법시험 합격</li> <li>•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li> <li>•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li> <li>• 청주지검 차장검사</li> <li>• 수원지검 1차장검사</li> <li>•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li> <li>• 법무연수원 연구위원</li> <li>•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li> </ul>	국회 선출 (2016. 3. 22.~ 2019. 3. 21.)
 상임위원 <b>최혜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방법원 판사</li> <li>• 서울가정법원 판사</li> <li>•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li> <li>• 정부법무공단 변호사</li> <li>•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li> <li>•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li> <l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li> <li>•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li> </ul>	대통령 지명 (2016. 11. 28.~ 2019. 11. 27.)
 상임위원 <b>정문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li> <li>•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li> <li>•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li> <li>•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li> <li>•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장</li> <li>•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li> <li>•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li> </ul>	국회 선출 (2018. 6. 22.~ 2021. 6. 21.)

성 명	주 요 경 력	선출·지명권자(임기)
 인권위원 <b>장애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국대학교 불교대 학장 및 대학원장</li> <li>•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장</li> <li>•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li> <li>•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li> <li>• 대한불교조계종 원교사 주지</li> <li>•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이사</li> <li>•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li> <li>• 일본인도학불교학회 평의원</li> <li>• 대한불교조계종 총회의원</li> </ul>	대통령 지명 (2016. 6. 16.~ 2019. 6. 15.)
 인권위원 <b>김기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li> <li>•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li> <li>•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li> <li>•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li> <li>•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li> </ul>	국회 선출 (2016. 9. 23.~ 2019. 9. 22.)
 인권위원 <b>한수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법무부(독일변호사)</li> <li>• 헌법재판소 연구관</li> <li>•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li> <li>•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ul>	대법원장 지명 (2017. 2. 1.~ 2020. 1. 31.)
 인권위원 <b>조현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li> <li>• 대한변호사협회 일·가정양립위원회 위원장</li> <li>•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피해자지원특위 위원장</li> <li>• 언론중재위원회 위원</li> <li>•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li> <li>•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li> </ul>	대법원장 지명 (2017. 6. 21.~ 2020. 6. 20.)



성명	주요 경력	선출·지명권자(임기)
 인권위원 <b>배복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li> <li>•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li> <li>•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위원</li> <li>•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li> <li>•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li> <li>• (사)장애여성공감 대표</li> </ul>	대통령 지명 (2017. 12. 15.~ 2020. 12. 14.)
 인권위원 <b>임성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로비의혹사건 특별수사관</li> <li>•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li> <li>• 장애인법연구회 회장</li> <li>• 우체국공익재단 감사</li> <li>•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li> <li>•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li> <li>•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li> </ul>	대법원장 지명 (2018. 8. 27.~ 2021. 8. 26.)
 인권위원 <b>김민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li> <li>•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li> <li>•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li> <li>•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li> <li>•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li> <li>•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ul>	국회 선출 (2018. 8. 27.~ 2021. 8. 26.)

## ■ 역대 위원장

성 명	주 요 경 력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li> <li>•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li> <li>•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li> <li>• 참여연대 공동대표</li> <li>•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li> </ul>	2001. 11. 25. ~ 2004. 12. 23.
 제2대 위원장 최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li> <li>•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li> <li>•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li> <li>•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li> <li>• 참여연대 공동대표</li> </ul>	2004. 12. 24. ~ 2005. 3. 22.
 제3대 위원장 조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li> <li>•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li> <li>•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li> <li>•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li> <li>•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li> </ul>	2005. 4. 4. ~ 2006. 10. 1.
 제4대 위원장 안경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li> <li>• 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li> <li>•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li> <li>•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li> <li>•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li> </ul>	2006. 10. 30.~ 2009. 7. 5.

성 명	주 요 경 력	재 임 기 간
 <p>제5~6대 위원장 <b>현병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장</li> <li>• 한양대학교 사무처장</li> <li>•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li> <li>•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li> <li>•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li> <li>•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li> </ul>	<p>2009. 7. 17.~ 2015. 8. 12. * 2012. 8. 13. 연임</p>
 <p>제7대 위원장 <b>이성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회 사법시험 합격</li> <li>• 대법원 재판연구관</li> <li>• 대전지법 천안지원 지원장</li> <li>•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li> <li>• 특허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li> <li>•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li> <li>•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장</li> <li>• 서울특별사건관리위원회 위원장</li> <l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려화실무그룹 의장(2016~)</li> </ul>	<p>2015. 8. 13.~ 2018. 9. 3.</p>

## ■ 역대 위원

구분 / 성명	주요 경력	재임 기간
상임위원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2001. 11. 25. ~ 2004. 12. 23.
상임위원 유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7. 20.
상임위원 유시춘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2001. 11. 25. ~ 2004. 3. 12.
인권위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 11. 25. ~ 2003. 2. 23.
인권위원 김덕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1. 11. 25. ~ 2005. 3. 14.
인권위원 김오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01. 11. 25. ~ 2002. 11. 29.
인권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조미경	아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류국현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2002. 12. 12. ~ 2003. 2. 23.
인권위원 이흥록	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변호사	2003. 5. 1. ~ 2005. 4. 18.
인권위원 김만흠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2003. 8. 1. ~ 2006. 10. 24.
상임위원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4. 7. 23. ~ 2007. 9. 20.
상임위원 김호준	서울신문 편집국 국장, 논설주간	2004. 12. 24. ~ 2008. 2. 3.
상임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나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12. 24. ~ 2006. 6. 28.
인권위원 이해학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2004. 12. 24. ~ 2006. 12. 31.
인권위원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신혜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05. 3. 15. ~ 2008. 3. 19.
인권위원 원형은	부산기독교협의회 회장	2005. 6. 1. ~ 2008. 9. 9.
인권위원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6. 8. 10. ~ 2012. 8. 9.
인권위원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2006. 10. 25. ~ 2009. 12. 28.
인권위원 정재근	조계종 금선사 주지	2007. 2. 8. ~ 2010. 2. 7.
상임위원 최경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2007. 9. 21. ~ 2010. 10. 10.

구분/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상임위원 유남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2007. 12. 24. ~ 2010. 11. 4.
인권위원 조 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 12. 24. ~ 2010. 11. 15.
인권위원 황덕남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7. 12. 24. ~ 2011. 1. 18.
상임위원 문경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2008. 2. 4. ~ 2010. 11. 4.
인권위원 최윤희	건국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008. 9. 4. ~ 2012. 1. 2.
인권위원 김양원	사회복지법인 엘리엘동산 복지재단 이사	2008. 9. 10. ~ 2011. 9. 27.
인권위원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대표 변호사	2009. 12. 29. ~ 2012. 6. 27.
인권위원 한태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2010. 2. 8. ~ 2016. 6. 15.
상임위원 장향숙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2010. 10. 11. ~ 2012. 1. 12.
상임위원 김영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0. 11. 15. ~ 2016. 11. 27.
인권위원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1. 19. ~ 2014. 1. 18.
상임위원 홍진표	(사)시대정신 이사	2011. 2. 21. ~ 2014. 3. 6.
인권위원 김성영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2011. 9. 28. ~ 2014. 11. 2.
인권위원 박란주	법무법인 민 변호사	2012. 1. 3. ~ 2015. 2. 4.
상임위원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2012. 3. 8. ~ 2015. 3. 15.
인권위원 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2012. 8. 13. ~ 2016. 9. 22.
상임위원 유영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14. 3. 7. ~ 2016. 1. 12.
인권위원 윤남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2011. 1. 19. ~ 2017. 1. 31.
인권위원 이선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4. 1. 19. ~ 2017. 3. 23.
인권위원 최이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	2014. 11. 3. ~ 2017. 12. 14.
상임위원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공동대표	2015. 3. 16. ~ 2018. 6. 21.
인권위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015. 2. 5. ~ 2018. 8. 26.
인권위원 한위수	서울고법, 대구고법 부장판사	2012. 8. 10. ~ 2018. 8. 26.

## ■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간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p>사무총장 <b>조영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li> <li>•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li> <li>•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li> <li>•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li> <li>•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위원장</li> </ul>	 <p>기획조정관 <b>이석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이주인권팀장</li> <li>• 위원회 비서실장</li> <li>• 위원회 인권정책과장</li> <li>• 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li> </ul>
 <p>정책교육국장 <b>심상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li> <li>• 위원회 총무과장</li> <li>• 위원회 정책총괄팀장</li> <li>• 위원회 혁신인사팀장</li> <li>• 위원회 조사총괄과장</li> <li>• 위원회 조사국장</li> </ul>	 <p>침해조사국장 <b>최재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li> <li>• 위원회 인권상담센터장</li> <li>• 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li> <li>• 위원회 조사총괄과장</li> </ul>
 <p>차별시정국장 <b>강문민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전남연합 인권담당</li> <li>• 광주인권운동센터 사무국장</li> <li>• 국가인권위원회 준비단</li> <li>• 광주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li> </ul>		

## 나.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 정책자문위원회

성명	주요경력
송상현(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재판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곽란주	법무법인 민 변호사, 전 인권위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전 인권위원
김휘원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라종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문병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벤처미디어 대표이사
박재욱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 겸 디자인경영센터장
박종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	前 국악방송 사장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춘택	前 제25대 공군참모총장
배일성	前 육군 군수 사령관
서병진(성운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석좌교수
오혜정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장
이공현	원불교 은덕문화원 원장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복실	前 여성가족부 차관
이우근	법무법인 총정 고문변호사
이현청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임정근	前 가천대학교 음악대학장,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성악전공 명예교수
조창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유엔 세계연맹 부회장
하정열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이사장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전문위원회

### 1) 사회권전문위원 (위원장 : 정상환 상임위원)

분 야	성 명	주 요 경 력
사회권 일반	이 선 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 진 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미 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 형 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차 성 안	군산지방법원 판사
	정 경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은 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동권	박 귀 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성 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 광 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 지 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애 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정 소 연	법률사무소 보다 대표, 변호사
건강·환경·생명권	전 형 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 준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구 도 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김 나 경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주거권	홍 인 옥	한국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이 종 태	(사)한국해비타트 사업관리본부장
교육권	김 대 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문화권	김 남 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기 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2) 인권교육전문위원 (위원장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최혜리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정화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용구	한국 CSR 평가 상무
유병열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창범	인터넷법학회 부회장	김현옥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장
이필우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노석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임연욱	한양사이버대 교육공학과 교수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대표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 소장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돈민	상지대학교 교직과 교수	이기규	서울초당초등학교 교사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3) 국제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라종일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이영애	법무법인 산지	조창범	유엔협회 세계연맹 부회장
최석영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혜수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		

## 4) 자유권제1전문위원 (위원장 : 최혜리 상임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경용	법무법인 L.K.B.&Partner 변호사
최관호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수연	법률사무소 가인 변호사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윤상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신양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주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욱한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육성필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총장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자유권제2전문위원 (위원장 : 정문자 상임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윤종철	노인전문용인병원 진료부장(정신과)
김예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의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이은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
김정란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주원	작은손길 사무국장
김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태정	성공회대학교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남철관	(사)나눔과미래 국장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이현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형길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석원정	외노협 운영위원,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장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민혜	건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학전문대교수(예방의학)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최해경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6) 차별시정전문위원 (위원장 : 정상환 상임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숙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상욱	법무법인 울촌 변호사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울 변호사
정형욱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최갑선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	-

7) 장애인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정상환 상임위원)

분야	성명	주요 경력
장애차별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박속경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정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장애시설	서정희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이동석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마명원	법무법인 지후 변호사
	김경미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귀자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관장
	김명연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정신장애	문용훈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회장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전문의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훈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8) 아동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정문자 상임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 교수
안동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균	(사)아동행복포럼 고문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진호	부천실업고등학교 교감	손귀남	한양초등학교 교무부장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욱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시민인권보호관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 ■ 조정위원회

### 1) 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김희은	(사)여성사회교육원장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영봉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	최경원	변호사
채근직	변호사		

### 2) 성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3) 장애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강영심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승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대표 변호사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	염형국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 4) 인권침해조정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이림	이림·김태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형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환	경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태원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행정심판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경력
당연직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최재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위촉직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왕미양	법무법인 탐 서초분사무소 변호사
	강수경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주교	정주교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선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진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경아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가. 전원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

회 차	의 안 명	구분
2018-01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의견서(안) 심의의 건	의결
2018-01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권고사항 보고의 건	보고
2018-01	총기 입출고시 2인 이상 동행 요구 등	의결
2018-02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의 건	의결
2018-02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의결
2018-03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 경과 및 권고사항 보고	보고
2018-04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의결
2018-05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결과보고서 접수 및 권고 이행 추진경과 보고	보고
2018-05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추진경과 보고	보고
2018-05	2017년 법령·정책 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의 건	보고
2018-05	2017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보고
2018-05	2017년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보고
2018-05	약식명령 송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건 권고수용 보고	보고
2018-05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재입원 사건 권고 일부수용 보고	보고
2018-06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정보 공개	의결
2018-07	검사의 조사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보고
2018-07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의 건	의결
2018-07	총기 입출고시 2인 이상 동행 요구 등	의결
2018-08	상업시설 이용시 나이제한	보고
2018-08	2019년 예산요구서(안) 의결의 건	의결
2018-09	수능감독관 의사 미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8-09	1인 시위 방해	의결
2018-10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차별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2018-10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의결
2018-10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보고

회 차	의 안 명	구분
2018-10	위원회 투명성 제고방안 의결의 건	의결
2018-1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보고	보고
2018-1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18-12	제3차 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등 노인인권회의 추진상황 보고	보고
2018-12	2018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보고
2018-12	2018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보고
2018-12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의 건	의결
2018-12	2018년 상반기 법령·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의 건	보고
2018-1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2018-13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 권고수용보고	보고
2018-13	소위원회 개최주기 및 결정문 작성기간 등 개선검토 보고	보고
2018-13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의 건	의결
2018-13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에 관한 건	의결
2018-14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정보 공개사건 권고수용보고	보고
2018-14	결혼한 군종장교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 시정권고의 건	의결
2018-14	위원회 투명성 제고방안 의결의 건	의결
2018-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의 건(이재정 대표발의)	의결
2018-15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 차별	의결
2018-15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의결
2018-15	총기 입출고시 2인 이상 동행 요구 등	보고
2018-15	인종차별철폐협약	의결
2018-15	사립대학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등 침해	의결
2018-15	민간회사의 직원채용 시 간염보균자 배제	의결
2018-16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의결
2018-16	형사사건 재심절차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의결
2018-17	교직원 채용 시 종교 차별	의결
2018-17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의결

회 차	의 안 명	구분
2018-17	사립대학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등 침해	의결
2018-18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8-18	법원의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불인정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18-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수용 여부 보고의 건	보고
2018-18	결혼한 군종장교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 시정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2018-19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의 건	의결
2018-19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 시정 권고의 건	의결
2018-19	인권위의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건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의결의 건	의결
2018-19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의결의 건	의결
2018-19	판사의 모욕적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시정권고의 건	의결
2018-20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41071)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18-20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 시정 권고의 건	의결



## 나. 상임위원회 회차별 안건 목록

회 차	의 안 명	구분
18-0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	의결
18-01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활용 권고 수용 보고	보고
18-01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 보고	보고
18-02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 심의의 건	심의
18-02	2018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안) 보고	보고
18-03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인권증진 업무협약(MOU) 체결의 건	의결
18-03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0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심의의 건	심의
18-0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쟁점목록 선정을 위한 의견서(안) 보고	보고
18-04	국가인권위원회-에퀴타스 업무협약(MOU) 체결의 건	의결
18-04	2018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채택의 건	의결
18-04	2018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안) 보고	보고
18-05	검찰내 성희롱·성폭력 등 직권조사 개시결정의 건	의결
18-0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07	진정사건 제보자(참고인) 불이익조치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	의결
18-08	중국동포 강제퇴거에 따른 긴급구제의 건(사건번호: 18-긴급-0000500)	의결
18-0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09	2017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결산(안) 심의의 건	심의
18-09	만성 가성 장폐쇄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 보고	보고
18-09	노노(老老)돌봄 현황 실태조사 계획 보고	보고
18-10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중계방송 등 수어통역 미제공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11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11	중국동포 강제퇴거 긴급구제의 건에 대한 권고수용 보고	보고
18-12	유치원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의 건	의결
18-12	정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회 차	의 안 명	구분
18-12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	보고
18-12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보고
18-12	2018 군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18-12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수용 보고의 건	보고
18-13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13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14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18-14	2018년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18-15	국가인권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MOU) 체결의 건	의결
18-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1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16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16	대한민국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 통계청 업무협약[MOU] 체결의 건	의결
18-16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 보고	보고
18-16	2017년도 연간보고서(안) 보고	보고
18-17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17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의 건	심의
18-18	인권침해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치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 광주트라우마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의결
18-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18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3차 상정)	의결
18-18	2019년도 실태조사 추진방안의 건	의결
18-18	2019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의 건	심의
18-18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증진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보고
18-18	진정사건 참고인 불이익 조치 긴급구제 건에 대한 권고 일부 수용 보고	보고
18-18	고용차별사건 조사사례 연구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18-18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18-19	"제4차 유엔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제출(안)	의결
18-19	제품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18-20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회 차	의 안 명	구분
18-2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	의결
18-2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22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	보고
18-23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3회 상정)	의결
18-24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책권고의 건	의결
18-24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경과 보고	보고
18-25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26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18-26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권고의 건	의결
18-27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27	북한식당 탈북여종업원 집단입국사건 직권조사 개시의 건	의결
18-2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2016도10912, 2018도4708)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심의의 건	심의
18-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보고
18-28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보고	보고
18-28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권고」 수용보고	보고
18-28	위원회 업무협약 추진 현황 및 실적보고	보고
18-29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의 건	의결
18-29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 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재상정)	의결
18-29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거부긴급구제 (18-진정-0612700)의 건	의결
18-2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등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	심의
18-29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심의의 건	심의
18-29	소위원회 개최주기 및 결정문 작성기간 등 개선 보고	보고
18-29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보고	보고
18-29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보고	보고
18-30	2018년도 상반기 보상금 지급 계획(안)	의결
18-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회 차	의 안 명	구분
18-3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의 건	심의
18-30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보고	보고
18-30	노인인권종합보고서(안) 발간 보고	보고
18-30	2018년 상반기 조사국에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보고
18-3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3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	심의
18-31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에 따른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 수용여부 보고	보고
18-31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실무안 보고	보고
18-32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의견제출의 건	의결
18-32	국회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32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18-33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의 건	의결
18-33	긴급구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거부) 권고 수용 보고	보고
18-34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심의의 건	심의
18-35	가축 살처분 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35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전시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역사박물관 간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의결
18-3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18-35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	의결
18-35	○○○○학교 장애인 학생 폭행 등 직권조사 개시의 건	의결
18-35	정부업무평가 평가 기준(안) 보고	보고
18-3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보고	보고
18-36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의 건	의결
18-37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의견제출의 건	의결
18-37	가축 살처분 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18-37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심의의 건	심의
18-37	고공농성 관련 대응 경과 보고	보고

회 차	의 안 명	구분
18-38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MOU) 체결의 건	의결
18-3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	의결
18-38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등에 관한 의견표명	의결
18-39	국방부 훈령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 관련 의견제출의 건	의결
18-39	국가인권위원회 - 충청북도 업무협약(MOU) 체결의 건	의결
18-39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보고서(안)	의결
18-39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건 진상조사 보고서(안)	의결
18-39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방안 마련 권고의 건	의결
18-40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의 건	의결
18-40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수용 보고	보고
18-40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인권개선 부문 평가 결과 보고	보고
18-41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정 체결 계획(안)	의결
18-41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41	2018년 하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18-41	대중매체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의결
18-4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41071)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의 건	보고
18-41	2019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의 건	보고
18-42	군 영창 폐지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18-42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의 건	의결
18-42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관련 직권조사 실시검토(안)	의결
18-42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 인권개선 부문 평가 결과 보고	보고
18-43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18-43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권고의 건	의결
18-43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심의의 건	심의

## 다.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의제 수	주요 논의 내용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li> <li>•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도입 방안 연구</li> <li>•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종합적 검토</li> <li>• 군인권보호관제 도입</li> <li>• 미투 운동과 위원회 역할</li> <li>• 아셈(ASAM) 글로벌에이징센터 개소 등</li> </ul>

\* 구성 : 50명(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 북한인권 등 다양한 분야)

## 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제3기 인권NAP 초안에 대한 정책협의</li> <li>• 기업과 인권 NAP 관련 논의</li> </ul>

\* 구성 : 106명(중앙행정기관 44명, 지방자치단체 17명, 교육청 17명, 민간위원 28명)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정의인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도 회의 소집 가능

## 마. 전문위원회

구 분	개최 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사회권전문위원회	1	1	• ○○○지회 고공농성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의 건
인권교육전문위원회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지원법」추진방향</li> <li>• 「인권연수원」설립추진계획</li> <li>• 기타의견</li> </ul>
국제인권전문위원회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치에 따른 추진과제 모색</li> <li>•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역할 수행방안</li> <li>• 2019년 국제인권과 신규사업(안)</li> </ul>
자유권제1 전문위원회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감호 처분에 대한 형사보상 불인정의 문제</li> <li>• 경찰의 과도한 내사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li> </ul>

구 분	개최 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	-	-
차별시정전문위원회	-	-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li> <li>• 정신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검토</li> <li>• 도서관 야간 이용 시 시각장애인 차별</li> <li>•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의 장애인 차별</li> <li>•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li> <li>• 장애인 이용 차량 등록 시 차별</li> </ul>
아동인권전문위원회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li> <li>• 아동보호치료시설 제도 개선안</li> <li>• 소년분류심사원 방문조사 계획</li> <li>• 교육청의 최저학력제 운영에 의한 대회 출전 자격 박탈</li> <li>• 아동학대 고소사건의 부당하 처리</li> <li>• 초등학교 전입학 관련 차별적 규정</li> <li>• 중학교 두발 규정</li> <li>• 남학생을 앞 번호로 지정하는 출석번호 부여 방식에 의한 인권침해</li> </ul>

### 3. 2018년 결산

#### 가. 세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총 계	17	12.7	12.7	-	-	
기타 경상이전수입	13	10.2	10.2	-	-	
기타 잡수입	2	0.5	0.5	-	-	
위약금	1	1.4	1.4	-	-	
기타 재산수입	1	0.6	0.6	-	-	

#### 나. 세출

(단위: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전년이월포함)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31,766	30,084	272	1,410	
인 건 비	15,666	14,814	-	852	
기 본 경 비	8,478	8,119	272	87	
주요사업비	7,622	7,151	-	471	
일반 · 지방 행정 분야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1,184	1,120	-	64
	① 인권의식 향상	392	387	-	5
	②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315	313	-	2
	③ 지역인권문화 확산	477	420	-	57
	인권교육 활성화	1,236	1,104	-	132
	④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236	1,104	-	13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1,986	1,833	-	153
	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77	167	-	10
	⑥ 취약분야 인권개선	1,266	1,182	-	84
	⑦ 장애인 인권증진	543	484	-	59
	인권제도 선진화	737	691	-	46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84	552	-	32
⑨ 북한인권 개선	153	139	-	14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465	1,401	-	64	
⑩ 국제교류 협력	1,156	1,103	-	53	
⑪ 인권단체 공동협력	309	298	-	11	
정보화(정보화)	1,014	1,003	-	11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14	1,003	-	11	



## 4. 2018년 상담·진정 통계

### 가. 연도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진정	상담	민원/안내	합계
누계	132,185	368,924	471,489	972,584
2018	9,280	32,278	45,968	87,522
2017	12,329	36,370	42,939	91,632
2016	10,647	31,616	38,020	80,281
2015	10,695	32,030	37,961	80,686
2014	10,923	34,547	36,623	82,09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이다.

※ 상담은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 포함

### 나. 2018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 의뢰/ 고발	권고 등	조정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9,280	10,177	1,614	6	547	7	141	913	5,745	78	2,724	16
침해	7,070	7,717	670	3	209	-	124	334	4,704	76	2,251	16
차별	2,185	2,437	944	3	338	7	17	579	1,018	2	473	-
기타	25	23	-	-	-	-	-	-	23	-	-	-

## 다. 위원회 설립 이후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권리구제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소계	수사의뢰/고발	권고등	법률구조	조정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합계	132,185	129,093	19,581	163	4,318	19	71	2,537	12,473	72,526	1,538	34,674	774
2018	9,280	10,177	1,614	6	547	-	7	141	913	5,745	78	2,724	16
2017	12,329	11,007	1,601	9	357	-	19	88	1,128	6,570	104	2,707	25
2016	10,647	10,868	1,462	21	249	1	18	158	1,015	6,405	95	2,875	31
2015	10,695	10,894	1,286	8	173	-	1	313	791	6,246	87	3,143	132
2014	10,923	10,331	1,212	23	142	1	1	324	721	6,018	56	2,978	67
2013	10,056	10,427	1,380	2	217	2	2	353	804	5,893	29	3,086	39
2012	9,582	9,580	1,205	3	329	2	2	144	725	5,393	24	2,912	46
2011	7,357	7,085	1,231	11	321	2	2	196	699	3,436	40	2,356	22
2010	9,168	8,392	1,523	9	305	1	1	222	985	4,478	153	2,151	87
2009	6,985	6,788	1,620	5	319	-	2	208	1,086	3,046	88	1,962	72
2008	6,309	6,466	1,556	12	335	1	2	75	1,131	3,003	113	1,729	65
2007	6,274	6,064	1,730	13	276	2	3	98	1,338	2,892	138	1,262	42
2006	4,187	4,206	1,214	17	281	1	10	46	859	1,836	81	1,049	26
2005	5,617	5,350	595	6	224	2	-	85	278	3,142	155	1,408	50
2004	5,368	5,804	181	6	112	4	1	58	-	4,028	154	1,387	54
2003	3,815	3,797	130	9	95	-	-	26	-	2,766	116	785	-
2002	2,790	1,856	40	2	36	-	-	2	-	1,629	27	160	-
2001	803	1	1	1	-	-	-	-	-	-	-	-	-

## 5. 2018년 업무 총괄도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 4대 전략 목표

### 성과 목표

####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 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 ④ 주거 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 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 ⑦ 장애인 등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 ⑧ 이주민·난민의 인권보호
- 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 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⑪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 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 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
- 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⑮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 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 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⑱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 ⑲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 < 특별 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기획 사업 >

위원회 역량강화

## 6. 2018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 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 정책권고

연번	권 고 명	의결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 여부
1	2017년 정신의료기관 작업치료 관련 방문조사 정책권고	1. 30.	보건복지부	검토중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개선 권고	2. 8.	산업통상자원부	수용
3	유치원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3. 15.	교육부	일부수용
4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3. 22.	여성가족부	수용
5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개선 권고	4. 12.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검토중
6	○○공사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4. 13.	○○공사	수용
7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에 따른 출국정지 관행 개선 권고	4. 19.	법무부	수용
8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5. 3.	행정안전부	검토중
9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권고	6. 21.	법무부, 보건복지부	검토중
10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권고	6. 28.	국토교통부	검토중
11	교도소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관련 권고	6. 29.	법무부	수용
12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7. 5.	통일부	수용
13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7. 12.	고용노동부	수용
14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7. 12.	고용노동부	수용
1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7. 19.	환경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16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 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8. 9.	국가보훈처, 병무청, 국회	수용

연번	권 고 명	의결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 여부
17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8. 9.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수용
18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9. 10.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검토중
19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 정책권고	9. 19.	국토교통부	검토중
20	퇴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 권고	9. 27.	인사혁신처	검토중
21	형사사건 재심절차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11. 5.	법무부, 대법원	검토중
22	가족 살처분 매물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11. 8.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수용
23	구직 장애인에 대한 장애 원인 등 정보제공 요청 관련 권고	11. 12.	고용노동부	검토중
24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12. 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토중
25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	12. 27.	국가정보원	검토중
26	2018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12. 28.	보건복지부, 국회	검토중

## ■ 의견표명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1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1. 25.	충남도, 충남도의회
2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중계방송 등 수어통역 미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2. 22.	SBS, 2018평창동계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3. 8.	국회
4	정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3. 15.	보건복지부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4. 5.	국회법제사법위원회
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4. 12.	여성가족부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7	수능감독관 의사 미제공 관련 의견표명	5. 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국선번호인 선정청구 결정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의견표명	6. 7.	대법원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7. 24.	국회
10	검찰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의견표명	7. 27.	법무부
11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9. 13.	국회
12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9. 3.	여성가족부
13	HIV 감염인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에 대한 의견표명	9. 27.	세브란스병원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0. 4.	고용노동부
15	방송에서의 장애인 비하에 대한 의견표명	10. 8.	문화방송
16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피해 회복 등 구제를 위한 의견표명	10. 22.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17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0. 25.	경찰청
18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등에 관한 의견표명	11. 26.	국회, 법무부
19	군 영창 폐지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12. 20.	국회, 국방부
20	○○기업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관련 의견표명	12. 28.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 ■ 의견 제출

연번	의견제출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 (2016도10912, 도4708)에 대한 의견제출	7. 23.	대법원
2	법원의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불인정에 대한 의견제출	11. 26.	대법원
3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2016두41071)」 관련 의견제출	11. 26.	대법원

## 나.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 ■ 검찰·경찰·법원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부당한 감찰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0655300	2. 28.	수용
2	검찰조사 시 수갑사용 및 전과사실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16-진정-0916100 등 2건 병합	2. 28.	수용
3	부당한 압수 등	17-진정-0377100	3. 28.	검토중
4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불응	17-진정-0375900	3. 28.	수용
5	경찰의 집회의 자유 보호의무 위반	16-진정-0458200	3. 28.	수용
6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0195000 등 4건 병합	3. 28.	수용
7	경찰의 총기 입·출고 시 2인 이상 동행 요구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0105100	4. 23.	수용
8	검찰의 부당한 출국금지	16-진정-0380600	4. 26.	수용
9	유치장에서의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17-진정-0449100 등 3건 병합	4. 26.	검토중
10	법원의 1인 시위 방해	17-진정-0087900	5. 28.	수용
11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16-진정-0923000	6. 7.	수용
12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17-진정-0157600	7. 5.	검토중
13	적법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168100	7. 5.	수용
14	범죄피해자 상담내용 및 개인정보 유출	17-진정-0537500	7. 5.	수용
15	진술서 수정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440100	8. 9.	수용
16	경찰의 부당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등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1087400	8. 9.	수용
17	검찰의 부당한 압수물 폐기	17-진정-0372200	9. 18.	검토중
18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18-진정-0439700	11. 9.	검토중
19	경찰의 부당한 내사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219500	11. 9.	검토중
20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8-진정-0124600	11. 29.	수용
21	판사의 모욕적인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0966700	12. 10.	검토중
22	해경의 부당한 검문검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456200	12. 20.	검토중

## ■ 군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여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건	17-진정-0796900	1. 24.	수용
2	폭언에 따른 인격권 침해	17-진정-0062600	3. 28.	수용
3	병사에 대한 임의적인 외출·외박 통제	17-진정-0205500	3. 28.	수용
4	군 부대내 부당한 처벌 등	16-진정-0889700 등 2건 병합	4. 26.	수용
5	부대내 가혹행위 및 병사관리 소홀 직권조사	16-직권-0002500	6. 7.	수용
6	상급자의 모욕적 발언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18-진정-0195000	9. 18.	검토중
7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입창 사실 고지 등	17-진정-0762100 등 2건 병합	11. 9.	검토중
8	헌병대 구치소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18-진정-0450200	11. 9.	수용

## ■ 구금·보호시설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교도소의 의료조치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0480000	1. 26.	수용
2	노동위원회 출석 시 보호장비 외부 노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0519400	2. 23.	수용
3	치료감호소의 일률적 커피음용 제한	17-진정-0190100	2. 23.	검토중
4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1039500	3. 28.	수용
5	수용자 인터넷 서신 제도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17-진정-0650900	5. 2.	수용
6	소년원의 의료조치 미흡 및 대장암 판정	18-진정-0063900	5. 9.	수용
7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17-진정-0868300	5. 29.	검토중
8	구금시설의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1109200	5. 29.	수용
9	교도소의 부당한 서신검열	17-진정-0711700	6. 29.	수용
10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 검열 및 징벌	18-진정-0214100	8. 29.	일부수용
11	교도관의 폭행 및 의료조치 미흡	17-진정-0547500	8. 29.	수용
12	교정시설 감독자 순시 관련 인권침해	18-진정-0209600	10. 24.	수용
13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17-진정-0577700	10. 24.	수용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4	치료감호소에서의 과도한 강박	17-진정-1107800	10. 24.	수용
15	구금시설 과밀수용 직권조사	17-직권-0002100 등 26건 병합	11. 5.	검토중
16	수용자 접견 시 교도관 청취·기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18-진정-0514300	11. 14.	검토중
17	부당한 면회 제한	18-진정-0591200	12. 12.	검토중
18	교도소의 미흡한 의료조치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	18-진정-0231200	12. 12.	검토중

## ■ 다수인보호시설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퇴원 거부 사유 등 미통지	17-진정-1193600	1. 30.	수용
2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16-진정-0748400	1. 30.	수용
3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한 등	17-진정-1222700 등 2건 병합	2. 28.	수용
4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및 부당한 노동 등	17-진정-0960400	3. 13.	검토중
5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조치	17-진정-1183800	3. 13.	수용
6	적법절차를 위반한 부당 입원	17-진정-0528400	3. 13.	수용
7	격리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17-진정-0851300	3. 13.	수용
8	정신병원 차량에 의한 부당한 이송 및 입원	17-진정-0028100	3. 13.	수용
9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이용인 폭행 및 방치 등 인권침해	17-직권-0001500 등 2건 병합	4. 10.	검토중
10	정신병원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17-진정-0963700	5. 4.	수용
11	부당한 격리, 통신제한 등	17-진정-0734600	5. 4.	수용
12	보호사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263100 등 3건 병합	5. 4.	수용
13	정신재활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17-직권-0002000 등 2건 병합	5. 4.	수용
14	장애인거주시설 부당한 노동 강요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17-직권-0002400	5. 4.	검토중
15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18-직권-0000200	5. 9.	수용
16	정신병원의 의료조치 미흡	17-진정-0322700	6. 11.	검토중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7	정신병원 환자의 접견권 침해 등	18-진정-0350500	6. 11.	수용
18	정신병원의 진정방해 등	17-진정-0029900 등 2건 병합	6. 11.	수용
19	정신병원 입원환자 사망	18-진정-0058600	6. 11.	검토중
20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강제이송 등 인권침해	18-직권-0000300	7. 19.	수용
21	인권위 진정서 미발송 등	18-진정-0335900 등 2건 병합	7. 19.	수용
22	가혹행위 및 부당한 감금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1055900	7. 19.	검토중
23	인권위 진정 제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8-진정-0376600	7. 26.	수용
24	정신병원 화장실 관련 인격권침해	18-진정-0302900	8. 10.	수용
25	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등	18-진정-0424400	9. 19.	수용
26	행정입원 사실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1019800	9. 19.	수용
27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18-진정-0588900	9. 19.	수용
28	정신병원에서의 입원, 부당노동 부과 등 인권침해	18-직권-0001200 등 4건 병합	10. 8.	수용
29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18-진정-0259400	10. 22.	검토중
30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노동 등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018400	11. 12.	검토중
31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17-진정-1036100	11. 12.	검토중
32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금전의 부적절한 사용	18-진정-0201200	11. 12.	검토중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욕설 등에 인한 인격권 침해	17-진정-0766400	1. 26.	수용
2	○○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17-직권-0002200	1. 26.	수용
3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폭언 등	18-진정-0065900	4. 3.	수용
4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정보 공개	17-진정-1226800	4. 9.	수용
5	공무원의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18-진정-0170000	5. 2.	수용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 지문인식에 의한 인권침해	16-진정-0320900 등 2건 병합	5. 2.	일부수용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7	탄원인의 신원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18-진정-0070600	5. 2.	수용
8	공무원의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18-진정-0404700	6. 29.	검토중
9	정보공개 자료 지연 발송으로 인한 알권리 침해	18-진정-0318900	7. 26.	수용
10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과거병력 기재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1018900	7. 26.	수용
11	의료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는 사진촬영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7-진정-1175100	7. 26.	수용
12	소속 공무원 징계사실 공람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481400	8. 29.	수용
13	지자체 공무원의 체납정보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18-진정-0367200	8. 29.	수용
14	공단이사장의 사적인 업무지시 및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539600	8. 29.	검토중
15	수하물 검사과정에서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17-진정-0712100 등 2건 병합	11. 14.	수용
16	병무청 직원의 민원사실 유출	18-진정-0678800	11. 14.	검토중
17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지문날인 관련 인권침해	17-진정-0515400	12. 12.	검토중
18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의료조치 미흡	18-진정-0612800 등 2건 병합	12. 12.	검토중
19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인사 의무화 개선명령	18-진정-0843700	12. 28.	검토중

## ■ 각급 학교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17-진정-0790100	1. 26.	수용
2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	17-진정-0331900	1. 31.	수용
3	고등학교에서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제한	17-진정-1126300	1. 31.	불수용
4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침해	17-진정-1026900	1. 31.	수용
5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미흡	17-진정-0669600	2. 28.	검토중
6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17-진정-1229100	3. 13.	수용
7	기숙사 강제퇴관 광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17-진정-0263500	3. 28.	수용
8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17-진정-0903200	3. 28.	수용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9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8-진정-0008000	4. 3.	수용
10	대학총장의 교수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 등	17-진정-1043500	5. 2.	검토중
11	고등학교에서의 전학 불허	18-진정-0190500	5. 9.	불수용
12	교사의 학생에 대한 욕설 등 인권침해	17-진정-1090100	5. 9.	불수용
13	아동극 강제동원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082600	5. 29.	수용
14	교수의 폭언 및 폭행	18-진정-0309000	5. 29.	수용
15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236300	6. 4.	불수용
16	생활지도관의 폭행 및 폭언	17-진정-0886400	6. 29.	수용
17	과도한 두발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17-진정-1072800	7. 3.	검토중
18	연가 사용 내역 파악에 의한 사생활 침해	18-진정-0016400	7. 26.	검토중
19	고교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평등권 침해	17-진정-0368300	9. 10.	검토중
20	복무지도를 이유로 한 녹음 등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459900	10. 1.	수용
21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점검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18-진정-0073600	10. 22.	검토중
22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등	17-진정-0650300	10. 22.	수용
23	기숙사 무단외출에 대한 과도한 제재	18-진정-0673300	10. 22.	수용
24	대학교의 온라인상 개인 표현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	18-진정-0052400 등 3건 병합	11. 12.	검토중
25	징계처분 취소 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등	18-진정-0434400 등 2건 병합	11. 14.	수용
26	교장의 배움터지킴이 해촉 과정의 인권침해	18-진정-0398000	12. 12.	검토중
27	교칙 위반 시 강제 귀가조치 등에 의한 인권침해	17-진정-0875700	12. 19.	검토중
28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681400	12. 19.	검토중
29	교장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18-진정-0358400	12. 19.	검토중
30	교사의 체벌 등	18-진정-0012500	12. 19.	검토중
31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18-진정-0319700	12. 19.	검토중

## 다. 차별행위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 ■ 성 차별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협동조합 대의원 후보 등록 시 여성차별	17-진정-0446400	1. 18.	수용
2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시 여성 배제	18-진정-0651000	12. 28.	수용

### ■ 신체 조건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	16-진정-1062200	4. 13.	불수용

### ■ 성희롱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직장내 대표이사의 성희롱	16-진정-0562900	1. 18.	수용
2	신문사 상사에 의한 성희롱	17-진정-1045500	3. 5.	수용
3	직장 내 성희롱 등	17-진정-0878700	4. 13.	검토중
4	남성상사에 의한 남성직원 성희롱	17-진정-0428600	5. 15.	수용
5	직장상사 및 동료직원에 의한 성희롱	17-진정-0599000	5. 15.	수용
6	성희롱 및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17-진정-0752500	5. 15.	검토중
7	동료 공무원 간 성희롱	17-진정-0850600	5. 15.	검토중
8	직장 성희롱 및 감사 관련 개인정보 유출	17-진정-0923200	5. 15.	검토중
9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등	17-진정-1096500	5. 15.	검토중
10	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추행	18-진정-0332900	6. 14.	검토중
11	영화 배급사 이사의 직원에 대한 성추행	18-진정-0363400	6. 14.	수용
12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희롱	17-진정-0506300	9. 27.	수용
13	직장 상사에 의한 직원 성희롱	17-진정-0374100	11. 1.	검토중
14	지역언론사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	17-진정-0652400	11. 21.	수용
15	부대 상사의 성희롱 등	18-진정-0254500	12. 20.	검토중
16	복지관장의 계약직원에 대한 성희롱	17-진정-0973500	12. 28.	검토중
17	부대 상사의 성희롱 등	18-진정-0254500	12. 20.	검토중
18	복지관장의 계약직직원에게 대한 성희롱	17-진정-0973500	12. 28.	검토중

## ■ 장애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227000	1. 30.	일부수용
2	무기계약 전환심사상 장애 차별	17-진정-0795500	3. 13.	수용
3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업무 배치에 의한 차별	17-진정-1019200	3. 13.	수용
4	사립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입학거부	18-진정-0097200	3. 13.	검토중
5	레저스포츠 이용 시 청각장애인 탑승 거부	17-진정-0857700	3. 26.	수용
6	특수학급 설치 거부로 인한 차별	18-진정-0106400	4. 10.	수용
7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배제 및 괴롭힘	17-진정-1017100 등 2건 병합	4. 10.	검토중
8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에 차별행위	17-진정-0866300	5. 4.	수용
9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18-진정-0016800	5. 4.	수용
10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장애인 체벌 등	18-진정-0044400	5. 4.	수용
11	지방선거 청각장애인 참정권 행사관련 수어통역서비스 개선	18-진정-0294600	5. 4.	검토중
12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탑승거부	18-진정-0161100	6. 11.	수용
13	영화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8-진정-0285300 등 2건 병합	6. 11.	불수용
14	공공기관 면접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18-진정-0019900	7. 19.	수용
15	시각장애인에 대한 학습도우미 제공 미흡	18-진정-0324100	7. 19.	수용
16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제한 등	18-진정-0333600	7. 19.	수용
17	장애를 이유로 한 임용순위에 대한 차별	18-진정-0128600	8. 10.	수용
18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조건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	18-진정-0197700	8. 10.	수용
19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차별	18-진정-0384900	9. 19.	검토중
20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불허	18-진정-0059100	11. 12.	불수용
21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변환바코드 미제공	18-진정-0536500	11. 12.	수용
22	신장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18-진정-0655200	12. 10.	검토중

## ■ 나이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나이를 이유로 한 응역사업 수행인력 참여 제한	17-진정-1123700	1. 18.	수용
2	나이를 이유로 한 불링 선발전 참가자격 제한	17-진정-0890600 등 3건 병합	3. 5.	불수용
3	나이에 의한 공모전 참가자격 제한	18-진정-0290300	7. 27.	수용
4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지원서류 반려	17-진정-1119100	9. 27.	수용
5	병원의 미화노동자 등에 대한 나이차별	17-진정-1183200	12. 28.	수용
6	나이를 이유로 한 부서장 보직해임	16-진정-1003600	12. 28.	검토중

## ■ 사회적 신분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제한	17-진정-0892800	6. 14.	수용
2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에 대한 신규 공개채용 응시 제한	18-진정-0303700	6. 14.	검토중
3	대학 산업체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및 임금 차별	17-진정-0471300	9. 27.	수용
4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차별	17-진정-1228700	9. 27.	수용
5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차별	17-진정-0317000	11. 1.	검토중
6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에서의 기간제 교원 경력 제외	17-진정-1211800	11. 21.	수용
7	대학교 특별편입생에 대한 차별 처우	18-진정-0266800	12. 12.	검토중

## ■ 종교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군종법사 선발 및 운영에서의 차별	17-진정-0470800 등 3건 병합	12. 20.	검토중
2	대학교 교직원 채용 시 종교 차별	17-진정-0983000	11. 12.	불수용
3	대학교의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16-진정-0926900 등 2건 병합	12. 12.	검토중
4	교수 채용 시 종교 차별	18-진정-0034900	12. 12.	검토중
5	대학교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18-진정-0830800	12. 28.	검토중

## ■ 병력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학군사관 등 선발에서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17-진정-0696600	6. 14.	수용
2	대학병원의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16-진정-0975900	9. 27.	수용
3	민간회사의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16-진정-0089000	10. 22.	수용
4	과거병력을 이유로 한 사관학교 퇴소 조치	17-진정-0956900	11. 9.	수용
5	특정 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18-진정-0160000	11. 21.	검토중

## ■ 임신·출산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임신·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18-진정-0185300 등 3건 병합	11. 21.	검토중
2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신청에 권고사직	17-진정-0943300 등 2건 병합	12. 28.	검토중

## ■ 성적 지향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육군의 군형법에 의한 성소수자 색출 및 수사	17-진정-0335700 등 244건 병합	4. 13.	수용

## ■ 전과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처우	17-진정-1054100	12. 28.	검토중



## ■ 학력/학벌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학점인증제 학사 학위자에 대한 학력 차별	17-진정-0238500 등 2건 병합	1. 18.	검토중

## ■ 기타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권고수용 여부
1	신용등급을 이유로 한 개도국파견 전문가 선정 배제	17-진정-0380300	11. 1.	수용
2	소속 노동조합에 따른 근로조건 등 차별	15-진정-0166200	12. 28.	검토중

## 라. 직권 및 방문조사 현황

### ■ 직권조사

연번	제 목	직권조사 개시결정	조사 대상 기관
1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강제이송 등 인권침해	1. 30.	○○병원
2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1. 31.	○○○○
3	검찰 내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2. 2.	검찰
4	정신병원에서의 입원, 부당 노동부과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6. 11.	○○○병원
5	탈북여종업원 집단입국사건 직권조사	7. 26.	통일부, 국정원, 국군정보사령부
6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10.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7	○○○○학교 장애인 학생 폭행 등 직권조사	10. 22.	○○○○학교
8	육군 GP 총기 사망사고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1. 29.	국방부, 육군 제○○사단

### ■ 방문조사

연번	방문조사명	방문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1	소년분류심사원 방문조사	5~11월	소년분류심사원 7개
2	군 정신병동 방문조사	7~8월	군 병원 정신과 병동 4개
3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8월	청주외국인보호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4	교정시설 방문조사	8~9월	교정시설 10개
5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8~9월	노인복지시설 12개
6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8~11월	지적·발달장애인 거주시설 15개
7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10월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갱생보호시설 7개
8	정신의료기관 입원적합성 심사 방문조사	10~12월	정신의료기관 11개

## 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 현황

연번	과 제 명	수행기관	기 간
1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3.~11. 2.
2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	5. 2.~11. 2.
3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5. 10~11. 8.
4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충북대학교	5. 29.~11. 28.
5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6. 14.~12. 13.
6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 16.~10. 15.
7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 15.~10. 15.
8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사단법인 참세상	6. 1.~11. 30.
9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5. 10.~12. 10.
10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5. 29.~11. 30.
11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건신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4. 25.~11. 23.
12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5. 16.~ 9. 14.
1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사단법인 두루	4. 27.~11. 26.
14	부서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5. 28.~11. 27.
15	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6. 22.~12. 18.
16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태조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4. 11.~10. 10.
17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 12.~10. 11.
18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예인법률사무소	4. 19.~10. 19.
19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	사단법인 두루	5. 9.~11. 8.
20	문화예술계(영화)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5.~11. 5.
2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사)한국방송학회	6. 27.~11. 26.
22	고용차별사건 조사사례 연구	사단법인 인권도시연구소	6. 27.~11. 26.
23	임신·출산·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27.~12. 13.

## 7. 2018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가. 국제회의 참가 현황

연번	회의명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자
1	2018년 GANHRI 연례회의	2. 18.~ 2. 25.	스위스	이성호 前 위원장 외 4명
2	제9차 UN고령화실무그룹회의	7. 18.~ 7. 26.	미국	이성호 前 위원장 외 4명
3	제23차 APF 연례회의	9. 17.~ 9. 19.	홍콩	최영애 위원장 외 5명
4	제13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10. 8.~10. 14.	모로코	정문자 상임위원 외 1명
5	재가에서의 고령화에 관한 국제실무회의	10. 22.~10. 27.	캐나다	국제인권과 이동우
6	국제군음부즈만기구 연례회의	10. 27.~11. 1.	남아프리카공화국	최혜리 상임위원 외 1명
7	2018년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등 참가	11. 24.~12. 1.	스위스, 독일	사회인권과 조경재, 송초아
8	제97차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11. 29.~12. 6.	스위스	정문자 상임위원, 인권침해조사과 임선영, 김윤택

### 나. 국제회의 개최 현황

연번	회의명	일시/장소
1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토론회	4. 26.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	GANHRI Working Group on Ageing Special Session	9. 4. 서울 포시즌스 호텔
3	제3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9. 5.~7. 서울 포시즌스 호텔
4	2018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10. 25. 호주 의회

## 8. 위원회 간행물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연간 보고서	1	연간보고서 2017	기획재정담당관	6월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17	기획재정담당관	6월
	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2017	기획재정담당관	7월
결정례집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0집(2017)	행정부무담당관	10월
	5	장애차별결정례집(2010.10.~2017.12.)	장애차별조사1과	2월
실태조사보고서·연구용역보고서	6	2018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사업 결과보고서	아동청소년인권과	12월
	7	2018년도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인권교육기획과	12월
	8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인권정책과	11월
	9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인권과	11월
	10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실태조사	인권정책과	12월
	11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 연구	기획재정담당관	12월
	12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사회인권과	11월
	13	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인권교육기획과	12월
	14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차별시정팀	11월
	15	부서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인권조사과	12월
	16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인권정책과	12월
	17	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	군인권조사과	12월
	18	비주택주거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사회인권과	11월
	19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인권정책과	10월
	20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아동청소년인권과	6월
	21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인권과	9월
	22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보고서	아동청소년인권과	12월
	23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	인권정책과	10월
	2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성차별시정팀	11월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25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인권과	11월
	26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인권침해조사과	12월
	27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성차별시정팀	12월
	28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장애차별조사1과	10월
	29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차별조사1과	11월
	30	재난 발생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인권과	12월
	3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장애차별조사2과	10월
	32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장애차별조사1과	12월
	33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인권정책과	11월
교육 자료	34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	인권교육기획과	10월
	35	세계인권선언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교육기획과	11월
	36	인권의 이해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교육기획과	8월
	37	장애인 차별예방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교육기획과	3월
기타 보고서	38	2018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장애차별조사1과	11월
	39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사회인권과	8월
	40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국제인권과	6월
자료 집	41	2018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인권정책과	11월
	42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아동청소년인권과	11월
	43	20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10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의 me too 운동, 그 현실과 개선방안 논의	대전인권사무소	4월
	44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장애차별조사1과	4월
	45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부산인권사무소	4월
	46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전남지역 정책토론회	광주인권사무소	4월
	47	2018년 인권경영포럼 :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제구축	인권정책과	6월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48	대체복무제도 마련 및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인 권 정 책 과	5월
	49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인 권 정 책 과	3월
	50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토론회	국 제 인 권 과	4월
	51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 권 정 책 과	10월
	52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아동청소년인권과	6월
	53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아동청소년인권과	12월
	54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 권 정 책 과	8월
	55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아동청소년인권과	11월
	56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기념 노인인권 증진 학술세미나	국 제 인 권 과	6월
	57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인 권 정 책 과	7월
	58	장애인 관광활동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	장애차별조사1과	10월
	5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강원 장애인 인권 토론회	강원인권사무소	4월
	60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인 권 정 책 과	1월
	6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아동청소년인권과	5월
	62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인 권 정 책 과	10월
일반 단행본	63	2018 인권에세이 수상집	홍 보 협 력 과	12월
	64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사 회 인 권 과	8월
	65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2018.12.)	행 정 법 무 담 당 관	12월
	66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자료집	국 제 인 권 과	8월
	67	유엔 인권이사회 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국 제 인 권 과	12월
	68	유엔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인 권 교 육 기 획 과	3월
	6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 권 교 육 기 획 과	12월
	70	인권교육지표들 : 인권교육훈련 이행 모니터링 및 주요 평가지표	인 권 교 육 기 획 과	4월

## 9. 보도자료

연번	배포일	제 목
1	01-02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도 시무식 개최
2	01-12	이성호 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과 면담
3	01-12	인권위, 그림 속에 숨은 인권이야기 <불편한 미술관> 출간
4	01-17	“의료인 인식개선으로 HIV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돼야”
5	01-25	“특정 종교 전파를 위해 설립된 회사 아님에도 직원에게 종교교육 실시는 고용차별”
6	01-26	인권위,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 의견 표명
7	01-26	“이주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8	01-26	“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2차 피해 없도록”
9	01-29	정신의료기관 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그 해법은?
10	01-29	인권위, “외모만을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차별’”
11	01-30	인권위, 의무복무 중 사고당한 군인 형제에 병역감면 의견표명
12	01-31	국가인권위 혁신위, “과거적폐청산 통해 국가인권기구 본연 역할에 충실할 것” 권고
13	01-31	인권위, 「제7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14	01-31	인권위,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권고
15	01-31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6	02-01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17	02-02	“사고 발생 전, 제품 결함을 인지하도록 정책 마련해야”
18	02-02	인권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19	02-06	인권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제한 지자체 조례 삭제 권고
20	02-07	재판 중인 수용자, 타 교정시설로 강제 이감 조사 없어져야
21	02-07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2	02-07	인권위, 서울대와 인권증진 MOU 체결
23	02-08	구금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감시는 신체의 자유 등 침해
24	02-09	장애를 이유로 외부활동 참여 제한은 차별
25	02-12	인권 정보 검색은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26	02-12	인권위.국회,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토론회 13일 개최



연번	배포일	제 목
27	02-12	진정사건 참고인 불이익 중지 긴급구제 결정
28	02-14	안정적인 학교 교육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9	02-19	인권위,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 위한 권고
30	02-21	인권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31	02-22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32	02-23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 재수임
33	02-23	인권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수어통역 제공토록 의견표명
34	02-26	인권위, 27일 '2017년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
35	02-27	군부대 내 공중전화, 인권상담전화 '1331' 연결개선
36	02-28	인권위, 민간용역 직원에 폭언·폭행한 군 간부 엄중 경고조치 권고
37	03-06	이성호 인권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38	03-07	제110회 '세계여성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39	03-08	인권위, 2018년 주요 인권 현안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40	03-09	이성호 인권위원장,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식 참가 외국 고위급 대표 접견
41	03-12	인권위, 합숙형 대학 인성교육 개선 권고
42	03-12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43	03-12	제7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개최
44	03-13	인권위,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교수 중징계 권고
45	03-14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인권위 권고, 국토.기재부 '수용'
46	03-15	“OECD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예방·구제 적극 나서야”
47	03-16	인권위,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권고
48	03-20	인권위, 인권조례 폐지 확산 방지 위한 국제 공조 요청
49	03-21	“학교 내 대자보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50	03-22	“북한인권, 독립된 인권전담기관이 다뤄야”
51	03-2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52	03-26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53	03-27	인권위,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축소·은폐한 교사 징계 권고

연번	배포일	제 목
54	03-28	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55	03-29	법원 명도집행시 경찰의 폭력상황 무대응은 인권침해
56	04-02	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인권친화적으로 바뀌어야
57	04-03	‘미투운동’, 근본 원인과 그 대책은?
58	04-04	특별귀휴제, 가족생활 보호 등 헌법가치 존중해야
59	04-05	미투로 연대했다! ... 인권위, 제1차 미투운동 토론회 개최
60	04-06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61	04-09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비스 실시
62	04-10	인권위, 장차법 시행 10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63	04-11	해외여행 사전 승인 절차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64	04-12	법제도는 어디에? ... 인권위, 제2차 미투운동 토론회 개최
65	04-16	수용자 외부 호송 시 수갑 등 노출은 인격권 침해
66	04-18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 17일 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 방문
67	04-19	문화예술계 성폭력, 원인은 무엇인가? ... 인권위, 제3차 미투운동 토론회 개최
68	04-19	제38회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69	04-20	인권위, 한국사회복지학회와 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70	04-20	대한민국 최초 ‘국가인권통계’ 구축 위한 공동연구 협력추진
71	04-24	인권위, 인권경영 문화 확산 위한 첫 업무협약 체결
72	04-26	‘사형제를 폐지하라’... 국내외 목소리 높인다
73	04-30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그 실태와 대안은?
74	05-02	시사토크 여성진행 10%, 3기 방통심의위원 전원 남성... 성 불균형 심각
75	05-03	“법적 근거 없는 관행적 출국정지 중단해야”
76	05-03	특수학급·교사 없다며 입학포기 강요한 학교장 검찰 고발
77	05-03	“고등학생 10명 중 4명 교사로부터 성희롱 경험”... 방지 대책 절실
78	05-04	제96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79	05-08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80	05-09	인권위, 지방선거 토론 방송 등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권고

연번	배포일	제 목
81	05-10	인권위, 경찰의 '알박기' 집회 방해 방치는 인권침해
82	05-10	비자의 입소 장애인거주시설 67.9%, 정신요양시설 62.2%
83	05-10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84	05-15	인권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추행 고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85	05-15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조화를 위한 대체복무제 구체적 도입방안 논의
86	05-17	100인 이상 기업 남녀간 임금격차 33.3%… 임금·제도 동시 변화 필요
87	05-17	인권위,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88	05-21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89	05-21	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관 대상자 게시 중단 권고
90	05-23	인권위, 정부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수용 '환영'
91	05-25	원생 의사 무시한 아동양육시설 진학지도는 인권침해
92	05-29	특조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93	05-29	인권위, "위해 제품으로부터 사고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94	05-30	유치장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지나친 장구 사용은 인권침해
95	05-31	인권위, 병무청장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비공개 권고
96	06-01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97	06-05	경찰 채용서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이자 차별
98	06-08	5.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99	06-11	인권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100	06-12	인권위, '2018 인권공모전' 개최
101	06-15	인권위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102	06-18	국가인권위원장 선출 위한 후보추천위 첫 출범
103	06-1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104	06-19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105	06-20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연장 기한 평균 22.8개월
106	06-21	공기업 경영철학, 인권 중심으로 전환 기대
107	06-25	부랑아시설 '선감학원', 아동인권 유린 실태와 대책은?

연번	배포일	제 목
108	06-25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 임명
109	06-25	세계 최초 노인인권 전담 국제인권기구 출범
110	06-25	인권위, 25일부터 7개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111	06-27	인권위, '2017년 연간보고서' 발간
112	06-28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미도입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13	06-28	인권위,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현지 인권순회상담 및 기초조사 실시
114	07-0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공개 모집
115	07-04	정보활동시 발생하는 인권침해, 대책을 모색한다
116	07-09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유남영, 최영애, 한상희 추천
117	07-10	인권위,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현장 목소리 청취결과
118	07-10	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침해
119	07-12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120	07-17	인권위, 인권보장체계 강화 위한 조직 개편 시행
121	07-18	"국선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위한 절차 강화해야"
122	07-19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
123	07-23	자폐증 학생에게 한자쓰기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
124	07-24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제9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
125	07-25	국가인권위 최혜리 상임위원 육군훈련소 방문
126	07-26	정신과 처방약 복용 의경근무자 복무관리 매뉴얼 마련해야
127	07-30	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
128	07-30	영화관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미제공은 차별
129	07-31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130	07-31	피의사건 처분결과, 피의자 의사와 달리 일방적 우편통지 안 돼
131	08-02	장애인시설 내 금전 갈취, 수사외뢰 행정처분 등 권고
132	08-07	난민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33	08-07	인권위,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피해병사 보호대책 마련 권고
134	08-08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연번	배포일	제 목
135	08-09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136	08-10	인권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권고
137	08-13	인권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138	08-17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인권위 권고, 복지부 수용
139	08-17	인권위,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조치 마련 '환영'
140	08-17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 대응방안은?
141	08-21	인권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42	08-22	인권위, 7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
143	08-22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144	08-23	서울여대, 합숙형 인성교육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145	08-27	국가인권위원회 김민호, 임성택 인권위원 임명
146	08-28	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아동연극 공연 강요는 인권침해
147	08-29	인권위, 전 공공기관장에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 권고
148	08-30	공무원직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 제한은 차별
149	08-31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150	08-31	복지부·질병관리본부, HIV 감염인 의료차별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151	09-03	인권위, 4일부터 4일간 노인인권 국제회의 개최
152	09-04	제8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취임
153	09-04	제7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임식 진행
154	09-05	제8대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사
155	09-06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우선 보호해야"
156	09-07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정책개선 권고
157	09-10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업장 즉각 변경할 것"
158	09-11	인권위, 사형폐지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159	09-12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 수정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160	09-13	인권위, 탄광종사자 등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61	09-13	생식건강 유해인자로 인한 불임·유산... 근로자와 자녀의 건강권 보호해야

연번	배포일	제 목
162	09-14	법무부, “과태료 미납 사유로 외국인 출국 막지 않을 것”
163	09-17	인권위,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환영 성명
164	09-18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그 실태와 개선 방안 논의
165	09-19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조치
166	09-20	최영애 인권위원장,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내년 연례회의 유치 성공
167	09-20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 의견 표명
168	09-21	인권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 권고
169	10-01	시혜와 배려의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 주체로, 노인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 촉구
170	10-02	인권위, 장애인 관광권 위한 편의제공 토론회 개최
171	10-05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
172	10-05	인권위, 가수 이은미 씨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 위촉
173	10-08	인권교육지침법안 발의 철회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174	10-08	인권위,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은 차별
175	10-10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176	10-10	인권위,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작
177	10-11	한국○○○○협회, 나이차별 인권위 시정권고 ‘불수용’
178	10-12	“언론사로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 서신 검열은 인권침해”
179	10-15	인권위, 호주의회서 2018년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180	10-16	인권위 제작 영화 ‘메기’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에 올라
181	10-16	“마을 이장에게 체납자 정보 제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182	10-18	“검찰, 확정판결 전 압수물 함부로 폐기하면 안 돼”
183	10-19	“인권의 지역화, 지방정부 파트너십 강화”
184	10-24	인권위, 26일 정신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185	10-25	○○대학교병원, 가족수당 차별 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186	10-25	○○○○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결정
187	10-31	인권위, 31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188	10-31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연번	배포일	제 목
189	10-31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논의
190	11-01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판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191	11-02	“입원환자의 사물함 주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192	11-05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이동권 침해
193	11-06	전일제 강사경력, 교육경력으로 인정 않는 것은 차별
194	11-08	“한국사회, 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
195	11-09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성적 우선은 ‘차별’
196	11-12	인권위, 13일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회
197	11-14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198	11-15	인권위, 장애인 사법 절차 실질적 참여 증진을 위한 권고
199	11-19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논의
200	11-20	‘세계 아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	11-20	인권위, 부서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	11-21	인권위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203	11-22	“노인인권 증진 위해 노인혐오 및 세대갈등 해소 필요”
204	11-22	‘세상을 바꾸는 17년’, 인권위 설립 기념행사 개최
205	11-26	인권위,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발간
206	11-26	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과도한 강박관행 개선 권고
207	11-27	인권위, 2018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토론회 개최
208	11-29	“미결수용자 월1회로 예배 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209	12-03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형사사건 재심절차 신속처리 위한 권고
210	12-04	“겨울실내온도 유지불가 58%, 열악한 주거시설 어려움 55%”
211	12-04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
212	12-06	인권위,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 방송되지 않도록 의견표명
213	12-07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214	12-10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맞아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215	12-11	인권위,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연번	배포일	제 목
216	12-12	인권위,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217	12-13	“보안감호처분도 형사보상해야... 조속한 회복 조치 필요”
218	12-13	“지역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행정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돼야”
219	12-14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20	12-14	○○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다양한 지원 시급
221	12-17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 보호 시급
222	12-17	“무단외출한 학생에게 2주간 기숙사 퇴사는 과도한 제재”
223	12-17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넘어선 인간존엄 훼손”
224	12-17	최영애 인권위원장, 강원도 화천군 군부대 격려 방문
225	12-18	인권위, 부산광역시와 인권증진·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226	12-18	경찰,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 인권위 권고 ‘불수용’
227	12-20	인권위, 관행에 따른 자의적 경찰 내사 업무 개선 권고
228	12-21	사적물품 노출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229	12-2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대안 바람직 않아
230	12-26	국가인권위 웹드라마 ‘진정하세요’ 24일 첫 방송
231	12-26	인권위,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방문
232	12-27	“선발요건 갖춘 타 종단 군중법사 배제 운영은 평등권 침해”
233	12-28	인권위, ○○○ 고공농성 현장 방문 및 조속한 해결 촉구
234	12-28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35	12-28	○○○ 고공농성 해결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0. 사진으로 보는 2018년



### 📌 제8대 최영애 위원장 취임식

9월 4일 제8대 위원장으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해소, 고용·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등 4가지 책무와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제3기 인권NA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④ 위원회,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12월 10일 청와대의 위원회 블랙리스트 건과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2009년 당시 청와대 블랙리스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 ④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각국 외교사절,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이라 약속하였다. 한편 세계인권선언 주요 조항을 가수 이은미, 모델 한현민, 형제복지원 생존자 한종선, 대체복무자인 야콥 할그렌 스웨덴 대사, 5·18 항쟁 고문생존자 차명숙, 전 KTX 승무원 김승하, 전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 등이 낭독하였다.





### 故 우동민 활동가 추모행사 참석

이성호 위원장은 1월 2일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우동민 활동가 7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권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재발방지와 후속조사 등을 검토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2월 27일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대상으로 인권 내용 포함 여부와 삽화, 표현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고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 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 등 집필가이드를 제시하였다.



### 제7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개최

3월 12일 제7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1편, 본상 5편을 선정, 시상하였다



④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3월 29일 '보편적 권리와 우리 삶, 그리고 인권조례'라는 주제로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④ **통계청과 업무협약 체결**

4월 20일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해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④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5월 3일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 ▶ 광주트라우마 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5월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권력 피해자들의 치유 및 재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정상환 상임위원, 대구보훈요양원 방문

정상환 상임위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보훈요양원(대구시 달성군 소재)을 방문해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 ▶ 2018 인권경영포럼 개최

6월 22일 공공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2018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하였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제 구축'을 주제로, 공공기관과 기업이 인권친화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정문자 상임위원 임명

6월 22일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정문자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임명되었다.

정 상임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장 등을 맡았다.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초대 원장 임홍재) 개소식이 열렸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ASEM 회원국 간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 7개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진행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몰디브, 몽골 등 7개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를 진행하였다. 초청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④ 최혜리 상임위원, 육군훈련소 방문

7월 25일 최혜리 상임위원은 육군훈련소(충남 논산 소재)를 방문하여 육군훈련소장 등 관계자들과 혹서기 훈련병 생활 환경, 군 인권교육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④ 제3회 아셈(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위원회는 9월 4~6일 '제3회 아셈(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아셈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는 국제사회가 노인인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노인인권 보호·증진에 함께 나서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 ④ 최영애 위원장, 난민농성장 현장방문

9월 13일 최영애 위원장은 난민농성장을 방문하여 난민들에게 “한국 사회는 지금 난민 문제를 배우고 커가는 중이며 한국이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게 대응할 것이다. 오늘 이곳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의 건강 때문이다. 인권위에서 열심히 할 테니 이제 단식을 풀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 제23차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회의 참석

9월 18~19일 최영애 위원장은 중국 홍콩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총 25개국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증진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APF포럼에서 2019년 제24차 APF 연례회의, 격년 콘퍼런스 유치에 성공하였다.



🕒 가수 이은미 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명예대사 위촉

10월 4일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수 이은미님을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로 위촉하였다. 이은미님은 음악활동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 장애인 관광권을 위한 편의제공 토론회 개최

10월 4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논의를 위해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10월 5일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6회 세계사형제제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10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6회 세계사형제제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형제 및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다양한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인 코너스(Jane Connors) 유엔피해자권리옹호관 접견

10월 15일 최영애 위원장은 제인 코너스(Jane Connors) 유엔피해자권리옹호관을 접견하고 성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참석

10월 18~21일 최영애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럼에 183명의 발제 및 토론자, 44개국 45개 도시 1,800여 명이 참여해 인권보호, 의무자로서 지방정부가 갖추어야 할 인권보장 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장애인 사진전 개최

10월 18일,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위원회와 주한스웨덴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애인 인권 사진전 액세스어빌리티(AccessAbility)'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총 28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의 한국 사진은 김종만 사진작가의 작품으로 사진전은 10월 26일까지 열렸다.



### 최영애 위원장, 광주 성요한병원 방문

10월 19일 최영애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인 천주의성요한 병원을 방문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입원유형의 변화와 천주의성요한병원의 치료 방식, 조기퇴원과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 편견 해소와 혐오를 중단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신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10월 26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는 계기를 모색하였다.



###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11월 2일 최영애 위원장은 사이먼 스미스 (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고,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국제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한국의 인권 기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향후 인권 분야에 대한 협력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 형제복지원피해자 농성장 방문

11월 6일 최영애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하였다. 위원장은 피해 생존자의 심경에 공감한다며 위원회의 1차적 임무가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부서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1월 21일 부서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서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 아동인권보호대회 개최

11월 22일부터 3일간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함께,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스쿨 미투 등 아동·청소년 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11월 22일 인권교육센터에서 아셈노인인권 정책센터, 한국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노인혐오 현상 진단과 세대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세대 간 공존과 포용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인권적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세상을 바꾸는 17년, 위원회 설립 기념행사 개최

11월 23일 설립 17주년을 맞아 인권 위원과 직원, 인권전문가와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는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과 인권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 ☞ 2018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12월 12~14일 제주 컨벤션리조트에서 인권옹호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 단체 인권위원, 인권센터 관계자 등 1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인권기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최영애 위원장, 강원도 화천 군부대 격려 방문

12월 17일 최영애 위원장을 포함한 방문 단이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 11. 위원회 소관 법규

구분	법 규 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016. 2. 3.	행정법무담당관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017. 5. 30.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 7. 24.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19)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2016. 5. 4.	조 사 총 괄 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2005. 7. 6.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2012. 11. 23.	조 사 총 괄 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2018. 8. 20.	조 사 총 괄 과 차별시정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4. 5. 19.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2018. 9. 10.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2017. 5. 29.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2017. 5. 29.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2011. 1. 28.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2017. 5. 29.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2017. 5. 29.	인 권 정 책 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2016. 5. 4.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2015. 6. 2.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2017. 5. 29.	인 권 정 책 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2017. 10. 23.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2010. 8. 2.	행정법무담당관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2017. 5. 29.	운 영 지 원 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2017. 5. 29.	인 권 정 책 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2018. 8. 20.	조 사 총 괄 과 차별시정총괄과

구분	법 규 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법 규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8. 7. 24.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2014. 11.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2014. 11. 2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2018. 4. 12.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2011. 9. 22.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018. 7. 24.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2018. 7. 25.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2009. 7. 27.	조 사 총 괄 과 차 별 시 정 총 괄 과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2012. 10. 12.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2015. 2.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2018. 7. 24.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2018. 7. 24.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2018. 7. 24.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8. 7. 24.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2018. 7. 24.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2016. 3. 30.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2016. 9.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2014. 11. 21.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2018. 7. 24.	기획재정담당관	



구분	법 규 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훈 령 ( 45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2018. 10. 25.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2018. 7. 25.	인권교육운영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2017. 6. 8.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2018. 7. 24.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2018. 8. 9.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8. 8. 20.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2018. 7. 24.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2018. 7.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2018. 7. 24.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2017. 6. 1.	인권상담조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2017. 9. 14.	기획재정담당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2014. 11. 21.	운 영 지 원 과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2017. 6. 1.	홍 보 협 력 과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2018. 7. 24.	인권상담조정센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2017. 10. 31.	기획재정담당관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2012. 5. 21.	인권교육기획과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2017. 6. 1.	인권교육기획과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2017. 6. 1.	인권교육기획과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2015. 6. 12.	홍 보 협 력 과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2018. 7. 9.	홍 보 협 력 과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8. 12. 18.	운 영 지 원 과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8. 12. 18.	운 영 지 원 과

구분	법 규 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예 규 ( 22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2018. 7. 25.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2017. 6. 1.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4. 11. 21.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2012. 8. 6.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2015. 6. 9.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2018. 7. 25.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2014. 10. 3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2016. 3. 30.	인권교육운영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2018. 7. 25.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2014. 5. 27.	행정부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2016. 11. 30.	운 영 지 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2015. 3. 17.	운 영 지 원 과
	권고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2017. 6. 1.	인 권 정 책 과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2018. 8. 14.	행정부무담당관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2018. 7. 25.	행정부무담당관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2013. 4. 11.	운 영 지 원 과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2018. 7. 9.	홍 보 협 력 과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2018. 7. 25.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2018. 7. 25.	기획재정담당관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2009. 9. 24.	행정부무담당관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2018. 7. 25.	인권상담조정센터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2013. 3. 4.	운 영 지 원 과	

## 12. 위원회 활동일지

### 2018년 1월

- 1월 2일 •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및 시무식  
• 위원장, 故 우동민 활동가 7주기 추모식 참석
- 1월 17일 • 신년 기자 간담회
- 1월 22일 •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입법예고 현장 모니터링
- 1월 25일 • 금속노조 ○○○지회 고공농성 현장 방문
- 1월 29일 • 로스쿨 실무수습(~2.9.)  
• 정신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 토론회
- 1월 30일 • 위원장, 인권단체(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등) 면담

### 2018년 2월

- 2월 1일 • 아동인권 전문위원회  
• 혁신위원회 최종 권고 기자브리핑
- 2월 2일 •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기자브리핑
- 2월 7일 •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위원장 성명  
• 서울대학교와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  
• 캐나다 에퀴타스와 업무협약 체결
- 2월 13일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 2월 21일 • 이주아동 구금 관련 간담회
- 2월 22일 • 최혜리 상임위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참석  
• 제1차 신규 조사관학교(~2.23.)
- 2월 23일 • 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GANHRI) 연례회의 참석
- 2월 27일 • 2017년도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2018년 3월

- 3월 7일 • 위원장, 호주 복지서비스부 장관관 접견
- 3월 12일 • 제7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 3월 13일 •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서한 발송
- 3월 15일 •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
- 3월 19일 • 난민 인권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 3월 22일 •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보조금 심사 및 사업 선정
- 3월 23일 •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 3월 29일 •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 2018년 4월

- 4월 2일 • 직원 조희 및 의무교육(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4월 3일 • 위원장,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 4월 5일 • 미투 운동 연속 토론회(4.12, 4.19.)
- 4월 10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4.17./6개권역)
- 4월 12일 • 직원 소통행사, 남산둘레길 걷기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방안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4월 18일 •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4월 20일 • 한국사회복지학회와 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 통계청과 국가인권통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4월 24일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월 26일 •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방안 모색 간담회

## 2018년 5월

- 5월 2일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5월 3일 •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관련 간담회  
•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 5월 9일 •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5월 10일 •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방한 관련 이주인권 전문가 간담회
- 5월 14일 • 위원장,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면담
- 5월 15일 •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조화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토론회
- 5월 17일 • 남녀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토론회  
• 광주트라우마센터와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5월 18일 • 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5월 23일 • 아동인권 전문위원회 개최
- 5월 24일 •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담당자 워크숍(~25)
- 5월 29일 •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입교식
- 5월 30일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5월 31일 •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울산·경남지역 권리옹호기관과 인권옹호네트워크 발족

## 2018년 6월

- 6월 2일 •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위원장 성명 발표
- 6월 8일 •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5·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 6월 11일 •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발대식
- 6월 18일 •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간담회

- 6월 19일 •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12.20, 전국 12개 도서관, 인권사무소 2개 체험관)
- 6월 21일 • 군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제언 토론회
- 6월 22일 • 정문자 상임위원 임명  
• 2018 인권경영포럼(공공기관 인권경영 체제구축)
- 6월 23일 • 대구퀴어축제 위원회 홍보부스 운영 및 모니터링
- 6월 25일 • 2018년도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7개국 참가, ~6.29.)  
•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결과발표 및 토론회
- 6월 26일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식  
•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협의회
- 6월 28일 •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현지 인권순회상담 및 기초조사 (~6. 30.)

## 2018년 7월

- 7월 2일 • 직원 조회 및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 7월 5일 • 정보경찰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 7월 17일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1국 2과 1팀 신설)
- 7월 12일 • 난민 현안 및 인권 개선 관련 전문가 간담회
- 7월 16일 •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서울종로경찰서, 강남경찰서)
- 7월 23일 • 위원장, 제9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
- 7월 25일 • 최혜리 상임위원, 육군훈련소 방문 및 훈련병 인권교육 제도화 협의
- 7월 31일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 2018년 8월

- 8월 7일 • 난민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위원장 성명
- 8월 9일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긴급구제 권고
- 8월 17일 •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 8월 23일 • 7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9.13.)
- 8월 27일 • 김민호, 임성택 인권위원 임명
- 8월 30일 •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권고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 8월 31일 •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간담회  
• 제41차 북한인권포럼

## 2018년 9월

- 9월 4일 • 제7대 이성호 위원장 이임식  
• 제8대 최영애 위원장 임명
- 9월 5일 • 최영애 위원장 취임식  
• 제3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9.6.)
- 9월 10일 • 조사관학교(~9.14.)
- 9월 13일 • 위원장, 난민 단식농성장 방문
- 9월 17일 •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및 심사관 면담을 위한 현지 출장
- 9월 18일 • 위원장, APF 연례회의 참석
- 9월 19일 •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9월 20일 •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결과발표회
- 9월 27일 •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 9월 28일 • 제주퀴어문화축제 인권지킴이단 운영

## 2018년 10월

- 10월 1일 • 직원 조회 및 청렴 교육
- 10월 2일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설명회
- 10월 4일 • 장애인 관광권을 위한 편의제공 토론회 개최
- 10월 5일 •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 위촉식(가수 이은미)
- 10월 10일 •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상영회 개최(~12.10. 전국 109개 도서관)
- 10월 13일 • 부산인권사무소,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인권현장 모니터링
- 10월 15일 • 위원장, 유엔 피해자 권리 옹호관 면담
- 10월 16일 • 직원 연찬회
- 10월 22일 •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제17·18·19차 대한민국 정기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독립보고서 의결
- 10월 23일 •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워크숍(~10.24)
- 10월 24일 • 광주퀴어문화축제 홍보부스 운영 및 모니터링
- 10월 25일 •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호주 의회)
- 10월 26일 •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 심포지엄
- 10월 27일 • 국제옴부즈만기구 연례회의 참석(~11. 1.)
- 10월 29일 •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2019년 업무계획 의견 수렴)
- 10월 31일 •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토론회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 2018년 11월

- 11월 2일 • 위원장, 주한 영국대사 면담
- 11월 16일 •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전문가 간담회
- 11월 19일 • 위원장, 주한 스웨덴대사 면담  
• 위원장, 국방부장관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논의
- 11월 21일 •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 11월 21일 •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결과발표회  
• 부서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11월 22일 •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11.24.)
- 11월 23일 • 위원회 설립 17주년 기념식
- 11월 24일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 결과발표회
- 11월 25일 • 위원장,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
- 11월 26일 • 법원의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불인정 관련 의견제출  
• 제9차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참가
- 11월 28일 • 2018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토론회
- 11월 29일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참석(~12. 6.)

## 2018년 12월

- 12월 4일 • 비인가 대안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 인권영화 '메기' 시사회
- 12월 10일 •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2018 인권의 날 기념식
- 12월 11일 • 위원회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 12월 12일 • 2018 인권옹호자회의(~12.13.)
- 12월 14일 • 제주 예멘난민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장 성명  
• 문화예술계(영화)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
- 12월 17일 • 위원장, 군 장병 위문 방문(육군 15사단)  
•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 12월 19일 • 부산광역시와 인권증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2월 21일 • 군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
- 12월 26일 •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방문
- 12월 27일 • 한국관광공사와 외국인 관광객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3.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 ■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8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 1) 긍정적 사항(Positive aspects)

1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2017) 개정
2	「양성평등기본법」(2014) 제정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근로기준법」(2012, 2014) 개정

#### 2) 우려 및 권고(Concerns and recommendations)

쟁점	우려와 권고 사항
1. 성희롱·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li> <li>•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등 형사 절차 남용 방지 및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li> <li>•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사업자가 성폭력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검토해 온라인 성폭력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성 성폭력을 범죄화하는 입법</li>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 콘텐츠를 피해자가 요청하는 즉시 삭제, 차단할 것</li> <li>• 중소기업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 시스템 수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 개정사항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할 것</li> <li>• 학교, 대학, 군 등 공공기관 성폭력 범죄자 엄중 처벌</li> </ul>
2. 여성에 대한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목적을 가족의 안정보장으로 개정 및 적용범위 확대</li> <li>• 가정폭력과 관련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화해 및 조정 제도의 사용도 금지</li> <li>• 범죄자가 법적 제재하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의무 정책을 도입</li> </ul>
3. 여성 고용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부과하고 공공기업, 민간기업 대상 '임금공시제도' 도입</li> </ul>
4. 성매매 및 성착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예술흥행비자(E-6-2)제도를 개정하고, E-6-2 취업비자를 취득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체 현장 방문 등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li> </ul>
5. 여성 대표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립대학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직에서 동등한 여성대표성 보장</li> <li>•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 분리채용 폐지, 경위 이상 여성경찰 확대</li> </ul>

※ 권고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예술흥행비자(E-6-2) 제도 개정,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에 대한 권고는 2년 이내 이행 조치에 관해 서면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하여, 그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제3기 대한민국 심의에서 총 218개의 권고사항을 받았다. 이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91개의 권고는 수용하였으나, 나머지 127개의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2017년 3월 30일 UPR 실무그룹 제3기 대한민국 심의에서 독립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8년 3월 15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UPR 심의 최종보고서가 채택된 제37차 인권이사회에 서면 발언문도 제출하여 세계국가 인권기구연합(GANHRI) 제네바 대표부가 이를 대독하였다.

이 발언문을 통하여, 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의 218개 권고 중에서 127개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동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사형제도 폐지 관련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균형법」 제92조의 6 폐지, △혐오표현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과 정책 시행,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범죄화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 주요 권고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 의제들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 1) 긍정적 사항(Positive aspects) : 3, 4번 조항

1	인신매매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개정(2013. 4. 5.)
2	난민법 제정(2013. 7. 1.)
3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2018. 2. 12.)
4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수립(2018. 2. 12.)
5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2018. 8. 7.)
6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팔레르모 의정서, 2015. 11. 5.)

### 2) 우려 및 권고(Concerns and recommendations)

쟁점	우려 및 주목(Concerns)	권고(Recommendations)
1. 인종차별 관련 입법 및 정의 (5,6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종차별 금지와 정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못함에 재차 유감 표명</li> <li>인종차별적 동기 가중처벌 조항이 형법상 부재함에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종차별 입법화(차별금지법) 및 가중처벌 사유 고려한 형법 개정(재권고)</li> <li>인종차별 범죄 통계 관련 메커니즘 수립할 것</li> </ul>
2.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 (7,8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 분위기 우려</li> <li>2018. 5. 예멘난민 제주 도착 이후 악화된 혐오 발언과 인종주의 증가 우려</li> <li>공식문서의 '불법체류자' 용어가 부정적 인식과 차별 악화시킴에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li> <li>인종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집단 모니터링 및 적절한 처벌 부과할 것</li> <li>방송언어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이행</li> <li>'불법체류자' 용어의 사용 철폐 및 사용 방지를 위해 법령·공식문서 검토</li> </ul>
3. 이주 노동자 (9~12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허가제 개정에도 아래사항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li> <li>국내 최장 체류기간 제한</li> <li>가족 결합 불가능</li> <li>비자 변경의 경직성</li> </ul> </li> <li>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우려</li> <li>어업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과 이주노동자 고용 호소의 어려움에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 촉진,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체류 가능 기간 연장, 비자 변경 허용 등 고용허가제 및 관련 법률 개정할 것</li> <li>고용 규정과 관행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할 것</li> <li>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근로 감독 강화 등 차별에 단호히 대응할 것</li> <li>이주노동자 권리 침해시 적절한 구제수단 접근과 가해자 책임·처벌 등 제재조치가 보장되고 관련 통계를 수집·보고할 것</li> </ul>

쟁점	우려 및 주목(Concerns)	권고(Recommendations)
4. 난민 및 난민 신청자 (13,14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이 난민과 난민신청자를 위해 노력한 바를 주목하는 한편, 여전히 극도로 낮은 난민인정률에 우려</li> <li>• 난민신청자들의 이의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고, 면접심사가 비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보고에 우려</li> <li>• 난민 재정착이 특정 지역 출신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전문인력 지원, 이해 가능한 언어 제공 등 <b>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것</b></li> <li>•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한 인권교육 및 심사의 전문성 강화할 것</li> <li>• 난민과 난민신청자 관련 모든 결정이 공정하며, 국적 등이 아닌 보호 필요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li> </ul>
5. 미등록 이주민 (15~18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빈번한 부상과 사망사건에 우려</li> <li>•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단속과 조합 간부 강제 퇴거, 인권옹호가 탄압에 우려</li> <li>• 미등록 자격 때문에 이주민이 인권침해 사실 신고를 꺼리는 것에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옹호자 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 조합 결성 권리 등에 대해 경찰 및 <b>출입국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할 것</b></li> <li>• 강제퇴거의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피해사실 신고와 적절한 구제 수단 접근을 보장할 것</li> <li>• 단속으로 체포·강제퇴거된 이주민 수 및 과도한 무력사용 관련 정보 제공 요청</li> </ul>
6. 외국인 여성 보호 (19,20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더 기반 폭력 피해의 이주 여성들에게 사법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신설됨에도 여전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함에 우려</li> <li>• 미등록 이주 여성은 사법 절차 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지만 종결 후 강제 퇴거에 신고를 꺼림에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이주 여성 보호, 모든 피해 여성의 사법 및 지원 접근성 강화, 관련 가해자 처벌할 것</li> <li>• 젠더 기반 폭력 피해의 미등록 이주 여성에게 사건 종료 후에도 국내 체류 가능성 부여할 것</li> <li>• 피해 구제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것</li> </ul>

쟁점	우려 및 주목(Concerns)	권고(Recommendations)
7.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21~24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과 이혼 후 국내 체류 가능한 대상으로 “결혼이민자”는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에 우려</li> <li>•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귀국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아버지에 의한 자녀 부양이 안 되는 것에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차별의 성인지적 차원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제25호(2000년) 상기</li> <li>• 조건 없이 모든 “결혼이민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과 이혼 후에도 국내 계속 거주 가능토록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할 것</li> <li>• 이혼 후 귀국하는 “결혼이민자”의 이혼 절차 및 자녀 양육 관련 적절한 행정·사법적 지원 제공에 노력 확대해나갈 것</li> </ul>
8. 인신매매 (25,26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정의에서 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와 재외동포 결혼이배제된 것에 우려</li> <li>• 난민신청자 및 난민 포함한 이주가족이 “다문화가족”만 받는 혜택과 지원 범위에 벗어나 있는 점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b>과 인식 제고 캠페인 수행할 것</li> <li>•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를 위한 지원과 구제절차 종료까지 안정적인 체류자격 및 생계지원을 제공할 것</li> <li>• 인신매매 조사 및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에 대한 재활 포함한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li> </ul>
9. 출생 등록 (27,28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부부의 자녀 출생등록이 대사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에 우려</li> <li>•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 자녀의 경우 국적 취득에 요구되는(어머니 국적국에서 발행한 아동 명의) 여권이 없어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것에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 등록은 다양한 인권 향유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li> <li>• 국내 출생 모든 아동의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실시할 것</li> <li>•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제한 폐지할 것</li> <li>•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할 것</li> </ul>

쟁점	우려 및 주목(Concerns)	권고(Recommendations)
10. 교육 접근 (29,30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이 내국인에게만 의무인 것에 대해 우려</li> <li>• 이주 아동이 학교장 재량에 의해 입학 거부 등 입학 못하는 사례에 우려</li> <li>• 이주 아동의 대안학교 등록 관행이 차별적이고 한국사회로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의무 교육이 확대 적용되도록 교육기본법 개정할 것</b></li> <li>• 이주민 공동체 및 학교 교장단 등에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인식제고</li> <li>• 이주 아동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학교의 이주 아동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실시할 것</li> </ul>
11. 사회 보장 접근 (31~34번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의 낮은 건강보험제도 가입률과 이주민의 보험료가 내국인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인 점에 우려</li> <li>• 몇 가지 범주의 이주민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고, 대다수 이주민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우려</li> <li>•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이주민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li> <li>• 대다수의 외국인이 당사국과 상호보증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못 받는다는 점을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특히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조치 실시할 것, 이주민의 보험료 납부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할 것</li> <li>• 국내 거주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사회적 지원 받도록 사회보장정책 재검토</li> <li>•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차별 없이 동등한 신청 자격 요건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것</li> <li>•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범죄에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 피해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li> </ul>

※ 최종견해에서 “특별히 중요한 항들(진하게 처리한 조항들)”에 대해 한국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이행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 관련 세부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제공할 것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 2018 연간보고서

---

---

|인쇄일| 2019년 6월

|발행일| 2019년 6월

|발행인| 최영애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우) 04551

|전화| (02) 2125-9793

|팩스| (02) 2125-0913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쇄처| (주)삼일기획 (044) 866-3011

---

---

ISSN 1975-3128

비매품



국가인권위원회

우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7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02) 2125-9793 팩스: 02) 2125-0913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